2016 아동권리포럼

보건복지부위탁 2016년도 아동인권증진사업
아동권리포럼

2016.

주최: 보건복지부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주관: InCRC 국제아동인권센터 International Child Rights Center

목 차

Ⅰ 2016년도 아동권리포럼 사업소개 ····· 2

Ⅱ 제1차 아동권리포럼 ····· 7

Ⅲ 제2차 아동권리포럼 ····· 27

Ⅳ 제3차 아동권리포럼 ····· 57

Ⅴ 제4차 아동권리포럼 ····· 97

Ⅵ 제5차 아동권리포럼 ····· 155

Ⅶ 제6차 아동권리포럼 ····· 183

Ⅰ 2016년도 아동권리포럼 사업 소개

2016년도 아동권리포럼 사업 소개

□ 2016년도 아동권리포럼 개요

- **목　　적** 국내 아동참여와 의견존중의 실태를 파악하고, 이의 증진을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법령 및 정책 발전방안 모색
- **사업내용**
  1) 사회 각 분야에서 아동참여와 의견존중이 고려되어야 할 사안과 관련된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 조직
  2) 발제자의 주제별 발표에 대한 전문가포럼을 통한 정보공유 및 개선방안 모색
- **사업기간** 2015. 3. - 12. (10개월)
- **주　　최** 보건복지부 / **주　　관** 국제아동인권센터

□ 사업의 필요성

○ 사업의 필요성

- 우리나라에 대한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사항을 검토하면 [일반원칙] 클러스터에서 '아동의견의 존중'과 관련한 개선권고가 반복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음. 권고사항 [시민권과 자유] '표현·집회 및 결사의 자유'와 '체벌' 부분과 연계하여 보아도 아동의 의견표명과 참여권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마련을 권고내용으로 하고 있음.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아동참여와 의견존중에 대한 대한민국의 현주소를 구체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음.
- 아동을 단순한 '보호의 대상'이 아닌 '권리의 능동적인 주체'로 사회적 인식이 전환되기 위해서는 실제적으로 아동의 진술 및 견해가 존중되는 절차규정과 아동의 참여권이 보장되는 사례가 늘어나야 함. 이를 위해서는 사법·행정·입법 각 분야에 있어 아동의 의견청취권이 협약의 가치에 부합하도록 구체화하고 제도화하는 작업이 필요함.
- 이하에서는 대한민국에서의 아동참여와 의견존중에 관한 법령과 정책현황을 간략하게 제시함. 이를 바탕으로 논의주제를 구체화하고, 협약의 가치에 부합하는 제도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논의의 방향성을 설정하고자 함.

□ 목 표

- 전문가, 관련기관 종사자, 정부관계자 등의 의견공유를 통한 토론회 개최
- 아동의 성장·발달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사안에 아동 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하게 표현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개선방안 도출

□ 수행방법

- **자문위원회 구성**:
  아동 및 인권 관련 사회 각 분야의 다양한 전문가로 자문위원회를 구성
- **1차 포럼**:
  반복된 권고사항 및 개괄적인 실태분석 자료를 바탕으로 한 향후 논의방향에 대한 전문가 집단의 통합적 의견 공유 및 구체적인 일정 논의
- **2-6차 포럼**: 자문위원회 회의 / 각 주제별 발제 및 토의
  - 주제(안): ① 아동참여기구 ② 교육 ③ 소년사법 ④ 의료 ⑤ 아동보호체계
  - 발제자: 각 주제 관계자 1-2인 / 토론자: 자문위원
- **자료집 발간 :** 6회에 걸쳐 진행된 포럼내용 정리 및 분석

□ 사업기간 및 세부일정

사 업 내 용	월 별												비고
	1	2	3	4	5	6	7	8	9	10	11	12	
자문위원 구성			≫	≫									
발제자 및 참여인사 섭외			≫	≫	≫	≫	≫	≫	≫	≫	≫	≫	
1차 포럼				≫									하순
2차 포럼					≫								중순
3차 포럼						≫							하순
4차 포럼								≫					중순
5차 포럼										≫			초순
6차 포럼											≫		하순
자료집제작·온라인배포												≫	
완료 보고												≫	

□ 자문위원 명단 〈포럼 위원 : 총 9인〉

성 명	소 속	비 고
김인숙	국제아동인권센터 아동인권교육훈련연구소장	
안동현	한양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이봉주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이상용	변호사 이상용 법률사무소	
이양희	국제아동인권센터 대표, 성균관대학교 교수	진 행
이호균	아동행복포럼 고문	
장화정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장	
황옥경	서울신학대학교 보육학과 교수	
황필규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	

Ⅱ 제1차 아동권리포럼

제1차 아동권리포럼
2016. 4. 21. 15:00-17:30 페럼타워 2층 중회의실 M1

보건복지부위탁 2016년도 아동인권증진사업
제1차 아동권리포럼

2016. 4.

1	아동참여기구

유엔아동권리위원회 권고사항
19. 위원회는 대한민국에 다음의 사항을 권고한다. e) 특히 아동을 포함하는 공개대화를 통해 예산수립과정의 투명성 및 참여도를 보장하라.

아동권리위원회 일반논평 No.12 “아동의 의견청취권” (2009)
11. 당사국은 아동이 자유롭게 의사를 형성하도록 장려하여 아동이 의견청취권을 행사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 12. 아동이 표현한 의견은 관련 시각과 경험을 더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견해는 의사결정, 정책결정, 그리고 법안이나 조치의 준비 및 평가과정에 고려되어야 한다. 13. 이러한 과정을 보통 참여라고 부른다. 아동이 자신들의 의견청취권을 행사하는 것은 이 과정의 중요한 요소이다. 참여의 개념은 아동을 포함하는 것이 일시적인 행위가 아니라 아동의 삶과 관련된 모든 맥락에서 정책, 프로그램 및 제도의 형성에 대한 아동과 성인 사이에서의 치열한 의견교환의 출발점임을 강조한다.

⊙ 청소년특별회의 및 청소년운영위원회

- 청소년기본법은 청소년의 자치권 확대의 일환으로서 청소년특별회의를 개최해야 할 국가의 추상적인 설치의무를 규정하고 있음.
- 청소년활동진흥법도 청소년의 참여보장을 위하여 청소년운영위원회를 운영하여야 한다는 일반적인 규정을 두고 그 구성·운영방법을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으나, 해당 시행령은 운영위원회 위원의 수·임기·위원장 선출방법 등 최소한의 형식적인 내용만을 규정하고 있음

청소년기본법
▷ 제5조의2(청소년의 자치권 확대) ① 청소년은 사회의 정당한 구성원으로서 본인과 관련된 의사결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이 원활하게 관련 정보에 접근하고 그 의사를 밝힐 수 있도록 청소년 관련 정책에 대한 자문·심의 등의 절차에 청소년을 참여시키거나 그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관련 정책의 자문·심의 등의 절차에 청소년의 참여 또는 의견수렴을 보장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12조(청소년 특별회의의 개최) ① 국가는 범정부 차원의 청소년정책과제의 설정·추진 및 점검을 위하여 청소년 분야의 전문가와 청소년이 참여하는 청소년특별회의를 해마다 개최하여야 한다.
청소년기본법 시행령
▷ 제12조(청소년특별회의의 참석 대상) ① 법 제12조에 따른 청소년특별회의(이하 "특별회의"라 한다)에 참석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3조에 따른 지역회의에서 추천하는 청소년 2. 청소년 관련 기관ㆍ단체에서 추천하는 청소년 3. 청소년 관련 단체ㆍ시설ㆍ학계의 관계자

4. 여성가족부장관이 공개모집을 통하여 선정한 청소년 5. 그 밖에 여성가족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참석 대상을 정할 때에는 성별、연령별、지역별로 각각 전체 청소년을 대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3조(운영방법 등) 특별회의는 매년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단위의 지역회의를 개최한 후에 전국 단위의 회의를 개최하며, 청소년 관련 토론회 및 문화예술행사 등과 병행할 수 있다. ▷ 제14조(의제의 통지) 여성가족부장관은 특별회의의 의제(議題)를 선정하여 해당 연도의 최종 회의 개최 1개월 전까지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 제15조(관계 기관 등의 협조)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특별회의의 의제 선정 및 연구 등을 위하여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특별회의의 의제와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회의에 참석하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청소년활동진흥법
▷ 제4조(청소년운영위원회) ① 제10조제1호의 청소년수련시설(이하 "수련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하는 개인·법인·단체 및 제16조제2항에 따른 위탁운영단체(이하 "수련시설운영단체")는 청소년활동을 활성화하고 청소년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청소년으로 구성되는 청소년운영위원회를 운영하여야 한다.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령
▷ 제3조(청소년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는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청소년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②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④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운영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장은 필요시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⑦ 이 영에 규정된 것 외에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⑧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지방자치단체 단위의 아동참여기구

-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각 어린이·청소년의회, 어린이·청소년 참여위원회, 학생참여위원회, 학생의회(이하 '위원회')는 현행법령보다 아동의 참여권 및 청취권의 보장범위를 보다 구체적으로 정하고 문언상 그 의견을 반영할 의무도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적으로 협약의 가치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있지는 못한 실정함.

서울특별시 성북구 어린이·청소년 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1조(의견반영) 구청장은 어린이의회와 청소년의회에서 제안된 의견을 구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아동·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 조례
▷ 제10조(의견수렴) ① 구청장은 정책이나 사업의 추진과정에 위원회의 의견제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 건의사항 등에 대하여는 소관부서에서 그 처리결과를 회신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어린이·청소년 인권조례
▷ 제55조(의견 수렴) ① 시장은 정책이나 사업의 추진과정에 위원회의 의견제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적극 반영해야 한다. ② 위원회가 제시한 의견, 건의사항 등에 대하여는 시장은 그 처리 결과를 위원회에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③ 위원회는 의견제출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시장이나 시의회 면담을 요청할 수 있다.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 제36조(학생참여위원회) ④ 경기도학생참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교육감 및 학생인권옹호관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1. 경기도 학생인권조례의 개정에 관한 사항 2. 학생인권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3. 학생인권실천계획에 관한 사항 4. 기타 학생인권실현 및 학생참여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광주광역시 학생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 제29조(학생의회) ② 학생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교육감 및 교육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1.「광주광역시 학생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개정에 관한 사항 2. 학생인권증진계획에 관한 사항 3. 광주광역시교육청의 학생 관련 정책 중 교육감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4. 그 밖에 학생인권 실현 및 학생참여 활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교육감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을 존중하고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아동총회

- 2002년 6월 유엔아동특별총회의 후속으로 개최된 NGO포럼 참가 보고회에서 한국 민간대표단으로 참석하고 돌아온 아동들의 요청에 의해 기획되었음.
- 2004년 제1회 아동총회 이후 매년 개최되고 있지만, 근거법령이 부재하고 정부정책의 일환이라기보다는 위탁사업의 일종으로 수행되고 있어 사전계획과 총회, 이후 정책입안까지 유기적으로 연계되지 못하고 있음.

2	교 육

가. 교내 자치활동

유엔아동권리위원회 권고사항
41. 위원회는 과거 권고안을 반복하며, 협약 12조부터 17조에 비추어 대한민국이 법률, 교육부 발행 지침 및 교칙을 수정하여 아동이 의사결정 과정 및 교내외 정치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모든 아동이 교내 등에서 정치활동에 참여하거나 이를 수행하고 학교 운영위원회에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을 포함, 집회와 표현의 자유를 완전히 누릴 수 있도록 하기를 촉구한다.

아동권리위원회 일반논평 No.1 “교육의 목적” (2001)
8. 아동은 학교에 입학한다고 해서 자신의 인권을 잃는 것이 아니다. 그리하여, 교육은 아동 교유의 존엄을 존중하고 협약 제12조 제1항과 같이 아동이 자신의 견해를 자유로이 발표할 수 있게 하며, 학교생활에 참여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아동의 학교생활 참여, 학교 사회와 학생회의 조직, 또래교육과 또래상담 그리고 학교의 교육 활동 과정에 아동의 참여 등은 이 권리의 실현을 학습하고 경험하는 과정의 일환으로서 장려되어야 한다.

⊙ 「교육기본법」 및 「초·중등교육법」에서 학생의 학교운영에의 참여권을 규정함.

- 임의규정으로서 학교의 재량에 따라 아동의 참여가능 여부가 선택되는 한계. 교복 위 외투 착용금지, 학생의 정치활동 관여 시 퇴학조치, 두발제한 등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학칙들 역시 학생이 학교운영과정 전반에 배제되어 있는 현실을 반영함.[1)]

교육기본법
▷ 제5조(교육의 자주성 등) ② 학교운영의 자율성은 존중되며, 교직원·학생·학부모 및 지역주민 등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운영에 참여할 수 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 제9조(학교규칙의 기재사항 등) ④ 학교의 장은 제1항 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학칙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학생, 학부모, 교원의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7조의2(학생의 안전대책 등) 학교의 장이 법 제30조의8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학생의 안전대책 등을 수립할 때에는 학생, 학부모 및 교직원의 의견을 듣고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쳐야 한다. ▷ 제59조의4(의견 수렴 등) ② 국·공립학교에 두는 운영위원회는 학생의 학교생활에 밀접하게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학생 대표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1) 2015.11.24.자 포커스뉴스
http://www.focus.kr/view.php?key=2015112400145335529

③ 국·공립학교에 두는 운영위원회는 국립학교의 경우에는 학칙으로, 공립학교의 경우에는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 대표가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운영위원회에 제안하게 할 수 있다.

⊙ 법원과 헌법재판소는 정신적·육체적 발달과정에 있는 아동의 성장과 진화가능성보다는 성인에 비하여 부족하다는 점에 중점을 두고 있음. 학생의 학교운영에의 관여를 아동의 권리로 이해하지 않고 있는 사법부의 태도를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음.

- "교육을 통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해 가는 과정에 있는 미성숙한 학생" (헌재 2014.8.28. 2011헌바32 결정)
- "청소년은 자율적인 인격체로서 스스로 의사결정을 하고 자신의 삶의 방식을 정하여 나갈 결정권을 가지나, 아직 정신적으로 미성숙하고 사물에 대한 변별력이나 의지력이 미약하여, 의사결정에 있어 부모나 친권자 등의 지도가 필요하다." (헌재 2015.3.26. 2013헌마517 결정)

⊙ 교육부가 배포한 초·중등용 「학교규칙 운영 매뉴얼(2012)」도 학생자치활동의 원칙을 선언하나, 구체적인 절차나 예시규정이 제공되지 않은 권고사항에 해당함.

학교규칙 운영매뉴얼

- 학칙은 학생들의 참여로 만들어지며, 학생들이 스스로 만든 규정을 준수하고자 노력할 때 자치규범으로서의 본질적인 가치가 실현된다.
- 학칙은 학생들이 자신들의 생활과 관련한 여러 문제들에 대해서 자율적으로 해결하고 창조해 가는 학생자치활동의 원천이다.

나. 징계절차

유엔아동권리위원회 권고사항

35. 위원회는 아동에게 자신의 견해를 표출할 권리를 보장하고, 아동에 영향을 주는 모든 결정과정에 그들의 의견이 고려되도록 법 개정을 고려할 것을 대한민국에 권고한다. 위원회는 대한민국이 협약 12조에 합치하도록 다음의 사항을 제시한 이전의 권고를 반복한다.

(a) 아동복지법이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에서 아동이 자신의 견해를 자유롭게 표현할 권리를 포함하도록 개정하라. **교육기관의 징계과정과 학교를 포함한 행정기구와 법원에서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사안에 대한 아동의 청취권이 촉진되고 아동의 견해가 존중되도록 입법조치를 포함한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라.**

(b) 특히, **부모, 교육자, 정부, 행정공무원, 사법부 및 일반사회에 아동의 청취권과 아동의 의사가 고려될 권리에 대한 교육 정보를 제공하라.**

(c) 아동의 견해가 고려되는 정도와 그것이 정책과 프로그램 및 아동 자신에 끼친 영향을 정기적으로 검토하라.

(d) 아동의 청취권에 관한 위원회의 일반논평 12호(2009년)를 고려하라.

63. 위원회는 대한민국에 다음의 사항을 권고한다.

e) 학생간 괴롭힘을 방지하고 외국출신 아동에 특별히 관심을 기울이며 괴롭힘을 줄이기 위한 이니셔티

브에 아동이 참여하도록 하는 조치를 강화한다. 이러한 조치는 휴대폰이나 온라인 공간과 같이 교실과 학교 운동장 밖에서 일어나는 새로운 형태의 따돌림과 괴롭힘을 다루어야 한다.

⊙ 피해학생 및 가해학생의 의견진술 절차

- 현행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은 징계절차에 있는 학생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줄 것을 정하고 있고, 「초·중등교육법」은 퇴학이라는 징계처분에 대하여 행정절차에 나아갈 수 있음도 규정함.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하고 있는 학교폭력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자 제정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은 가해학생 뿐만 아니라 피해학생의 의견진술 절차도 보장함.
- 그러나 위 규정에 따라 실제로 적용될 수 있는 관련부처 및 기관이 제공하는 매뉴얼이나 가이드라인을 찾아볼 수 없고, 교내에서 이루어지는 징계절차의 특성상 아동의 의견청취절차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하기 어려운 실정임.

초·중등교육법
▷ 제18조(학생의 징계) ② 학교의 장은 학생을 징계하려면 그 학생이나 보호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 제18조의2(재심청구) ① 제18조제1항에 따른 징계처분 중 퇴학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퇴학조치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또는 그 조치가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18조의3에 따른 시·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심사결정에 이의가 있는 청구인은 통보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고등교육법
▷ 제13조(학생의 징계) ② 학교의 장은 학생을 징계하려면 그 학생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는 등 적절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 제16조(피해학생의 보호) ② 자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요청하기 전에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⑤ 자치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치를 요청하기 전에 가해학생 및 보호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3	소년사법

유엔아동권리위원회 권고사항
81. 위원회는 청소년 범죄 및 높은 수준의 재범률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적절한 방안을 마련할 것을 대한민국에 요구한다. 이 과정에서, 위원회는 대한민국이 소년사법제도를 특히 37조, 39조 및 40조를 비롯한 협약과 소년사법 운영에 관한 유엔취저기준교칙(베이징 규칙), 소년비행방지를 위한 유엔가이드라인(리야드 가이드라인), 피구금소년보호규칙(하나바규칙), 형사사법제도 하에서의 아동을 위한 비엔나 행동지침, 청소년 사법시 아동의 권리에 관한 위원회의 일반논평 제10호(2007) 등을 포함한 여타 관련 기준에 완전히 합치하도록 할 것을 권고한다. 특히,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촉구한다. b) 형법위반 혐의를 받는 아동에게 충분한 법률 및 기타 지원을 법적 절차 초반과 전반에 걸쳐 제공하라. d) 자유를 박탈당한 아동이 자신의 배치에 대한 결정에 대해 주기적으로 검토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라.

⊙ 국선보조인 제도

- 종래의 소년보호사건 절차에는 「형사소송법」의 국선변호인제도와 같은 규정이 없어 소년법의 인권보장에 미흡함을 이유로, 2007.12.21. 신체의 자유가 제한되어 있는 위탁소년에 대하여 필수적으로 국선보조인을 선정하도록 하고, 위탁소년이 아니더라도 국선보조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선보조인을 선정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음. 이에 따라 선정된 보조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심리를 진행할 수 없음(소년심판규칙 제24조 제2항).
- 그러나 위 국선보조인의 의견진술권은 소년보호사건 심리에서 임의적인 절차에 그치고 있음. 형사사법절차에서 피고인의 인권보장을 위한 변호인의 역할을 생각해 본다면, 그보다 경한 위법행위를 행하였거나 혹은 범죄행위를 행한 경우에도 회복가능성에 중점을 두고자 하는 소년사법의 목적과 모순되는 규정으로 사료됨.

소년법
▷ 제17조의2(국선보조인) ① 소년이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된 경우 보조인이 없을 때에는 법원은 변호사 등 적정한 자를 보조인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② 소년이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도 다음의 경우 법원은 직권에 의하거나 소년 또는 보호자의 신청에 따라 보조인을 선정할 수 있다. 1. 소년에게 신체적·정신적 장애가 의심되는 경우 2. 빈곤이나 그 밖의 사유로 보조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 3. 그 밖에 소년부 판사가 보조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25조(의견의 진술) ① 조사관, 보호자 및 보조인은 심리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소년보호시설 등에서의 아동의 의견청취권

- 형사처분을 받은 14세 이상 19세 미만인 아동에게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면담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제116조 제1항), 면담결과를 통지받을 권리(제116조 제4항), 처우

에 대한 청원권(제117조)이 보장될 수 있음. 그러나 소년사법 절차 및 소년분류심사원·소년보호시설에서의 아동의 의견청취권은 훈령 및 예규의 형식으로만 제시됨.[2)]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 제10조(원장의 면접) 원장은 보호소년 등으로부터 처우나 일신상의 사정에 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수시로 보호소년등과 면접을 하여야 한다.

2) 소년사건 검사의 결정 전 조사 처리 규정(법무부 훈령 제1029호),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등 업무처리 지침(법무부 예규 제1098호), 보호소년 교육지침(법무부 훈령 제1043호), 보호소년 처우지침(법무부 훈령 제1044호), 소년교도소 운영지침(법무부 예규 제1093호)

4	의 료

아동권리위원회 일반논평 No.7 “어린 아동기의 아동권리의 이행” (2005)
14. 협약 제12조가 어린 아동이나 나이든 아동 모두에게 적용되는 것이 강조되기를 바란다. 권리의 보유자로서, 가장 어린 아동도 자신의 견해를 밝힐 수 있고, 그 견해는 아동의 연령과 성숙도에 따라 정당한 비중이 부여되어야 한다.
아동권리위원회 일반논평 No.12 “아동의 의견청취권” (2009)
100. 유아를 포함한 아동은 아동의 발달하는 능력에 맞는 방법으로 의사결정과정에 포함되어야 한다. 아동은 제안된 치료법과 그 영향 및 결과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아야 하며 장애아동에게도 적절하고 제공 가능한 방법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 「보건의료기본법」은 모든 국민의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명시하고,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도 의료절차에 편입된 모든 대상자들의 참여를 강조함.

보건의료기본법
▷ 제12조(보건의료서비스에 관한 자기결정권) 모든 국민은 보건의료인으로부터 자신의 질병에 대한 치료방법, 의학적 연구 대상 여부, 장기이식 여부 등에 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들은 후 이에 관한 동의 여부를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

보건복지부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2015~2018년)」
◆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와 원활한 의사소통은 계획에 다양한 의견을 반영함으로서 계획내용의 타당성을 높이고 지역주민의 보건기관에 대한 관심 및 참여를 높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 지역사회 현황을 확인하고 평가하는 데 다수의 기관과 단체 및 지역사회 주민을 적극적으로 참여시킬 수 있으면, 사업의 효과도 증대될 것임 ◆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과정은 지역보건기관 나아가 지역사회의 주민, 보건의료관계기관 및 단체, 전문가의 의견수렴이 포함되어야 하며, 이러한 과정이 충실히 수행되기 위해서는 수립 전 과정에서 지역사회 구성원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과정이 가장 중요함

⊙ 의료절차 전반에 있어 환자 개인이 충분한 정보를 전달받고 숙고과정을 거치며 그에 대한 동의여부를 결정할 권리는 국민의 기본권으로서 마땅히 보장되어야 함. 이 부분에 있어 아동 역시 예외일 수는 없음.

- “환자의 동의는 헌법 제10조에서 규정한 개인의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에 의하여 보호되는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서, 환자는 생명과 신체의 기능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지에 대하여 스스로 결정하고 진료행위를 선택하게 되므로, 의료계약에 의하여 제공되는 진료의 내용은 의료인의 설명과 환자의 동의에 의하여 구체화된다.” (대법원 2009.5.21. 선고 2009다17417 판결)

⊙ 현실적인 한계

- 실제 의료 현실에서는 친권자·후견인을 포함한 법정대리인(이하 '친권자'라 함)인 부모가 환자로서의 아동의 권리를 대신 행사하는 경우가 많음. 신생아·영아 등 아동에게 아직 충분한 의사표시 능력이 없어 스스로 의료조치에 대한 동의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가 대표적이며, 일정 연령 이상인 아동의 경우에도 해당 아동의 정신적 성숙도·위험을 수반하는 의료조치의 종류 및 중대성에 비추어 아직 의료조치에 대한 동의권을 행사할 수 있을 만큼의 행위능력이 형성되지 않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역시 아동 당사자의 동의권 및 의견진술권·청취권 전반을 행사할 수 없음. 심지어 아동이 동의권을 행사할 수 있는 의사능력·행위능력이 존재하는 때에도 친권자의 동의 등이 필수적인 절차로 받아들여지고는 함(현소혜, 2013).

⊙ 영국 「0-18세: 진료절차에서의 지침서(2007)」(영국 General Medical Council)

- 진료과정에서 아동의 권리가 보장되어야 하고 아동이 의사표현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어야 하며, 의사결정과정에서 아동이 참여하여야 함을 언급함.
- 의사와 아동 간의 의사소통이 아동에 대한 최선의 돌봄을 위해 핵심적인 과정임을 상기하고, 부모 및 보호의 염려에도 불구하고 아동은 자신에게 발생한 모든 상황에 대해 알고 있어야 함을 분명하게 규정함.

⊙ 노르웨이의 「환자권리법(Patient's Rights Act)」

- 의료영역에 관련된 법령 전반에 있어 아동에 대한 특별한 배려가 별도로 고려되지 않는 우리나라와 달리 다음과 같이 아동의 권리를 세심하게 고려하고 있음.
- 첫째, 아동을 포함하여 의료조치가 필요한 환자 전반을 대상으로 그들의 권리가 충분히 보장받지 못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연령, 성숙도, 경험, 문화 및 언어적 배경 등 다양한 상황에 처한 모든 환자들이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는 환자의 권리를 명시하여 비차별의 원칙을 구현함(환자권리법 제3조 제5항).
- 둘째, 의료 서비스에 관한 동의 연령을 16세를 기준으로 하여 행위능력을 부여함으로써 유엔아동권리협약 및 민법상 성년에 이르는 연령과 구분하고, 12세 이상인 아동에게도 의견을 표명할 수 있는 절차적 권리를 명시함으로써 아동참여와 의견존중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기본체계를 마련하고 있음.
- 셋째, 연령뿐만 아니라 성장과정에서의 발달적 특수성에 따라 성인보다 큰 차이를 나타내는 아동의 개별적인 특성을 고려하여 의료조치를 받는 환자이자 마땅히 건강권을 향유할 수 있는 권리주체자인 아동의 권리를 서술하고 있음. 환자로서의 정보접근권, 동의권뿐만 아니라 의료시설 내에 머물러야 할 경우 부모와 함께 할 권리, 적절한 교육을 제공받을 권리를 명시함으로서 아동최상의 이익에 기하여 아동의 생명, 생존 및 발달의 원칙에 기여함.

5	아동보호체계

가. 아동학대

유엔아동권리위원회 권고사항
35. 위원회는 아동에게 자신의 견해를 표출할 권리를 보장하고, 아동에 영향을 주는 모든 결정과정에 그들의 의견이 고려되도록 법 개정을 고려할 것을 대한민국에 권고한다. 위원회는 대한민국이 협약 12조에 합치하도록 다음의 사항을 제시한 이전의 권고를 반복한다. (a) **아동복지법이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에서 아동이 자신의 견해를 자유롭게 표현할 권리를 포함하도록 개정하라.** 교육기관의 징계과정과 학교를 포함한 행정기구와 법원에서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사안에 대한 아동의 청취권이 촉진되고 아동의 견해가 존중되도록 입법조치를 포함한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라. (b) 특히, 부모, 교육자, 정부, 행정공무원, 사법부 및 일반사회에 아동의 청취권과 아동의 의사가 고려될 권리에 대한 교육 정보를 제공하라. (c) 아동의 견해가 고려되는 정도와 그것이 정책과 프로그램 및 아동 자신에 끼친 영향을 정기적으로 검토하라. (d) 아동의 청취권에 관한 위원회의 일반논평 12호(2009년)를 고려하라.
83. 위원회는 아동친화적인 절차규정을 더욱 발전시키고 피해아동의 프라이버시와 존엄성이 더 존중받도록 할 것을 권고하며, 적절한 법 조항과 규정을 통해 모든 피해아동과 범죄목격자 아동, 즉, 학대, 가정폭력, 성적 혹은 경제적 착취, 유괴, 인신매매 등과 같은 범죄의 피해자와 목격자 아동이 협약이 요구하는 보호를 받도록 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대한민국이 아동범죄피해자와 증인관련문제에서의 유엔사법지침(경제사회이사회 결의안 2005/20의 부록)을 충분히 고려할 것을 촉구한다.

⊙ 아동학대에 대한 아동보호체계 전반에 있어 아동의 의견청취권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음.

- 「아동복지법」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해당 아동에 대한 보호조치를 취함에 있어 아동의 의견을 존중할 것을 규정함.
- 2014.1.28. 법률 제12341호로 제정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아동학대처벌법'이라 함) 및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가정폭력처벌법'이라 함)에서도 피해아동에 대한 조치 및 명령을 함에 있어 피해아동의 의견진술권을 규정함.

아동복지법
▷ 제15조(보호조치) ③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보호조치[3]를 함에 있어서 해당 보호대상아동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하며, 보호자가 있을 때에는 그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5호의 아동학대행위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8조(친권상실 선고의 청구 등) ③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친권행사의 제한 또는 친권상실의 선고 청구를 할 경우 해당 아동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 제19조(아동의 후견인의 선임 청구 등) ③ 제1항에 따른 후견인의 선임 및 제2항에 따른 후견인의 변경

청구를 할 때에는 해당 아동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 제20조(아동의 후견인 선임) ② 법원은 후견인이 없는 아동에 대하여 제1항에 따라 후견인을 선임하기 전까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및 아동복지전담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임시로 그 아동의 후견인 역할을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아동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제24조(피해아동·청소년의 보호조치 결정) 법원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사건의 가해자에게 「민법」 제924조에 따라 친권상실선고를 하는 경우에는 피해아동·청소년을 다른 친권자 또는 친족에게 인도하거나 제45조 또는 제46조의 기관·시설 또는 단체에 인도하는 등의 보호조치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아동·청소년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제14조(임시조치의 청구) ② 피해아동, 그 법정대리인, 변호사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제1항에 따른 임시조치의 청구 또는 그 신청을 요청하거나 이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제23조(임시로 후견인의 임무를 수행할 사람) ② 제1항의 경우 판사는 해당 피해아동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하며, 피해아동, 변호사 및 아동복지전담기관의 장 등 피해아동을 보호하고 있는 사람은 그 선임에 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 제47조(가정법원의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명령) ③ 판사가 제1항 각 호의 피해아동보호명령을 하는 경우 피해아동, 그 법정대리인, 변호사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관할 법원에 대하여 필요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제8조(임시조치의 청구 등)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임시조치의 청구 또는 그 신청을 요청하거나 이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제33조(피해자의 진술권 등) ② 법원은 제1항에 따라 피해자를 신문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정보호사건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3) 제15조(보호조치)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관할 구역에서 보호대상아동을 발견하거나 보호자의 의뢰를 받은 때에는 아동의 최상의 이익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8.〉

1. 전담공무원 또는 아동위원에게 보호대상아동 또는 그 보호자에 대한 상담·지도를 수행하게 하는 것
2. 보호자 또는 대리양육을 원하는 연고자에 대하여 그 가정에서 아동을 보호·양육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
3. 아동의 보호를 희망하는 사람에게 가정위탁하는 것
4. 보호대상아동을 그 보호조치에 적합한 아동복지시설에 입소시키는 것
5. 약물 및 알콜 중독, 정서·행동·발달 장애, 성폭력·아동학대 피해 등으로 특수한 치료나 요양 등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전문치료기관 또는 요양소에 입원 또는 입소시키는 것
6. 「입양특례법」에 따른 입양과 관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

⊙ 현행법령에 따른 학대피해아동의 보호체계에는 경찰, 검찰, 아동보호전문기관, 법원이 단계적·중첩적으로 관여하고 있음.

보건복지부「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지원 사업안내(2016)」
1. 경찰의 역할 ◆ 피해아동 보호조치 등 원활한 사례개입을 위해 아동보호전문기관과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 1) 아동보호전문기관 개입사례 중 고소고발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 진행과정 정보공유에 대한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요청에 적극적으로 협조 2) 경찰에서 피해아동 대상 진술녹화 진행 시, 아동보호전문기관 담당 상담원 동석하도록 하여, 정보공유에 적극 협조 3) 경찰에서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현장조사 동행하여, 아동학대 발생 사항을 직접 확인한 경우 별도의 수사의뢰 없이 경찰에서 사건 진행 ◆ 피해아동에게 필요한 절차 및 지원서비스(피해자 국선변호사, 진술조력인) 안내 2. 검찰의 역할 ◆ 피해아동을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피해아동과 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동석을 법원에 신청하고 성폭력·아동학대 전담검사제도, 진술조력인 제도 등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피해아동 보호 3.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역할 ◆ 피해아동 및 학대행위자·가족에 대한 상담·교육 등의 서비스 제공 : 진술조력인, 국선변호인 선정신청 지원 및 신뢰관계인 동석 등 ◆ 진술녹화실 운영 ◆ 설치기준 : 16.5m2 이상으로 상담실, 심리검사 및 치료실, 자료실 또는 대기실 등을 설치 (아동복지법 시행령 별표5)

⊙ 아동의 의견청취권 보장을 위한 제도적 보완

- 관련법령에서 사법절차 내에서의 아동이 입을 수 있는 피해를 방어하고 법률상 진술권 보장을 위한 국선변호사 및 보조인 제도가 새롭게 도입되었지만, 그 역할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안내하는 법규 및 가이드라인을 찾아볼 수 없음.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 제27조(성폭력범죄 피해자에 대한 변호사 선임의 특례) ① 성폭력범죄의 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이하 "피해자등"이라 한다)은 형사절차상 입을 수 있는 피해를 방어하고 법률적 조력을 보장하기 위하여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제30조(피해아동·청소년 등에 대한 변호사선임의 특례) ①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은 형사절차상 입을 수 있는 피해를 방어하고 법률적 조력을 보장하기 위하여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제16조(피해아동에 대한 변호사 선임의 특례) 아동학대범죄사건의 피해아동에 대한 변호사 선임 등에 관하여는「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성폭력범죄"는 "아동학대범죄"로, "형사절차"는 "형사 및 아동보호 절차"로, "피해자"는 "피해아동"으로 본다.

- 수사 및 재판절차에서의 아동의 진술과정에 '신뢰관계 있는 자'가 동석할 수 있다는 규정도 주변 환경에 특히 민감한 아동의 특성을 고려하여 도입된 제도이나, 아이러니하게도 '신뢰관계 있는 자'의 동석이 없이 진행된 아동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되어, 아동의 진술권 자체에 정당한 비중을 부여할 수 없게 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제28조(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의 동석) ① 법원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에 검사,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재판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등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을 동석하게 하여야 한다.

나. 입양

유엔아동권리위원회 권고사항
50. 위원회는 입양특례법이 발효되기 전 입양의 경우에도 충분하고 동일한 보호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취할 것을 대한민국에 권고한다. 위원회는 또한 대한민국이 자국의 해외입양제도가 특히 21조를 포함한 협약의 원칙과 조항에 완전히 합치될 수 있도록 법안을 개정하고, 좀 더 세부적으로는 다음의 사항을 시행하도록 해외입양제도에 대해 보다 면밀히 검토하도록 촉구한다. a) 중앙입양정보원이 헤이그협약 6조에 따라 그 역할과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명확히 임무권한을 규정하고 충분한 인적, 기술적, 재정적 자원을 제공하라. 여기에는 입양 후 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한국어에 능숙하지 않을 수 있는 해외 입양된 이들이 이러한 사실을 실질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b) 입양과정에서 나이와 성숙도를 고려하여 아동의 견해에 적절한 중요성을 부과하며, 아동 이익 최상의 원칙이 가장 중요한 고려사항이 되도록 하라. c) 청소년 미혼모의 동의가 있어야만 그들의 자녀를 입양 보낼 수 있도록 하며, 이러한 동의가 사실상 또는 실질적으로 강요에 의한 것이 아니도록 하라. d) 해외입양을 포함한 모든 입양이 명확한 임무권한을 가지고 사법적 감독과 규제를 담당할 역량을 가진 중앙기구의 허가에 따라 이루어지도록 하는 조치를 시행하라. e) 국제입양 관련 아동보호 및 협력에 관한 1993년 헤이그 협약 비준을 고려하라.
아동권리위원회 일반논평 No.12 "아동의 의견청취권" (2009)
80. 표현의 자유에 관한 제13조와 알 권리에 관한 제17조는 의견청취권을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중요한 전제조건이다. 이 조항들은 아동이 권리의 주체임을 확고히 하고, 제12조와 더불어 아동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신의 발달하는 능력에 따라 이러한 권리를 행사할 자격이 있다는 것을 확고히 한다.

⊙ 현행법령은 「민법」, 「입양특례법」, 「가사소송법」, 「가사소송규칙」 등에서 입양절차에 있어 13세 이상인 아동에게만 당사자의 의사를 표현할 기회를 부여하고 있는 결과, 13세 미만인 아동의 정보접근권을 박탈하고 있음.

- "헌법 제21조가 정하는 표현의 자유는 개인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유지하고 행복을 추구하며 국민주권을 실현하는데 필수불가결한 것으로 오늘날 민주국가에서 국민이 갖는 가장 중요한 기

본권의 하나로 인식되고 있다. 이러한 사상 또는 의견의 자유로운 표명은 자유로운 의사의 형성을 전제로 하는데, 자유로운 의사의 형성은 충분한 정보에의 접근이 보장됨으로써 비로소 가능한 것이며, 다른 한편으로 자유로운 표명은 자유로운 수용 또는 접수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정보에의 접근·수집·처리의 자유 즉 "알 권리"는 표현의 자유에 당연히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헌재 1989.94. 88헌마22)."

- 위 각 규정들은 13세 미만인 아동의 정보접근권을 박탈하고 있으며, 이는 국민의 알 권리라는 인간의 자유권적 기본권을 배제하는 것임.

민법
▷ 제869조(입양의 의사표시) ① 양자가 될 사람이 13세 이상의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입양을 승낙한다.

입양특례법
▷ 제12조(입양의 동의) ④ 13세 이상인 아동을 입양하고자 할 때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동의권자의 동의 외에 입양될 아동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제13조(입양동의의 요건 등) ④ 입양기관은 제12조제4항에서 정한 입양동의 전에 입양될 아동에게 입양동의의 효과 등에 관한 충분한 상담을 제공하여야 하며, 상담내용 등에 대하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제17조(파양) ② 가정법원은 파양이 청구된 아동이 13세 이상인 경우 입양아동의 의견을 청취하고 그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입양특례법 시행규칙
▷ 제11조(친생부모와 입양될 아동에 대한 상담내용) ② 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13세 이상의 입양될 아동에 대한 상담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내용[4)] 2. 양친이 될 사람에 관한 정보
입양특례법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 제3조(관계자의 의견의 청취) 가정법원은 입양허가 청구에 관한 심판을 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의견을 들을 수 없거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양자가 될 사람(양자가 될 사람이 13세 이상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가사소송법
▷ 제45조의8(입양허가의 절차) ① 가정법원은 입양의 허가 심판을 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그 사람이 의식불명, 그 밖의 사유로 자신의 의사를 표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양자가 될 사람(양자가 될 사람이 13세 이상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가사소송규칙
▷ 제62조(입양허가의 절차 등) ① 가정법원은 입양의 허가 심판을 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의견을 들을 수 없거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양자가 될 사람이 13세 이상인 경우에는 양자가 될 사람

▷ 제62조의3(관계자의 의견의 청취) ① 가정법원은 친양자 입양에 관한 심판을 하기 전에, 친양자가 될 사람이 13세 이상인 경우에는 친양자가 될 사람, 양부모가 될 사람, 친양자가 될 사람의 친생부모, 친양자가 될 사람의 후견인, 친양자가 될 사람에 대하여 친권을 행사하는 사람으로서 부모 이외의 사람, 친양자가 될 사람의 부모의 후견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또한 우리나라의 모든 입양은 「입양특례법」상 입양기관에 의하여 이루어지거나 「민법」상 사적계약 관계로 이루어지고 있음. 입양 자체는 가정법원의 허가가 있어야 효력이 발생하지만, 대부분의 입양이 영유아기에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아동의 참여권을 보장하기 위한 법 개정과 가정법원의 노력만으로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상당히 어려운 현실임.

4) 입양의 법률적 효력 및 파양, 입양동의의 요건 및 입양동의의 철회, 입양절차, 법 제36조에 따른 입양정보 공개 청구

Ⅲ 제2차 아동권리포럼

제2차 아동권리포럼
2016. 5. 17. 15:00-17:30 페럼타워 세미나실 R2

보건복지부위탁 2016년도 아동인권증진사업
제2차 아동권리포럼

2016. 5.

Ⅰ 제2차 아동권리포럼 개요

□ 제2차 포럼 개요

- 일시: 2016년 5월 17일 화요일 15:00 - 17:00 (2시간)
- 장소: 페럼타워 2층 세미나실R2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5길 19)
- 주제: 국내 아동참여기구에서의 아동참여와 의견존중

□ 내 용

① 아동참여기구 참여자 및 운영담당자 발제

- '아동참여기구'의 실제 사례 발표

[발제1] 서울특별시 어린이·청소년 참여위원회 참여사례

(서은송 부위원장, 서울특별시 어린이·청소년 참여위원회)

[발제2] 금천구청소년의회 "교복입은 시민" 운영사례

(조성익 교육전문관, 서울특별시 금천구청)

② 자문위원회의 질의응답을 통한 토의

- 발제자 발표를 통한 실태 인식
- 아동의 의견청취권이 보다 능동적으로 보장될 수 있는 법적·제도적 개선방안 모색

③ 제3차 주제 선정 및 일정 논의(제3차 아동권리포럼 발제자 추천)

Ⅱ-1 서울특별시 어린이·청소년 참여위원회 참여사례

서 은 송 (서울특별시 어린이·청소년 참여위원회 부위원장)

1. 활동계기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서울특별시 어린이·청소년참여위원회에 스스로 지원하여 신청하였습니다. 위원회 관련 홍보는 시에서 자치구와 학교에 공문을 보내고, 홈페이지·SNS 등 온라인 홍보로 홍보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학교에 서울특별시 어린이·청소년 참여위원회 모집 및 홍보 공문이 와도, 칠판 앞에 조용히 붙여만 놓거나 공문마저 복사해놓지 않는 선생님들이 대부분입니다. 개인지원이나 본인이 활동하고 있는 곳에서의 추천 등을 받아 지원하는 방법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스스로 도봉구청 홈페이지를 확인하여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어른들의 힘으로 인해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낼 수 있는 의견과 정책에는 아직은 한계가 있습니다. 세상을 더 많이 배우고 경험한 분들이기에 옳은 정책도 많지만, 몇몇 정책들 중에서는 어린이·청소년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거나, 어린이·청소년으로써 생겼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던 정책들이나 생각들이 많았었습니다. 서울시청 소속 활동을 하게 되면 그나마 우리들의 목소리를 내는데 큰 힘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였기 때문에, 서울특별시 어린이·청소년 참여위원회에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2. 서울특별시 어린이·청소년 참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서울특별시 어린이·청소년참여위원회는 교육분과, 권리분과, 문화분과, 복지분과, 참여분과의 총 5개의 분과가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저연령대인 초등학생의 경우 참여분과 위원으로 구성됩니다. 나머지 위원들은 지원할 때 내는 정책제안서의 내용들을 토대로 4가지 분야로 나눈 후 각자 희망하는 분과를 1, 2, 3지망으로 제출하며, 이에 따라 가능한 원하는 분과로 인원이 몰리지 않게 골고루 분포됩니다. 각 분과별로 16~19명의 위원들이 분포되어 있으며, 올해의 경우에는 문화분과 외에는 모두 1지망으로 쓴 분과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서울특별시 어린이·청소년 참여위원회는 「서울특별시 어린이·청소년 인권조례」에 따라 만 19세 미만의 어린이·청소년이 참여대상입니다. 올해의 경우, 만 9세부터 만 18세까지의 어린이·청소년 98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100명 위촉, 2명 자진사퇴) 초등학생은 22명, 중학생은 31명, 고등학생은 42명, 대학생은 3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남자 42명, 여자 56명으로 성별 또한 잘 분포되어 있습니다.

10세	11세	12세	13세	14세	15세	16세	17세	18세	19세	20세
3명	1명	9명	9명	11명	6명	14명	15명	23명	4명	3명
3%	1%	9%	9%	11%	6%	14%	15%	23%	4%	3%

10세부터 20세까지 있다 보니 연령과 발달적 특성을 이유로 현실적으로 발언권이 제한된 위원 등, 다양한 연령과 환경의 아동들이 논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차별적 요소는 없는지 여부가 궁금하실 수 있습니다. 2014년도의 경우에는 초등학생과 중·고등학생이 함께 같은 분과로 구성되어 의견을 내다보니 아무래도 초등학생들이 그냥 언니, 오빠들의 의견을 따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의 경우에는 초등학생의 발언권이 사실상 묻혔지만, 이번 참여분과는 초등학생 위원들만으로 구성함으로써 초등위원들의 의견이 존중될 수 있고, 차별적 요소 또한 해소되었다고 생각합니다.

3. 위원으로서의 활동내용

저는 2014년도와 2016년도 현재, 서울특별시 어린이·청소년 참여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의 경우에는 문화분과 위원으로써 지역 내 청소년수련관의 홍보나 문화분야에 정책을 제안하였습니다. 영광스럽게도 서울시장님과 직접 소통하며 정책을 제안할 수 있는 자리인 '희망총회'에서 사회자를 맡아 시장님과의 대화를 이끌어 나가기도 하였습니다. 2016년도 현재는 서울특별시 어린이·청소년 참여위원회 부위원장이자 서울특별시 어린이·청소년 인권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이 되어 한 분과의 위원으로 속해있지는 않고 운영분과의 일원으로서 위원회에 대한 큰 틀을 짜고 어떠한 방향으로 흘러갈지에 대하여 의견을 나누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어린이·청소년 참여위원들이 의견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과연 위원들의 의견이 실현 가능한지 여부'에 대하여 의문이 들 경우에는 전문가 자문단 위원들 및 운영기관인 시립청소년활동진흥센터 선생님들께 여쭙고 조언을 받기도 합니다. 다만, 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해당 지자체에게 관련 내용에 대한 정보제공을 요청하는 등 정보를 제공받기 위한 공적절차를 이용한 경험은 없습니다.

그러한 과정을 거쳐 정책을 제안하는 자리인 희망총회까지는 대략 7개월 이상을 준비기간이 있기에, 총회에서 위원들이 발언할 시간이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또한 희망총회에서는 위원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이야기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추첨 등을 통해 최대한 공정하게 발언권이 주어집니다.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가 보장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아무래도 시장님께서 바쁘시다보니, 희망총회는 항상 1시간 30분에서 2시간 정도로 제한되어 계획됩니다. 시장님께서 더 많은 시간을 함께할 수 있다면, 그만큼의 시간만큼 위원들이 정책 제안을 할 수 있을 것이고 아동의 의견진술권이 더욱 보장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렇게 참여한 위원회의 의견이 실제 정책이나 사업에 반영되기도 하였습니다. 2014년 어린이청소년희망총회에서는 안전복지분과가 후기청소년의 대중교통 요금 인하를 주요 골자로 제안한 [후기청소

년 복지에 대한 관심 촉구] 정책을 제안하였는데, 2015년도 10월경 만 19~24세 늦깎이 중고등학생 대상으로 반영되었습니다.

정책이 반영된 결과, 서울시는 중·고등학교에 늦게 진학한 학생들을 위해 적용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으며 만 2천여 명이 추가로 할인 혜택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지하철과 버스가 각각 530원과 480원 할인되는 청소년 할인 요금이 적용됨으로써, 대중교통을 720원에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할인을 받기 위해서는 청소년 전용 교통카드를 만들거나 버스 운전사에게 학생증을 제시하면 됩니다. 희망총회를 통하여 시장님과 직접 소통하고 일구어낸 정책이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4. 위원회 활동에서의 긍정적인 점과 아쉬운 점

희망총회 이후, 위원회의 의견반영 여부에 대하여 해당 위원들에게 적절하고 상당한 정도의 피드백이 제공되었는지에 대해 궁금하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희가 희망총회 때 내었던 의견에 대하여 피드백을 받는 데에는 한계점이 존재합니다. 이는 위원의 임기를 1년을 원칙으로 하는 것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들이 낸 의견이 반영되기 위해서는 아무리 빨라도 최소 1년 정도가 걸리기 때문입니다. 물론, 저희 활동의 경우 2년까지 임기가 가능하나 사실상 체제의 굴레는 1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희망총회가 끝나면, 1년의 활동이 거의 끝난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위원회 구성원들이 연임을 하지 않는 이상 의견이 반영되어 피드백을 받아야 할 시기에는 사실상 위원 대부분이 바뀌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피드백을 제공받기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피드백을 받을 수 있다한들 현재 희망총회를 준비하고 있는 시기에서, 과거 희망총회 때 나온 의견을 또 수정하고 고쳐나가기엔 무리지 않을까 합니다.

올해부터는 전년도 위원들이 제안한 정책들이 수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여부를 직접 모니터링 할 계획에 있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제안한 정책들이기 때문에,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여부도 저희가 관찰하고 확인해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서울특별시 어린이·청소년참여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무엇보다도 우리들의 목소리가 조금이라도 전해질 수 있다는 것에 이러한 활동이 좋게 느껴졌습니다.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까지 다양한 나이층으로 서로 의견을 내고 조율해가며, 각자의 나이에만 느낄 수 있는 불편함이라거나 필요한 정책을 들으며 공유하고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 너무나도 기뻤습니다. 평소에는 인권이나 우리들이 누릴 수 있는 권리에 관심이 없던 사람이라도, 이러한 활동을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가질 수 있는 미묘한 감정들이 있습니다.

초반에는 “과연 우리가 정책을 제안한다고 반영이 될까? 안 믿을래.” 라고 하는 친구들도 많았지만, 저는 단연코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실제로 반영이 된 것은 저희 눈에도 보이는 결과입니다. 무엇보다도 틈으로 바람을 불어 어른들의 귀를 간질일 수 있는 활동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아쉬운 점은 이러한 훌륭한 활동에 대한 홍보가 너무나도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함께 활동하는 위원이나 친구들에게 서울특별시 어린이·청소년 참여위원회에 인지도에 대해 알아본 적이 있었

습니다. 대부분의 친구들은 어떠한 활동인지, 무엇을 하는 활동인지는커녕 이러한 위원회가 꾸려져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습니다.

보다 적극적인 아동의 참여가 가능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홍보부문에서의 어른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어린이·청소년 위원들이 아무리 플랜카드를 들고 '저희가 이러한 활동을 하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라고 외쳐도 사실상 한계가 존재합니다. 홍보부문에 대하여 어른들이 서울특별시 어린이·청소년참여위원들의 의견을 진지하게 듣고, 더 나아가 위원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준다면 아동의 참여는 물론, 아동의 권리에 대한 인지도까지 높아질 것이라 예상합니다. 나아가 홍보가 많이 되면 될수록 더 멋진 정책이 나올 것이라 기대합니다.

Ⅱ-2	금천구청소년의회 “교복입은 시민” 운영사례

조 성 익 (서울특별시 금천구청 교육전문관)

1. 들어가며 : 민주주의의 역사는 선거권 확대의 역사이다.

역사상 ‘시민’이란 재산과 교육을 가진 제3계급으로 왕정에 대항하여 자유와 인권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투쟁하는 근대의 특정 집단을 일컫는다. 시민이 정치에 참여하는 의미에서 ‘참정’은 ‘선거권’으로 대표된다. 이 선거권의 확대가 시민계급의 확장을 선도하였다.

> *“현대의 시민은 선거권의 확대로써 모든 국민을 포괄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권리를 위해서 투쟁하지 않는 사람도 포함돼 버린 것이지요. 전 국민이 초기 민주주의시대의 시민과 같은 시민 자세로 무장이 됐을 때 제대로 된 민주주의가 될 수 있지 않겠는가…. 행동하는 시민에 의한 민주주의, 이것이야말로 국민주권의 내실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 (노무현 대통력 원광대 명예박사학위 수여식 특강, 2007.6.8. 오마이뉴스 발췌[5])*

최근 많은 사람들이 민주주의의 위기라는 이야기를 한다. 정치·경제 및 사회전반에서 그 문제의 원인을 성숙하지 못한 민주주의에서 찾기도 한다. 교육 문제나 아동·청소년에 대한 문제 역시 이해당사자간 불평등한 지위나 역할로부터 시작한다고 생각한다. 지금을 ‘헬조선’이라 하고 ‘금수저’, ‘흙수저’하는 수저계급론의 등장은 기회의 불평등, 비민주적 의사결정, 낮은 수준의 사회보장 등에서 비롯한다고 하겠다.

인구절벽 및 초고령화는 경제성장의 적신호를 준다면, 민주주의의 후퇴는 사회발전에 걸림돌이 되는 셈이다. 어느 때보다 민주주의 가치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이 절실하게 필요한 시기이다.

2. 금천구 청소년사업의 촉진배경

최근 언론 등을 통해 주목받은 금천구청소년의회와 금천구 총선거는 앞서 언급한 민주주의의 확장하려는 의도에서 시작하였다.

금천구는 지방자치단체 민선 4기(2010~2014)를 시작하면서 ‘구민우선 사람중심’의 구정철학으로 교육과 복지, 일자리 관련 사업에 역점을 두었다. 교육서비스를 통해 성장한 구민은 적정한 일자리를 통해 경제생활을 영위하고, 보편적 복지서비스를 통하여 안정적 삶을 보장받는다.

---

5)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0415297

‘구민 우선 사람 중심’의 구정철학은 조직체계에 반영되어 있다. 학교교육 및 평생교육 등을 지원하는 부서에 여성가족사업 중 하나인 청소년분야를 포함하여 부서 내에서 협업이 원할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조정했다. 금천구 교육지원과는 교육지원팀, 청소년팀, 진로교육팀이 긴밀하게 협의하기에 청소년 분야 정책에서 다양한 시너지를 내고 있다.

청소년사업과 학교지원사업의 결합은 자치구 행정의 한계를 뛰어넘어야 한다. 행정기관인 자치구가 교육기관인 학교·교육청의 협력을 이끌어내지 못한다면 사업추진 성과를 높일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금천구는 서울특별교육청(이하 서울시교육청)과 관내 모든 학교와 끊임없이 신뢰관계를 맺어왔다. 특히 서울시교육청 정책사업인 ‘서울형혁신교육지구’를 통해 지역차원의 공교육 여건을 혁신하려는 시도는 청소년활동진흥 및 청소년권리신장 정책의 직접적인 동인이 된다.

이를 종합하면, 금천구 청소년사업은 학교교육 등 교육자치를 지원하는 사업체계와 사람중심의 주민복지 서비스 증진체계를 결합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마을공동체’, ‘주민협치’를 중시하는 서울시의 정책기조 역시 금천구의 청소년사업을 촉진하고 있다.

3. 금천구청소년의회를 만들기까지

청소년기본법[6]에서는 청소년은 본인과 관련된 의사결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보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대다수의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역의 청소년참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금천구도 지난 2012년부터 ‘금천청소년별밭두레단(약칭 금별단)’이라는 명칭의 금천청소년참여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금천청소년참여위원회는 금천구에 거주하는 청소년 30명을 공개모집하여 청소년정책토론회, 청소년연합축제 등 다양한 청소년사업을 직접 기획 및 운영하고 있다. 금천구청소년참여위원회를 활동을 통해 청소년은 정책참여와 지방자치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실천이 가능하다.

> *“…청소년들은 설문조사를 통해 친구, 학부모 850명의 서명을 받아 순찰을 강화해 달라는 탄원서를 냈다. 제안은 실제로 정책에 반영됐다. 경찰은 야간자율학습이나 학원이 끝나는 귀가 시간대인 오후 9~11시 순찰을 강화해 청소년들에게 보다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게 됐다. 청소년들이 사거리를 안전하게 오가게 된 것은 ‘금천청소년별밭두레단’의 활약 덕택이다.” (2013.12.27. 서울신문[7])*

6) 제5조의2(청소년의 자치권 확대) ① 청소년은 사회의 정당한 구성원으로서 본인과 관련된 의사결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이 원활하게 관련 정보에 접근하고 그 의사를 밝힐 수 있도록 청소년 관련 정책에 대한 자문 · 심의 등의 절차에 청소년을 참여시키거나 그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과 관련된 정책 수립 절차에 청소년의 참여 또는 의견 수렴을 보장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7) http://go.seoul.co.kr/news/newsView.php?id=20131227015010

2013 청소년정책토론회 ‘별바라기’	2015 청소년연합축제 ‘두근거릴 즐’

금천구는 청소년 정책참여활동을 통해 청소년대안공간의 필요성을 확인하였다. 이를 정책에 반영하여 2013년부터 청소년문화공간 ‘꿈꾸는 나무(약칭 꿈나)’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꿈나는 특별히 규정하지 않고, 청소년이 스스로 그 목적을 발굴하는 의미에서 ‘대안공간’이다. 따라서 공간의 운영·관리를 청소년 스스로가 책임지고 운영하도록 ‘꿈나운영단’을 조직하고, 다양한 실험을 진행하고 있다. 예를 들면 꿈나 1층 청소년카페 경영을 청소년카페 운영팀 청소년이 직접 맡아, 메뉴개발, 영업 및 정산관리에서 수익분배까지 청소년끼리 협의하여 결정하고 있다.

“서울시 금천구 청소년문화공간 '꿈꾸는나무'를 운영하고 있는 '꿈나운영단' 청소년들이 운영 수익금을 지역 장학재단인 '금천미래장학회(이사장 박준식)'에 기부했다. … 이번 기부는 청소년들의 '꿈꾸는나무' 경영활동의 일환으로, 청소년운영단 스스로 매달 수익금을 일정비율로 적립하여 사회로 환원하자고 결정했다.” (2014.9.23. 아시아뉴스[8])

꿈꾸는 나무 운영단 장학금 전달	꿈꾸는 나무 청소년휴카페 운영

여러 해 동안 청소년의 지역활동 경험이 쌓이고 선·후배 간 교류가 이루어지면, 금천구 청소년들은 자연스레 스스로 행동할 수 있는 “깨어있는 시민”, 집단지성으로 성장하게 된다. 그리고 사업 초기에 참여한 청소년들이 청년으로 성장하면서 청년공동체가 되는 것이다.

8) http://www.anewsa.com/detail.php?number=714848&thread=09r02

개개의 청소년들을 청년공동체로 성장시키면서, 금천구는 민간단체인 “꿈지락네트워크”와 함께 청년과 청소년의 연계방안을 기획하였다. 금천구 청소년들에게 멘토링 서비스를 제공하는 청년단체인 꿈지락네트워크[9]는 청소년-청년의 동반성장 순환체계를 만드는 데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4. 정책대결을 지향하는 청소년정당제, 금천구청소년의회

금천구는 금별단(금천청소년참여위원회)의 대표성 및 책임성 부족 등 단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금천구청소년의회를 검토하였다. 금별단은 구성원을 공개모집을 통해 선발하므로 참여의 제약이 없고, 기회의 평등을 보장하고 있다. 하지만 행정정보 전달의 한계 등의 현실적 제약으로 말미암아 금천구 청소년을 대표하지 못하는 한계도 존재한다.

또한 금별단에서 제시하는 정책이나 제안하는 사업은 이미 실행하고 있거나, 실행이 불가능한 경우가 더러 있어 애써 발굴한 제안이 쉽게 사장되곤 한다. 이러한 경험이 반복되면서 청소년 참여 정책이 무책임하고 소모적인 행정행위로 전락해 버린다는 우려도 생겨났다.

금천구청소년의회는 다양한 청소년집단에서 참여자를 모집하여 ‘금천구청소년네트워크’를 구성하였다. 이를 통해 청소년 자치활동의 참여기회를 보장하며 전체 청소년의 대표성과 대의성을 확보하고자 한다. 금천구청소년네트워크에는 선거를 통해 전체 학생의 대표로 뽑힌 학생집단(학생회, 학생회간부 등) 중 참여의사가 있는 청소년이 참여한다. 제도권 학교에 속하지 않은 학교밖청소년이나 참여의지가 있지만 비록 학내 학생자치기구에 속하지 못한 학생에게도 자기추천을 통한 참여기회를 부여한다. 또한 금천구가 운영하는 금별단 역시 금천구청소년네트워크의 구성원으로 정하는 등 총 100여명의 청소년대표자가 한자리에 모이게 되었다.

금천구청소년네트워크 워크숍

금천구청소년네트워크 국회방문

하지만 어떤 조직이든 100여명은 적은 인원이 아니다. 따라서 금천구청소년네트워크는 운영의

9) http://www.ggumjirak.org

편의상 분과를 구성할 수밖에 없었다.

금천구청소년의회 초기 기획에서는 전체 조직을 관심 있는 주제별 5~6개로 나눠서 운영하기로 정하였다. 하지만 관심 주제별 분과로 구분하는 것이 기존 청소년자치 사업 또는 마을공동체 등 유사사업과 차별화되지 않아서 신규사업의 동력이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다. 이러한 우려를 바탕으로 고안한 방식이 현 '청소년정당제'이다.

형태로 본다면 주제별 분과(위원회)제나 정당제는 비슷할 수 있다. 하지만 전자와 후자는 운영 가치에서 분명한 차이가 있다. 분과제는 전체를 필요에 따라 일정한 크기로 나눈 방식이라면, 정당제는 비슷한 뜻을 가진 사람끼리 모인 방식이다. 따라서 전자가 피동적인 청소년자치의 모델이라면, 후자는 청소년 참여자의 의지가 담긴 능동형 청소년자치 모델인 셈이다.

금천구는 청소년정당제를 고안하여 금천구청소년의회의 가치를 충족시킬 수 있는 다양한 대안을 만들어 낼 수 있었다. 청소년들이 정책을 기준으로 각 정당으로 이합집산 하는 과정에서 출신 학교끼리의 패거리문화를 차단할 수 있다.

또한 현실 정치의 정당정치제를 모사하면서 실제 정당정치의 작동원리를 체득하게 된다. 청소년 당원은 의원으로 당선되고, 집권정당이 되기 위하여, 사회수요를 감안하고 실현가능한 책임 있는 정책공약을 연구하게 되었다.

이전에 단순히 제안만 하던 정책토론회와 달리 청소년정당은 정책으로 선거를 치르며, 결과에 따라 집행력을 보장받게 되어 있다. 이를 위하여 금천구는 청소년정당의 정책이 청소년의원 또는 청소년당원들에 의하여 실현될 수 있도록 일정 예산을 '청소년참여예산'으로 확보하였다.

청소년정당제와 청소년정책구현, 청소년참여예산 도입 등을 토대로 금천구는 청소년총선거를 기획하게 된다. 정당정치가 선거를 통해 집권을 하는 원리를 착안하여, 금천구청소년총선거는 정책으로 대결하는 비례대표방식의 정책투표로 결정하였다. 민의를 제대로 대변하지 못하는 소선구제 현실정치의 단점을 보완하여 금천구청소년총선거는 금천구 전체가 단일 선거구인 중·대선거구제를 채용한 것이다.

선거 시기 결정도 중요한 요소였다. 제20대 국회의원총선거가 4월 13일에 실시되는 것을 감안하여, 현실정치 선거의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선거의 관심이 높을 시기를 검토하였다. 또한 그 즈음이 '세월호참사 2주기'임을 감안하여 청소년끼리 연대해야 한다는 취지로 4월 16일을 금천구청소년총선거일로 정하였다. 최초로 치러질 금천구청소년총선거는 참사라는 비극적 슬픔을 딛고 당당히 청소년이 '깨어있는 시민'으로 선언하는 날이라는 상징성을 부여한 것이다.

금천구청소년총선거 홍보 카드뉴스

"금천구의회 초대의장인 금천고등학교 박정집 학생은 "금천구청소년총선거인 4월16일이 세월호 참사 2주기인데 무조건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 스스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겠다는 다짐을 하게 된다"며 "금천구청소년의회 활동으로 청소년이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세상이 빨리 찾아오길 바란다"며 말했다. 차성수 금천구청장은 "현행 정치제도를 근간으로 구성한 청소년의회를 통해 청

소년들은 선거민주주의, 의회민주주의, 참여민주주의의 가치와 원리에 대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 금천구가 청소년 참정권이 시작되는 민주주의 성지로 기록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16.4.13., 경향신문[10])

5. 맺으며 : 즐거움 시작 ⇒ 청소년인권 증진 ⇒ 참여민주주의 실현

지난 4월 16일 제1대 금천구청소년총선거를 치르면서 청소년당원, 청소년의원후보자 그리고 선거에 참여한 청소년유권자 모두 이전까지 경험할 수 없었던 즐거움을 만끽하였다. 실제 투표와 똑같은 시설에서 똑같은 절차에 따라 실시하였기에, 그동안 청소년은 참여할 수 없었던 '실제투표' 참여자체에 호기심이 많았다. 또한 자신이 정한 정당, 그 정당의 정책에 표를 행사하여, 청소년정책에 직접 의사표시를 할 수 있다는 자신감도 생겨났다. 무엇보다 자신의 표가 사표(死票)가 되지 않고, 100% 반영되어 지지하는 정당의 의원이 당선되는 참여민주주의를 경험이 쌓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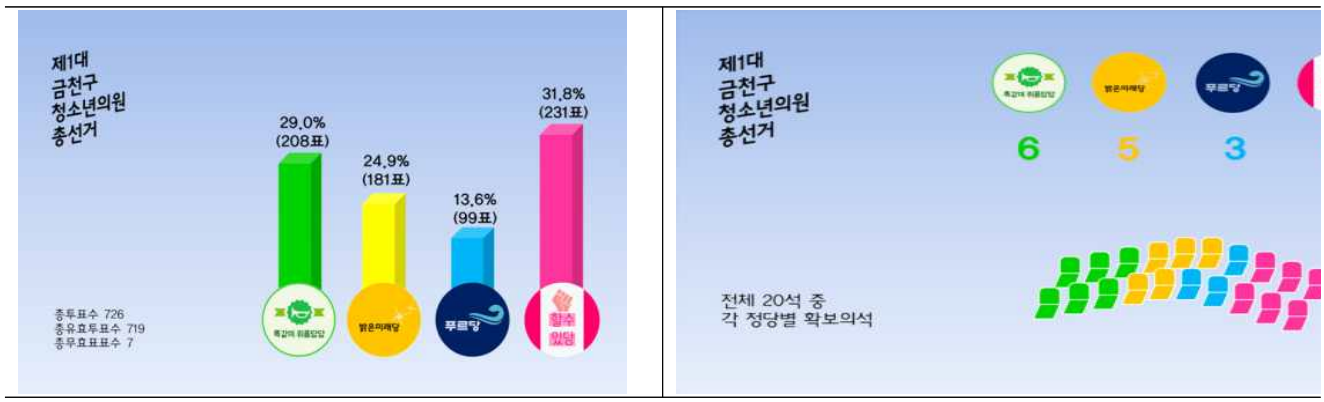

제1대 금천구청소년의원 총선거 결과

최초로 시행하는 제도는 언제나 시행에 부담이 따른다. 청소년네트워크, 청소년정당제, 청소년총선거 등 지난 일련의 프로젝트 기획이 2년이라는 적지 않은 시간이 들었다. 이를 통해 구성된 제1대 금천구청소년의회가 '청소년의회'라는 이름에 걸맞은 역할과 기능, 권한과 책임을 정하기에는 지금보다 더 많은 시간과 더 많은 사람의 합의가 필요할지 모른다.

앞으로 금천구는 청소년전문가, 학생자치 담당교사 및 지역 청년네트워크와 보다 긴밀한 소통체계를 유지하고자 한다. 특히 지역구 국회의원 및 시·구의회의 적극적인 지지와 참여를 이끌어내고자 한다.

10)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4131300001&code=620101

학생회참여예산 “복면고함” 실시	제1대 금천구청소년의원 총선거

지난 총선을 치르면서, 20~30대 젊은 유권자의 표심에 대하여 이야기가 많았다. 투표하지 않는 젊은 층에 대한 비난, 걱정도 많이 여론을 뜨겁게 달궜다. 젊은 층이 투표하지 않는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10대 청소년기에 참여민주주의 경험이 부족한 데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번 금천구청소년총선거가 스스로의 권리를 가꾸고 키워나가는 참여민주주의의 촉매제가 되길 기대해 본다.

부록 서울특별시 어린이·청소년 인권조례

서울특별시 어린이·청소년 인권조례

[시행 2015.10.8.] [서울특별시조례 제6016호, 2015.10.8., 타법개정]

서울특별시 (청소년담당관) 02-2133-4135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민국 헌법」,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아동복지법」, 「청소년기본법」, 「청소년복지지원법」, 「청소년활동진흥법」 등 관계법령에 근거하여 서울특별시 어린이·청소년의 인권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0.8.>

제2조(용어)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5.10.8.>

1. "어린이"이란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만 12세 미만의 사람을 말하고, "청소년"이란 만 12세 이상 만 19세 미만(다만, 19세에 도달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의 사람을 말한다.
   가.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사람
   나. 시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
   다. 시에 있는 사업장에서 노동하는 사람
   라. 시에 있는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사람
2. "시설"이란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 각 호의 시설,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4호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영유아보육법」 제10조 각 호의 어린이집 및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6호의 청소년시설, 그 외 어린이·청소년들이 거주하거나 활동하는 시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학원을 말한다.
3. "학교"란 시 내에 소재한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및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라 설립·운영되는 유치원, 「평생교육법」 제2조 제2호의 평생교육기관을 말한다.
4. "보호자"란 어린이·청소년의 부모, 친권자나 후견인, 또는 보호·양육하거나 그 의무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5. "인권"이란 「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등 대한민국이 가입하거나 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권리 중 어린이·청소년에게 적용될 수 있는 모든 권리를 말한다.
6. "소수자"란 한부모가정, 다문화가정, 탈가정, 이주, 외국인, 종교, 탈북, 성소수자, 노동, 임신 또는 출산, 학습곤란, 학교에 다니지 않는 등의 이유로 차별이나 소외를 받을 수 있는 입장에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책무) ① 시장은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할 때 어린이·청소년의 인권이 실현될 수 있도록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이 조례의 내용을 충실하게 이행할 책임이 있다.
② 시설의 장, 보호자 등은 어린이·청소년의 인권을 존중·실현하고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민은 어린이·청소년의 인권을 존중하고, 지역사회에서 그 인권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④ 민간사업자나 단체 등은 어린이·청소년의 인권이 실현될 수 있도록 협력하고 노력해야 한다.

제4조(국가 등에의 요청) 시장은 어린이·청소년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 다른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기관 등에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조(다른 조례 및 자치구 조례와의 관계) ① 어린이·청소년의 인권에 관한 다른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내용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자치구는 이 조례에 근거하여 자치구의 현실을 반영한 자치구의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제2장 어린이·청소년이 누려야 할 인권

제1절 원칙

제6조(인권의 주체성과 인권보장의 원칙) ① 어린이·청소년은 인권의 주체이며, 자신의 인권 뿐만 아니라 타인의 인권을 존중해야 한다.

② 어린이·청소년은 온전한 한 사람으로서 자신의 일에 대해 의견을 표현하고 참여할 권리가 있다.

③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어린이·청소년의 인권은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행복을 추구하기 위하여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는 최소한의 권리이며, 어린이·청소년의 인권은 이 조례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어서는 아니 된다.

제7조(차별금지의 원칙) ① 어린이·청소년은 나이,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 지역, 국가, 민족, 언어, 장애, 용모 등 신체조건,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 인종, 경제적 지위,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병력, 징계, 성적, 고용형태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② 시장, 시설의 장 또는 종사자는 제1항에 예시한 사유로 어려움을 겪는 어린이·청소년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2절 성장환경과 건강에 관한 권리

제8조(성장환경에 관한 권리) ① 어린이·청소년이 가정으로부터 분리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기관으로부터 특별한 보호 및 지원을 받을 권리가 있다.

② 어린이·청소년은 비상 상황에 처하거나 입양될 경우 자신의 이익이 가장 먼저 고려되도록 보장 받을 권리가 있다.

제9조(건강) ① 어린이·청소년은 자연환경과 어울릴 기회를 가지고 충분한 햇볕과 쾌적한 공기, 적절한 녹지가 확보된 공간에서 필요한 영양을 공급 받으며 거주·활동할 권리가 있다.

② 어린이·청소년은 최적의 건강상태를 유지하고 아플 때 적정한 치료를 받는 등 보건·의료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③ 어린이·청소년은 정기적으로 진료를 받으며, 회복이 필요한 경우 적절한 기회와 공간을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

④ 여성 어린이·청소년은 생리로 인하여 신체적·정신적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지 않고 배려받을 권리가 있으며, 법령이나 지침에 따른 휴가나 휴식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

⑤ 어린이·청소년은 마약과 향정신성 물질의 불법적 사용으로부터 보호받고 이러한 물질의 생산과 거래에 이용당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

⑥ 시장은 어린이·청소년 사이에 증가하는 질병을 예방하고 치료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어린이·청소년의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한 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3절 폭력 및 위험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제10조(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① 어린이·청소년은 모든 종류의 신체적·정신적 폭력, 성폭력, 학대, 착취, 괴롭힘, 비하 등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가 있다. 특히 소수자 어린이·청소년에 대해 앞에서 언급한 일체의 행위는 금지된다.

② 어린이·청소년은 유괴나 매매 또는 거래를 당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

③ 어린이·청소년이 폭력에 의해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회복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받을 권리가 있다.

④ 시장은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어린이·청소년의 폭력피해 실태를 상시적으로 조사하고, 비폭력적이고 평화

로운 가정 및 교육환경, 지역사회 분위기를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안전하게 생활할 권리) ① 어린이·청소년은 평화롭고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가 있다.
② 시장은 어린이·청소년의 안전을 해치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리 체계를 구축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신속하게 피해자를 구조하기 위하여 관계기관 및 지역 주민과 협력한다.

제4절 양심과 표현의 자유 등을 보장받을 권리

제12조(양심과 종교의 자유) ① 어린이·청소년은 양심·사상·종교의 자유를 누린다.
② 어린이·청소년은 양심에 반하는 내용의 행위를 강요받지 아니하며, 특정한 종교나 사상에 대한 학습이나 행사참여를 강요받지 아니한다.

제13조(개성과 표현의 자유) ① 어린이·청소년은 있는 그대로의 그 자신이며, 자신 또는 소속 집단이 고유하게 가진 문화와 언어 등을 간직할 권리가 있다.
② 어린이·청소년은 외모, 복장 등을 통해 자유롭게 자신의 개성과 정체성을 표현할 수 있으며, 타인과의 차이가 인정될 권리가 있다.
③ 어린이·청소년은 다양한 수단을 통해 자유롭게 자신의 생각을 표현할 권리가 있고, 표현할 수 있는 공간과 기회를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

제5절 사생활의 자유와 정보에 관한 권리

제14조(사생활의 자유 등) ① 어린이·청소년은 사생활을 보장 받고 사생활의 비밀을 유지할 권리가 있다.
② 어린이·청소년은 명예를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가 있으며 자신의 의사에 반해 자신의 약점이 공개되지 않을 권리가 있다.
③ 누구든지 범죄수사나 어린이·청소년 상호간의 폭력에 대한 조사 등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어린이·청소년의 일기장, 핸드폰 등에 기록된 사생활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제15조(정보에 관한 권리) ① 어린이·청소년은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국·내외의 정보 및 자료에 접근할 수 있으며,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 특히 소수자 어린이·청소년들은 스스로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 자료, 교육프로그램에 쉽게 접근할 권리가 있다.
② 어린이·청소년은 자신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며, 자신에 관한 기록 중에 부정확 또는 불필요하거나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에 대해 정정이나 삭제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
③ 시장은 어린이·청소년에 관한 정보, 사적 기록물, 소지품이 부당하게 수집되거나 이용되는 것을 방지하고, 어린이·청소년의 개인 정보를 수집·처리·관리할 경우 적법하고 적정한 수단과 절차에 따라야 하며, 당사자와 보호자의 동의없이 어린이·청소년에 관한 정보가 공개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④ 시장은 어린이·청소년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알기 쉬운 내용과 방법으로 공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6절 교육·문화·복지에 관한 권리

제16조(교육에 관한 권리) ① 어린이·청소년은 교육을 받는 과정에서 지나친 경쟁에 내몰리지 않을 권리가 있다.
② 어린이·청소년은 폭력이나 억압이 수반되는 부당한 교육을 받지 아니하며, 자유롭고 창의적으로 사고하고 행동할 수 있는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
③ 어린이·청소년은 학원에 다닐 것을 강요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
④ 학교밖 어린이·청소년은 교육에 필요한 공간과 교육비를 지원 받을 권리가 있다.
⑤ 어린이·청소년은 교육 및 진로에 관련된 정보와 지침을 알고 이용하며, 교육기관·학습의 내용 및 방법 등을 선택함에 있어서 본인의 의사를 표현하고 존중 받을 권리가 있다.
⑥ 시장은 빈곤·장애·소수자 어린이·청소년의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17조(놀이 및 쉴 권리) ① 어린이·청소년은 놀이, 여가 및 휴식을 즐기며, 충분한 수면시간을 가질 권리가 있다.

② 어린이·청소년은 건강하고 개성 있는 자아(自我)의 형성과 지속가능한 교육을 위하여 지나친 학습부담에서 벗어날 권리가 있다.
③ 어린이·청소년은 안전한 놀이공간과 시간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
④ 어린이·청소년은 자신만의 시간과 공간을 가질 권리가 있다.
⑤ 어린이·청소년의 쉴 권리 보장을 위해 학원의 휴일 및 심야 교습시간은 제한되어야 한다. 이에 관해서는 별도 조례로 정한다.

제18조(문화·예술·체육활동에 관한 권리) ① 어린이·청소년은 다양한 문화·예술·체육활동에 참가할 권리가 있다.
② 어린이·청소년은 다른 사람의 동의나 승낙없이 본인의 의사에 따라, 문화·예술·체육활동을 위해 청소년시설, 주민자치센터 등 공공시설의 공간을 이용할 권리가 있으며, 시장은 이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③ 시장은 교육청, 학교, 관계기관 및 시설, 지역주민과 협력하여 어린이·청소년이 다양한 문화·체육·예술 활동을 누릴 수 있도록 공간을 확보하고, 관련 시설을 운영할 때에 어린이·청소년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제19조(복지에 관한 권리) ① 어린이·청소년은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권리가 있다.
② 어린이·청소년은 각종 사회보장제도의 혜택을 받을 권리가 있다.
③ 어린이·청소년은 건강이나 신체적·지적·정신적 발달에 유해한 모든 착취로 부터 보호 받을 권리가 있다.
④ 시장은 빈곤·장애·소수자 어린이·청소년 등 자립 및 추가적인 배려가 필요한 어린이·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한다.
⑤ 시장은 복지시설을 이용하거나 서비스를 받는 어린이·청소년에게 낙인감을 주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

제7절 노동에 관한 권리

제20조 (노동인권) ① 노동하는 청소년은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노동에 관한 권리를 갖는다.
② 노동하는 청소년은 정당한 처우와 적절한 임금, 산업재해로부터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
③ 사업주는 노동하는 청소년을 인격적으로 대우하여야 하며, 신체적·정신적·언어적 폭력을 행사해서는 안된다.

제21조 (어린이·청소년 노동의 보호) ① 사업주는 청소년의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하거나, 청소년의 건강, 안전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업무를 맡겨서는 안된다.
② 사업주는 청소년을 관계 법령에서 금지하고 있는 업종이나 노동형태로 일하게 해서는 안된다.
③ 사업주는 법령에 정한 최저연령 미만의 어린이·청소년을 일하게 해서는 안된다.

제22조 (시장의 책무) 시장은 청소년이 적절한 노동환경에서 노동할 수 있도록 노력할 책무가 있다.

제8절 자기결정권 및 참여할 권리

제23조(자기결정권) 어린이·청소년은 진로, 취미, 학업 등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문제에 대해 스스로 결정하거나 의견을 제시하고 존중을 받을 권리가 있다.

제24조(참여권) ① 어린이·청소년은 개인과 공동체의 행복을 위해 사회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
② 어린이·청소년은 타인과 자유롭게 소통하여 동료를 만들고 모임을 가질 권리가 있다.
③ 어린이·청소년은 다양한 방법으로 본인들의 의견을 모을 권리가 있다.
④ 어린이·청소년은 공개된 장소에서 의사를 표현하거나 행사를 열 권리가 있다.
⑤ 어린이·청소년은 단체에 참여하고 자치활동을 보장 받을 권리가 있다.
⑥ 어린이·청소년은 자신의 대표자를 선출함에 있어서 직접 선출하거나 선출할 방법을 스스로 정할 권리가

있다.

⑦ 어린이·청소년은 자신과 관련된 정책을 수립하거나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

⑧ 어린이·청소년은 시에서 직영하거나 민간에 위탁한 사업과 시설의 운영과 관련하여 참여할 권리가 있다.

⑨ 시장은 어린이 ·청소년의 참여활동, 자치활동을 가능한 범위 내에서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⑩ 어린이·청소년이 참여권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보호자의 동의를 요구해서는 아니 된다.

제25조(권리보장을 위한 권리) 어린이·청소년은 인권침해를 당했을 때의 상담 및 구제절차에 대해 알 권리, 상담 및 구제신청을 했을 때 불이익을 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

제3장 인권보장

제1절 가정에서의 인권 보장

제26조(보호자 등에 의한 인권의 보장) ① 보호자는 양육하고 있는 어린이·청소년이 스스로의 권리를 행사할 때 어린이·청소년에게 최선의 이익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보호자는 어린이·청소년을 대신하여 권리를 행사할 때 어린이·청소년의 의견을 존중하며, 어린이·청소년에게 최선의 이익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7조(양육의 지원) ① 보호자는 어린이·청소년의 양육에 대해 일차적인 책임을 지며, 시장은 어린이·청소년을 양육하는 보호자를 상담·교육·서비스 제공 등의 방법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보호자가 어린이·청소년을 양육하기에 곤란한 상황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황을 특히 배려한 지원을 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③ 사업자는 고용된 시민이 안심하고 어린이·청소년을 양육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제28조(학대 및 폭력의 금지) ① 보호자는 양육하는 어린이·청소년에게 체벌을 포함한 신체적, 정신적, 언어적 폭력을 해서는 아니 된다.

② 보호자는 가족 내의 다른 구성원으로부터 어린이·청소년이 학대나 폭력을 받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시장은 가정내 폭력 예방을 위해 보호자를 위한 인권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제29조(학대로부터의 구제 및 그 회복) ① 시장은 학대를 받은 어린이·청소년에 대해 신속하고도 적절한 구제조치를 취하고, 어린이·청소년이 피해로부터 회복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경찰 등 관계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조치를 취할 때에는 2차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피해 어린이·청소년의 상황을 배려하여야 하며, 장애 어린이·청소년이나 소수자 어린이·청소년의 경우에는 특별하게 배려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학대를 조기에 발견하고 학대를 받은 어린이·청소년이 신속하고 적절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하여야 한다.

제2절 시설에서의 인권보장

제30조(환경의 정비 등) ① 제2조 제2호에 의한 시설의 설치자 및 관리자(이하 "시설설치관리자"라고 한다)는 어린이·청소년의 인권이 보장되고, 적절한 휴식공간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어린이·청소년이 생활하는 시설의 설치관리자는 가능한 한 가정과 같이 편안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③ 시설설치관리자는 어린이·청소년의 안전을 위하여 사고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안전관리 체제를 정비하고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피해의 확대를 방지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 보호자, 지역주민들과 협력하여야 한다.

제31조(학대 및 폭력의 금지 등) ① 시설의 장 및 직원은 어린이·청소년에게 체벌을 포함한 신체적·정신적·언어적 폭력을 해서는 안된다.

② 시설설치관리자는 그 직원에 대하여 학대 및 체벌의 방지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학원에서의 체벌 등 폭력을 없애기 위해 교육감과 협력해야 하며, 시설에서의 학대 및 체벌 예방

을 위해 교육프로그램 지원, 실태파악 등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32조(어린이·청소년간 폭력의 방지 등) ① 시설설치관리자는 어린이·청소년간의 폭력이나 집단따돌림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설설치관리자는 폭력이나 집단따돌림을 방지하기 위해 어린이·청소년들을 상대로 인권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③ 시설설치관리자는 그 직원에 대하여, 어린이·청소년간의 폭력이나 집단따돌림을 방지하기 위한 연수 등을 실시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33조(상담 등) ① 시설설치관리자는 학대 및 체벌, 어린이·청소년간의 폭력이나 집단따돌림에 관한 상담을 안심하고 받을 수 있는 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② 시설설치관리자가 제1항에 관한 상담을 받았을 때에는, 어린이·청소년의 최선의 이익을 고려하고, 그 상담의 해결에 필요한 사람, 관계기관 등과 제휴하여, 어린이·청소년의 구제 및 그 회복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 경우에 있어서, 시설관계자는 폭력이나 집단따돌림을 행한 어린이·청소년에 대하여도 필요한 배려를 하면서 적절하게 대응하여야 한다.

제34조(어린이·청소년의 정보 관리) ① 시설에서 어린이·청소년 본인에 관한 정보는 적절하게 관리되고, 보관되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정보 중 어린이·청소년의 이해에 영향을 주는 정보는 그 작성 또는 수집에 있어서 어린이·청소년 본인과 그 보호자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

③ 시설에서 그 목적의 범위를 벗어나서 어린이·청소년 본인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거나 보관하여서는 안 된다.

④ 어린이·청소년에 관한 정보는 시설의 목적의 범위를 벗어나서 이용되거나 외부에 제공되어서는 안 된다.

⑤ 어린이·청소년이 시설을 그만둔 경우에, 시설은 법령에 의해 관리하는 정보를 제외하고는 그 어린이·청소년에 관한 정보를 삭제하여야 한다.

제35조(참여 및 적정 절차) ① 시설설치관리자는 어린이·청소년에게 시설운영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시설운영에 관해 어린이·청소년의 의견을 듣고 반영하여야 한다.

② 시설에서 어린이·청소년에 대한 불이익한 처분 등이 행하여질 경우에는 그 처분 등을 결정하기 전에, 그 어린이·청소년 본인으로부터 사정, 의견 등을 청취하여야 한다.

제3절 학교에서의 인권보장

제36조(협력과 지원) ① 시장은 학교내에서도 어린이·청소년의 인권이 실현될 수 있도록 교육감과 협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학생이나 교사 등을 상대로 인권에 관한 교육, 연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교육감과 협력하여 특별한 배려가 필요하거나 생활교육에 어려움이 있는 학생들을 위한 대안적 교육체계나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데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4절 지역사회에서의 인권보장

제37조(어린이·청소년을 위한 공간의 확보와 관리) ① 시장은 어린이·청소년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거리내에 어린이·청소년들을 위한 공간이 충분히 확보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자치구별, 동별로 존재하는 어린이·청소년들을 위한 공간을 조사하고 그 확대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어린이놀이터 등 어린이·청소년 전용공간이 어린이·청소년들이 그 목적대로 이용하고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관리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제38조(정보에 관한 권리 보장) ① 시장은 성차별적이거나 인권침해적인 사진, 그림, 전시물을 규제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어린이·청소년들에게 활용가능한 공간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도서관 등에서 어린이·청소년들이 합리적 이유없이 자신들에게 필요한 도서나 정보에 접근하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운영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39조(노동인권의 보장) ① 사업자는 노동하는 청소년과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고 청소년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그 내용을 설명해야 한다.

② 시장은 청소년의 노동인권을 존중하는 사업장을 우대 및 지원할 수 있으며, 청소년의 노동권이나 기타의 권리를 침해한 사업장을 각종 우대 및 지원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노동을 하는 과정에서 다치거나 인권을 침해당한 청소년을 법률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시 소속기관, 구청, 노동관련 행정관청과 협력하여 청소년 노동에 관한 상담, 구제활동에 대한 지원·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교육감과 협력하여 청소년 및 사업주에 대해 노동권에 관한 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특히 노동을 하거나 전문계 고교에 재학하는 청소년에게는 필수적·우선적으로 실시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0조(탈가정 어린이·청소년) ① 시장은 탈가정 어린이·청소년들이 편안하게 쉬고 거주할 수 있는 공간을 충분하게 확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탈가정 어린이·청소년들을 위한 공간에서 어린이·청소년들의 사생활정보가 보호되고 학대경력 있는 보호자로부터 분리될 수 있도록 인권 보장 지침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탈가정 어린이·청소년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41조(학교밖 어린이·청소년에 대한 차별금지 및 지원) ① 시장은 학교를 다니지 않거나 비인가 대안교육기관을 다니는 어린이·청소년(이하 "학교밖 어린이·청소년"이라 한다)이 지역사회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② 학교밖 어린이·청소년은 학교를 다니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공시설 이용, 대중교통 이용, 각종 프로그램 참여에서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된다.

제42조(비인가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비인가 대안교육기관에 대해서도 급식비, 교육비 지원 등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교육활동을 지원하고, 교육활동에 필요한 공간도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비인가 대안교육기관을 다니는 빈곤 어린이·청소년이 그로 인하여 복지 지원에서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③ 비인가 대안교육기관을 설치·운영하는 사람은 그 내부에서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없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3조(시민참여 및 협력) ① 시민은 지역사회에서 어린이·청소년에 대한 학대나 폭력을 발견한 경우에 신고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② 시장은 어린이·청소년의 인권이 실현되도록 관련 활동을 하는 민간단체 및 시민, 어린이·청소년 당사자 단체와 협력하고, 지원해야 한다.

③ 시장은 경찰, 법원 등 지역사회에서 어린이·청소년 인권과 관련된 기관들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5절 빈곤·장애·소수자 어린이·청소년의 인권 보장

제44조(빈곤·장애·소수자 어린이·청소년의 권리 보장) ① 시장, 시설의 장 및 직원 등은 빈곤·장애·소수자 어린이·청소년이 그 특성에 따라 요청되는 권리를 적정하게 보장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소수자에 대한 편견과 차별의식을 해소하는 데 필요한 인권교육프로그램과 상담프로그램을 마련하

여야 한다.

③ 시장, 시설의 장은 장애 어린이·청소년에 대하여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고 시설을 확보하며, 자립생활을 보장할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하고, 정책결정과정에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빈곤 어린이·청소년이 지역사회로부터 소외되지 않고 존중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탈북 어린이·청소년의 적응을 지원하고 차별받지 않고 인권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⑥ 시장은 다문화가정, 이주민가정, 외국인 어린이·청소년의 인권이 당사자 또는 보호자의 체류자격과 무관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자신의 문화적 정체성을 학습하고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⑦ 시장은 교육감과 협력하여, 임신 또는 출산을 하게 된 청소년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적절한 의료서비스와 양육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4장 어린이·청소년 인권위원회

제45조(어린이·청소년 인권위원회) ① 시의 어린이·청소년 인권에 관한 중요 정책과 중대한 인권침해 사안에 관한 대응방안을 심의하고, 어린이·청소년 인권에 관한 지역사회의 공론을 형성하고 협력을 이끌어 내기 위하여 어린이·청소년 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어린이·청소년 인권종합계획 수립에 대한 심의 및 결과에 대한 평가
2. 어린이·청소년 인권종합계획의 연도별 시행 계획에 대한 자문 및 결과에 대한 개선 권고
3. 어린이·청소년 인권이 중대하게 침해되어 특별한 구제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정책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안에 대한 시민인권보호관의 조사결과의 심의 및 구제 조치 권고
4. 시장의 정책 및 입법 활동에 대한 어린이·청소년 인권영향평가 및 개선 권고
5. 어린이·청소년 인권에 영향을 미치는 제반 입법, 정책, 활동에 대한 의견 표명
6. 어린이·청소년 인권에 대한 지역사회의 여론 형성을 위한 토론회 등의 공론화 활동
7. 어린이·청소년 인권 현황에 대한 연례 보고서 등 연구·조사 보고서의 발간
8. 이 조례에서 정한 시행규칙의 제정에 관한 자문
9. 그 밖에 시장, 시민인권보호관 또는 위원회 위원 3명 이상이 제안한 사안에 대한 심의

③ 위원회는 제2항의 업무 수행에 있어 시장 또는 시민인권보호관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회의에 출석하여 질의에 답변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어린이·청소년 인권 정책에 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4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회는 인권에 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소수자들이 겪는 차별문제에 대하여 높은 감수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제2항의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시장이 위촉한다.

1. 어린이·청소년 인권 관련 전문가로서 관련 비영리민간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2. 어린이·청소년 참여위원회의 위원장, 부위원장 및 어린이·청소년 참여위원회에서 선출된 2명의 어린이·청소년
3. 시민 중에서 어린이·청소년 인권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고, 참여의지가 있는 사람으로 공개모집절차를 통해 신청을 받은 사람 중 추첨을 통해 선정된 사람
4. 서울특별시의회의 추천을 받은 사람
5. 서울특별시의 담당부서의 장

④ 위원회의 위원은 특정성별이 3분의 2를 넘어서는 아니 된다.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⑥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⑦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
1. 「지방공무원법」제31조에 해당하는 사람
2. 본인이 희망하여 사임서를 제출한 사람
3.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회 활동에 부적당하다고 위원회가 인정하는 사람
4. 위원이 정당한 사유없이 회의에 2회 이상 연속으로 불참한 사람

제47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
1. 정기회 : 연 4회 이상
2. 임시회 :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일 경우에 위원장이 결정한다.
④ 위원회는 그 업무 중 일부를 수행하기 위해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소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 중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위촉한다.
⑤ 위원회의 간사는 시 담당부서의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정한다. 다만,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을 공동간사로 할 수 있다.
⑥ 시민인권보호관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그 업무와 관련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⑦ 위원회의 모든 회의는 공개하며, 반드시 그 회의록을 작성하여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사안의 성격상 공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거나 관련자들의 인격권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의결로써 회의를 비공개로 하거나 회의록의 열람을 제한할 수 있다.
⑧ 위원회의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8조(인권정책협력체계) 시장은 교육감과 협의하여, 시와 어린이·청소년인권위원회, 교육청 및 교육청의 인권추진기구 및 관련 단체가 참여하는 인권정책 협력 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4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 및 소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5장 어린이·청소년 참여위원회

제50조(설치) 어린이·청소년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예산편성 과정에 어린이·청소년의 참여를 보장하고 그 자치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서울특별시 어린이·청소년참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어린이·청소년 정책 전반에 관한 의견 제시, 평가와 정책제안 제출
2. 어린이·청소년 인권 침해에 관한 대책을 시장, 시의회나 지역사회에 권고
3. 어린이·청소년의 예산참여과정에서 어린이·청소년의 여론을 수렴하고 시에 전달
4. 다른 지방자치단체 소속 어린이·청소년참여위원회와의 협력
5. 위원회가 직접 기획하는 사업의 추진
6. 그 밖에 시장이 요청하는 사안에 대한 의견 제시

제51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공개모집을 한 후, 추첨절차를 통해 지역별, 성별, 연령별로 균형있게 참여하도록 선정한다. 다만, 소수자 어린이·청소년의 참여는 별도로 보장하여야 한다.
③ 위원은 본인의 의사에 의해 참여하며, 위원구성과정에서 보호자의 동의는 필요로 하지 않는다.
④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이 정당한 사유없이 회의에 2회 이상 연속으로 불참하면 해촉할 수 있으며, 위원에 결원이 생긴 경우

에는 추가모집을 할 수 있다.
⑥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는 간사 1명은 담당공무원이 맡고, 어린이·청소년 중에서도 공동간사를 둘 수 있다.
⑦ 위원회는 필요할 경우에는 연령대별 소위원회나 분과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⑧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활동 등 지원을 위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은 학계 및 청소년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문단을 둘 수 있다.
⑨ 자치구별 어린이·청소년 참여위원회가 구성될 경우에 위원회는 이와 협력하여 활동한다.

제52조(지원) 시장은 위원회의 운영·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해야 한다.

제53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4조(회의·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분기별로 한 차례 이상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거나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 개최 후 그 결과를 7일 이내에 시장에게 통보하고,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해야 한다.
④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회의·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제55조(의견 수렴) ① 시장은 정책이나 사업의 추진과정에 위원회의 의견제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적극 반영해야 한다.
② 위원회가 제시한 의견, 건의사항 등에 대하여는 시장은 그 처리 결과를 위원회에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③ 위원회는 의견제출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시장이나 시의회 면담을 요청할 수 있다.

제56조(수당 등) 위원회의 각종 활동에 참여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교통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되, 자발적 참여의 취지와 맞지 않는 혜택은 부여하지 않는다.

제6장 인권침해에 대한 구제

제57조(상담 및 구제기관) ① 어린이·청소년의 인권침해에 관한 상담 및 구제는 「서울특별시 인권기본조례」에 의해 설치된 서울특별시 시민인권보호관이 수행한다.
② 시장은 서울특별시 시민인권보호관 1인 이상을 어린이·청소년 인권 전담 보호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제58조(상담 및 구제절차) ① 인권침해 또는 차별을 당한 어린이·청소년 본인 또는 어린이·청소년의 인권침해를 알게 된 사람은 누구든지 시민인권보호관에 상담이나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해 상담이나 구제신청을 받은 시민인권보호관은 해당 사안이 「아동복지법」상의 아동학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아동복지법」 제45조에 의한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속하게 알려 「아동복지법」 제27조에 따른 출동, 격리, 보호, 치료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③ 제1항의 상담 또는 구제신청을 받은 시민인권보호관은 사건에 대해 조사한 후에 「서울특별시 인권기본조례」 제20조 제1항 각 호의 기관 또는 인권침해관계기관(이하 "관계기관"이라 한다)에게 시정권고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8.>
④ 시민인권보호관이 제2항의 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이를 즉시 시장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⑤ 시민인권보호관으로부터 시정권고를 받은 관계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권고사항을 이행하고 조치결과를 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시민인권보호관의 권고내용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제59조(준용) 인권침해에 관한 상담 및 구제에 관해서 이 조례에서 따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서울특별시 인권기본조례」제4장에 따른다.

제7장 교육, 실태조사 및 평가

제1절 인권교육과 홍보

제60조(서울특별시 어린이·청소년 인권의 날) ① 시장은 어린이·청소년 인권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어린이·청소년 인권의 날」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서울특별시 어린이·청소년 인권의 날」의 취지에 어울리는 사업을 실시하고, 어린이·청소년과 시민의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61조(홍보) 시장은 지역사회나 가정에서 어린이·청소년들을 존중하는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의 내용과 이 조례의 내용 등 어린이·청소년 인권과 조례의 내용에 대한 설명자료를 제작·배포하는 등 홍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2조(인권교육) ① 시장은 시에서 실시하는 평생교육 등 각종 교육의 기회에 어린이·청소년 인권에 관한 교육이 추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설의 장 및 직원, 보호자, 공무원, 의료·법률 관련자 그 외 어린이·청소년을 일상적으로 만나는 사람에 대해 어린이·청소년 인권에 관한 교육과 연수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어린이·청소년 스스로에 의해 이루어지는 인권에 대한 학습 등의 활동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

④ 시장은 어린이·청소년 인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권교육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어린이·청소년 인권교육을 위하여 교육자료 및 교육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고, 인권교육을 수행할 수 있는 인력을 양성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교육, 연수, 학습 등에는 빈곤·장애·소수자 어린이·청소년들에 대한 차별금지 교육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63조(시민활동의 지원) 시장은 어린이·청소년 인권보장을 위해 노력하는 시민활동을 지원하고 협력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2절 실태조사와 평가 등

제64조(어린이·청소년 인권종합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어린이·청소년 인권 실현을 위한 종합계획(이하 "어린이·청소년 인권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어린이·청소년 인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어린이·청소년 인권종합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어린이·청소년 인권 실현을 위한 기본방향
2. 제1호의 기본 방향에 따른 권리분야별·생활공간별 실천전략
3. 계획의 실행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4. 어린이·청소년 인권 관련 조사·연구 및 인권 교육 실시 방안
5. 지역사회의 협력과 공론화 방안
6. 다른 기관과의 협력 방안
7. 계획 실행에 대한 평가방안
8. 빈곤·장애·소수자 어린이·청소년 인권 보장 방안
9. 그 밖에 어린이·청소년 인권 실현을 위해 필요한 주요 사항

③ 시장은 어린이·청소년 인권종합계획을 수립할 경우 공청회, 토론회, 지역순회 간담회 등을 통하여 어린이·청소년, 보호자, 시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제65조(연도별 시행계획 및 실태조사) ① 시장은 어린이·청소년 인권종합계획을 기초로 하여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평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평가결과를 어린이·청소년 인권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66조(인권실태조사) ① 시장은 어린이·청소년 인권 관련 실태조사를 2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어린이·청소년 인권종합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서울시가 위탁하거나 재정지원을 하는 어린이·청소년 관련 시설들에 대한 평가에 인권교육·연수의 실시여부, 인권보장수준 등 인권에 관한 항목을 포함시켜야 한다.

제8장 보칙

제67조(규칙) 시장은 이 조례에서 구체적으로 위임한 사항과 조례를 집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6016호, 2015.10.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Ⅳ 제3차 아동권리포럼

제3차 아동권리포럼
2016. 6. 14. 15:00-17:00 페럼타워 2층 중회의실 M1

보건복지부위탁 2016년도 아동인권증진사업
제3차 아동권리포럼

2016. 6.

Ⅰ 제3차 아동권리포럼 개요

□ 제3차 포럼 개요

- 일시: 2016년 6월 14일 화요일 15:00 - 17:00 (2시간)
- 장소: 페럼타워 2층 중회의실 M1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5길 19)
- 주제: 소년사법제도에서의 아동의 참여권과 의견청취권

□ 내 용

① 전문가 발제

[발제1] 소년사법제도에 편입된 아동의 참여권 보장 실태

(오영희 원장, 법무부 청주소년원 / 미평여자학교)

[발제2] 소년재판과 아동인권

(권양희 판사, 서울가정법원)

② 자문위원 질의응답을 통한 토의

- 발제자 발표를 통한 실태 인식
- 소년사법제도에서의 아동의 참여권과 의견청취권이 보다 실효적으로 보장될 수 있는 법적·제도적 개선방안 모색

③ 제4차 주제 선정 및 일정 논의(제4차 아동권리포럼 발제자 추천)

Ⅱ-1

소년사법제도에 편입된 아동의 참여권 보장 실태

- 소년원 처우를 중심으로 -

오 영 희 (청주소년원장)

Ⅰ. 소년범죄 처리 현황

1. 소년범 전과(전회처분) 비율

전체 소년인구 대비 소년범죄 비율은 2012년 급증 후 점차 감소추세로 1~2%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소년범 중 전과자 비율은 2008년도 이후 해마다 증가하여 2013년도에는 41.5%에 달하였고 2014년에 약간 감소하였으며, 특히 3범 이상의 비중도 2008년 9.2%에서 2013년에는 20.6%로 최근 5년간 증가폭이 크게 두드러지다가 2014년에는 약간 감소하였다.

〈표1〉 소년인구 대비 소년범죄 현황

(단위 : 명)

구분 \ 연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소년인구	5,194,546	5,235,037	5,292,760	5,347,359	5,994,271	5,934,461	5,823,594	5,670,401	5,437,368	5,215,783
소년범죄	67,478	69,211	88,104	134,992	113,022	89,776	83,060	107,490	91,633	77,594
구성비	1.3	1.3	1.7	2.5	1.9	1.5	1.4	1.9	1.7	1.5

※ 소년인구는 2008년까지는 12-19세 기준, 소년법 개정에 따라 2009년부터는 10-18세 기준으로 산출

〈그림1〉 전체 소년범 및 전과자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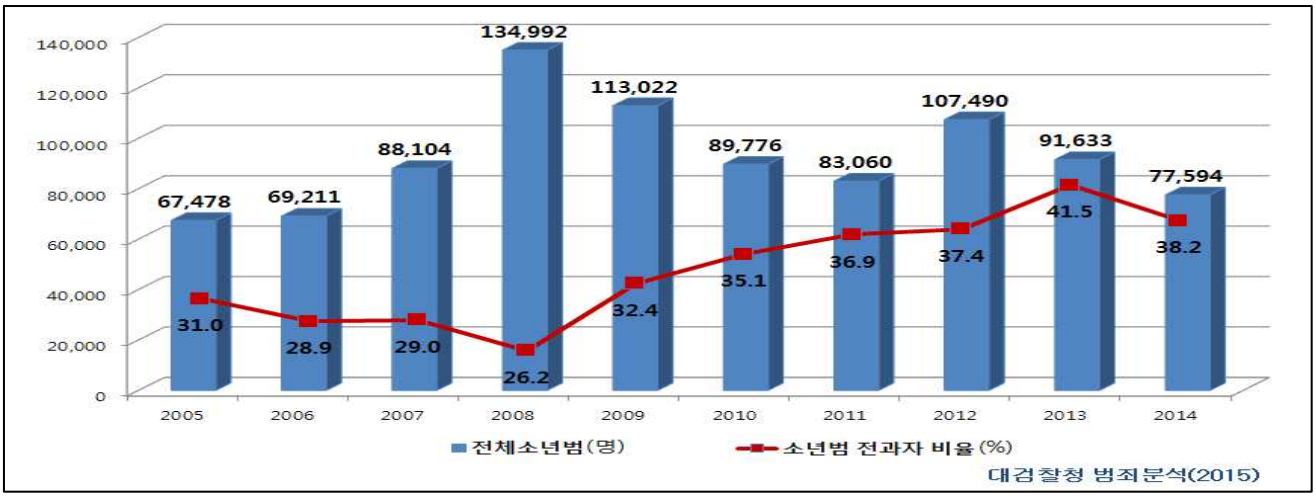

※ 자료 :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소년과

〈표2〉 연도별 전과 현황

(단위 : 명)

전과 인원 / 연도	계	전과 없음	전 과 횟 수				미 상
			소계	1범	2범	3범이상	
2005	67,478 (100.0)	42,017 (62.3)	**20,915 (31.0)**	9,307 (13.8)	4,601 (6.8)	7,007 (10.4)	4,546 (6.7)
2006	69,211 (100.0)	44,236 (63.9)	**19,989 (28.9)**	9,193 (13.3)	4,124 (6.0)	6672 (9.6)	4,986 (7.2)
2007	88,104 (100.0)	55,543 (63.0)	**25,547 (29.0)**	11,540 (13.1)	5,332 (6.1)	8,675 (9.8)	7,014 (8.0)
2008	134,992 (100.0)	79,285 (58.7)	**35,414 (26.2)**	15,476 (11.5)	7,553 (5.6)	12,385 (9.2)	20,293 (15.0)
2009	113,022 (100.0)	65,990 (58.4)	**36,583 (32.3)**	15,103 (13.4)	7,637 (6.8)	13,843 (12.2)	10,449 (9.2)
2010	89,776 (100.0)	50,830 (56.6)	**31,538 (35.1)**	12,091 (13.4)	6,546 (7.3)	12,901 (14.4)	7,408 (8.3)
2011	83,060 (100.0)	45,047 (54.2)	**30,611 (36.9)**	11,391 (13.7)	6,254 (7.5)	12,966 (15.6)	7,402 (8.9)
2012	107,490 (100.0)	56,527 (52.6)	**40,201 (37.4)**	14,403 (13.4)	7,669 (7.1)	18,129 (16.9)	10,762 (10.0)
2013	91,633 (100.0)	44,502 (48.6)	**38,046 (41.5)**	12,388 (13.5)	6,782 (7.4)	18,894 (20.6)	9,085 (9.9)
2014	77,594 (100.0)	40,996 (52.8)	**29,652 (38.2)**	9,853 (12.7)	5,244 (6.8)	14,555 (18.8)	6,946 (9.0)

※ 자료 : 대검찰청 범죄분석(2014)

2. 검찰·법원의 소년범 처리 경향

소년범에 대한 검찰의 처분결과를 보면 불구속 수사 확대와 인권보호정책이 맞물려 소년범에 대한 기소율이 2005년에는 16.8%이던 것이 2011년 5.6%로 감소한 이래 2014년에는 9.6%에 불과하며, 구속 기소율 또한 전체 범죄인원 중 2005년에는 2.5%이던 것이 2014년에는 1.5%로 현저히 감소하였다.

반면 소년보호 송치율은 2005년 20.1%에서 2014년에는 32.5%로 큰 폭으로 증가하였고, 기소유예율은 2005년 49.9%에서 2014년 37.8%로 감소하는 등 불기소 처분이 54.2%를 점유하고 있어 검찰에서의 소년범 처분이 처벌보다는 선도위주로, 형사처분보다는 보호처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법원단계에서도 2014년도 전체 보호처분 중 보호자 위탁처분(1, 1·2, 1·2·3, 1·3호)이 27.8%, 보호관찰 처분(4, 5호 처분 및 병합처분)이 54.9%로 82.7%가 사회내 처분을 받았으며, 시설내 처분은 소년원 송치(5·8, 8, 9, 10호)가 11.7%, 6호 민간시설 위탁처분(4·6, 5·6, 6호)이 3.6%에 불과하며, 특히 최근 3년간 소년원송치처분 비율은 2012년 13.8%→2013년 13.4%→2014년 11.7%로 점차 감소하고 있다.

이와 같이 소년범에 대한 선도위주, 보호처분 위주의 경향이 심화되면서 강력비행자나 재범위험성이 높은 소년범에 대해 소년원 송치와 보호관찰 처분 비율이 증가하는 등 온정적 처분경향이 지속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소년교도소 수용인원이 2001년 2,035명 대비 2014년 131명으로 6.4%에 수준에 불과한 것도 이를 대변한다고 볼 수 있다.

〈표3〉 최근 10년간 소년범죄 검찰처리인원 및 구성비

(단위 : 명)

구분 / 연도	계	기소				소년보호송치	가정보호송치	성매매보호송치	불기소					기소중지	참고인중지
		소계	구공판		구약식				소계	기소유예	혐의없음	죄가안됨	공소권없음		
			구속	불구속											
2005	67,478 (100.0)	11,350 (16.8)	1,721 (2.5)	1,050 (1.6)	8,579 (12.7)	13,555 (20.1)	10 (0.0)	-	40,486 (60.0)	33,683 (49.9)	2,537 (3.8)	328 (0.5)	3,938 (5.8)	1,968 (2.9)	109 (0.2)
2006	69,211 (100.0)	9,315 (13.5)	1,432 (2.1)	1,064 (1.5)	6,819 (9.9)	14,105 (20.4)	20 (0.0)	10 (0.0)	43,495 (62.8)	36,808 (53.2)	2,353 (3.4)	306 (0.4)	4,028 (5.8)	2,163 (3.1)	103 (0.1)
2007	88,104 (100.0)	10,367 (11.8)	1,330 (1.5)	1,485 (1.7)	7,552 (8.6)	21,368 (24.3)	22 (0.0)	21 ((0.0)	54,424 (61.8)	44,689 (50.7)	3,029 (3.4)	394 (0.4)	6,312 (7.2)	1,809 (2.1)	93 (0.1)
2008	134,992 (100.0)	15,150 (11.2)	2,096 (1.6)	2,727 (2.0)	10.327 (7.7)	28,360 (21.0)	30 (0.0)	46 (0.0)	88,932 (65.9)	62,977 (46.7)	4,944 (3.7)	2,073 (1.5)	18,938 (14.0)	2,370 (1.8)	104 (0.1)
2009	113,022 (100.0)	7,795 (6.9)	1,770 (1.6)	2,159 (1.9)	3,866 (3.4)	32,453 (28.7)	37 (0.0)	16 (0.0)	71,100 (62.9)	56,715 (50.2)	4,684 (4.1)	1,184 (1.0)	8,517 (7.5)	1,535 (1.4)	86 (0.1)
2010	89,776 (100.0)	5,443 (6.1)	1,386 (1.5)	1,527 (1.7)	2,530 (2.8)	30,143 (33.6)	9 (0.0)	11 (0.0)	52,685 (58.7)	42,021 (46.8)	4,801 (5.3)	339 (0.4)	5,524 (6.2)	1,392 (1.6)	93 (0.1)
2011	83,060 (100.0)	4,691 (5.6)	1,315 (1.6)	1,710 (2.0)	1,666 (2.0)	30,587 (36.8)	10 (0.0)	7 (0.0)	46,224 (55.7)	36,582 (44.0)	4,151 (5.0)	272 (0.3)	5,219 (6.3)	1,455 (1.8)	86 (0.1)
2012	102,871 (100.0)	7,877 (7.7)	1,655 (1.6)	3,243 (3.2)	2,979 (2.9)	36,478 (35.5)	21 (0.0)	-	56,668 (55.1)	43,013 (41.8)	6,113 (6.0)	324 (0.3)	7,218 (7.0)	1,686 (1.6)	141 (0.1)
2013	88,062 (100.0)	8,758 (9.9)	1,493 (1.7)	3,800 (4.3)	3,465 (3.9)	29,641 (33.7)	35 (0.0)	2 (0.0)	47,486 (53.9)	34,914 (39.6)	5,925 (6.7)	202 (0.2)	6,445 (7.3)	2,032 (2.3)	108 (0.1)
2014	72,947 (100.0)	7,037 (9.6)	1,128 (1.5)	3,063 (4.2)	2,846 (3.9)	23,740 (32.5)	50 (0.1)	4 (0.0)	39,548 (54.2)	27,599 (37.8)	5,371 (7.4)	182 (0.2)	6,396 (8.8)	2,438 (3.3)	130 (0.2)

※ 자료 : 대검찰청 범죄분석(2014)

〈표4〉 최근 5년간 소년보호사건 법원 처분 현황

(단위 : 명)

연도	보호처분														
	계	1호	1·2호	1·2·3호	1·2·4호	1·2·5호	1·2·3·4호	1·2·3·5호	1·3호	1·3·4호	1·3·5호	1·4호	1·5호	2호	3호
2010	**32,416 (71.9)**	4,527 (10.0)	4,251 (9.4)	615 (1.4)	4,473 (9.9)	1,309 (2.9)	1,777 (3.9)	1,288 (2.9)	1,399 (3.1)	2,182 (4.8)	1,482 (3.3)	3,593 (8.0)	880 (2.0)	37 (0.1)	116 (0.3)
2011	**35,072 (72.0)**	4,021 (8.3)	4,123 (8.5)	874 (1.8)	4,998 (10.3)	1,393 (2.9)	2,420 (5.0)	1,990 (4.1)	1,629 (3.3)	2,418 (5.0)	1,352 (2.8)	3,689 (7.6)	808 (1.7)	18 (0.0)	53 (0.1)
2012	**36,150 (71.2)**	4,222 (8.3)	4,518 (8.9)	1,040 (2.0)	5,180 (10.2)	1,118 (2.2)	2,266 (4.5)	1,831 (3.6)	1,405 (2.8)	2,087 (4.1)	1,560 (3.1)	3,054 (6.0)	637 (1.3)	51 (0.1)	104 (0.2)
2013	**31,952** (70.4)	3,822 (8.4)	3,522 (7.6)	646 (1.4)	4,020 (8.9)	1,496 (3.3)	1,557 (3.4)	1,901 (4.2)	1,297 (2.9)	1,868 (4.1)	1,843 (4.1)	2,746 (6.4)	900 (2.0)	107 (0.2)	125 (0.3)
2014	**24,529 (70.9)**	2,960 (8.6)	2,420 (7.0)	445 (1.3)	3,163 (9.1)	1,026 (3.0)	1,160 (3.4)	1,541 (4.5)	982 (2.8)	1,844 (5.3)	1,535 (4.4)	2,354 (6.8)	742 (2.1)	70 (0.2)	92 (0.3)

연도	4호	4·6호	5호	5·6호	5·8호	6호	7호	8호	9호	10호	병과처분 기타	심리불개시	불처분	타법원이송	검찰청송치	**합계**
2010	34 (0.1)	104 (0.2)	13 (0.0)	747 (1.7)	1,689 (3.7)	73 (0.2)	81 (0.2)	11 (0.0)	861 (1.9)	806 (1.8)	68 (0.2)	7338 (16.3)	3105 (6.9)	1840 (4.1)	391 (0.9)	**45,090 (100.0)**
2011	77 (0.1)	146 (0.3)	28 (0.1)	922 (1.9)	1,915 (3.9)	9 (0.0)	150 (0.3)	15 (0.0)	883 (1.8)	1,019 (2.1)	122 (0.3)	7,905 (16.2)	2,579 (5.3)	2,536 (5.2)	621 (1.3)	**48,713 (100.0)**
2012	103 (0.2)	56 (0.1)	71 (0.1)	1,164 (2.3)	2,607 (5.1)	14 (0.0)	195 (0.4)	7 (0.0)	1,206 (2.4)	1,169 (2.3)	485 (1.0)	9,209 (18.1)	2,278 (4.5)	2,441 (4.8)	693 (1.4)	**50,771 (100.0)**
2013	91 (0.2)	22 (0.0)	41 (0.1)	1,150 (2.5)	1,879 (4.1)	13 (0.0)	149 (0.3)	3 (0.0)	1,153 (2.5)	1,252 (2.8)	349 (0.8)	8,065 (17.8)	2,663 (5.7)	2,179 (4.8)	534 (1.8)	**45,393 (100.0)**
2014	63 (0.2)	39 (0.1)	32 (0.1)	834 (2.4)	1,257 (3.6)	9 (0.0)	183 (0.5)	-	812 (2.3)	813 (2.3)	153 (0.4)	5,669 (16.4)	2,543 (7.3)	1,403 (4.1)	456 (1.3)	**34,600 (100.0)**

※ 자료 : 법원행정처 사법연감

〈그림2〉 소년교도소 및 소년원 수용인원 변동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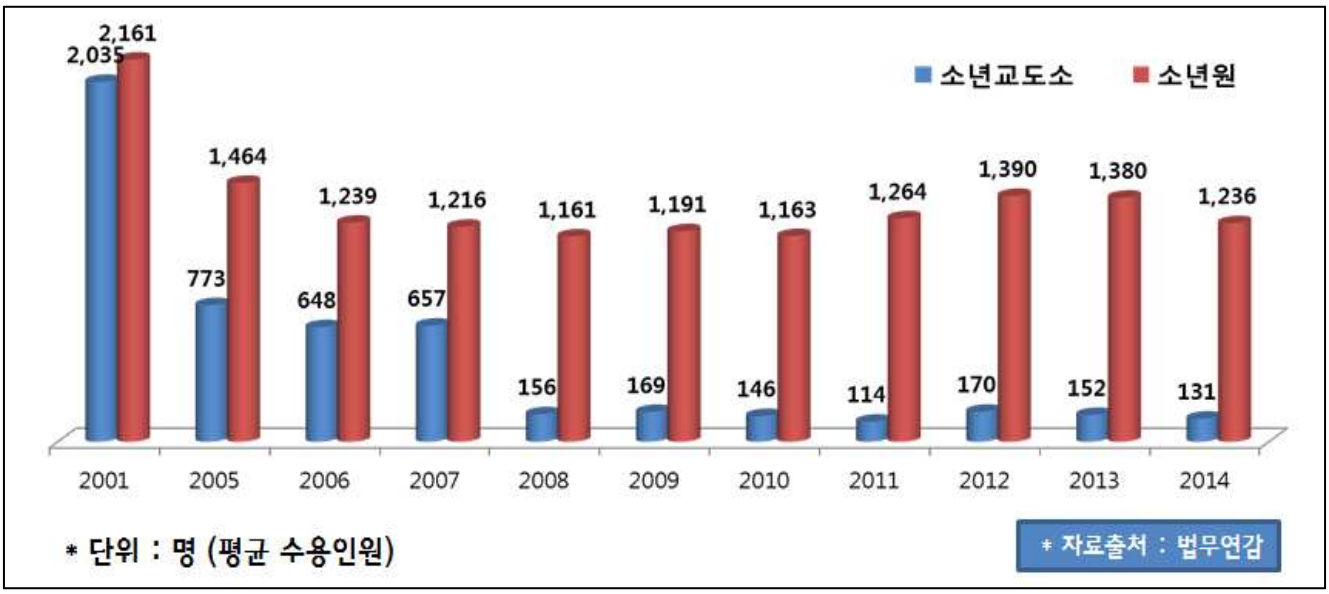

Ⅱ. 소년사법 개관

1. 대상소년

「소년법」 제4조에서는 소년사법절차의 대상으로 범죄소년, 촉법소년, 우범소년을 규정하고 있다. 범죄소년이란 죄를 범한 14세 이상 19세 미만인 소년을 말하고, 촉법소년은 형법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 그리고 우범소년은 집단적으로 몰려다니며 주위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성벽이 있거나, 정당한 이유없이 가출하거나,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거나 유해환경에 접하는 성벽이 있는 소년으로, 소년의 성격이나 환경에 비추어 앞으로 형법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10세 이상 19세 미만의 소년을 말한다.

2. 소년사건 처리절차

「소년법」은 소년의 사건처리와 관련하여 형사사건과 보호사건의 이원적 구조를 채택하고 있지만 소년사건이 처음부터 형사사건 또는 보호사건으로 나누어져 별개의 절차를 거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절차의 진행에 따라 그 성격이 서로 바뀔 수 있다. 즉 형사절차에서 수사나 재판을 받다가 소년법원에 보내져서 보호사건으로 될 수도 있고, 소년법원에서 사건을 형사절차로 보내면 형사사건이 될 수도 있다.

소년사건의 사법적 처리는 일반형사사법기관인 경찰, 검찰, 법원 등이 담당하고 있다. 다만, 소년의 경우에는 아직 인격적으로 미완성의 상태에 있고 성인범 보다는 개선가능성이 크므로 보호적 측면을 중시하여

성인 범죄자의 처리과정과는 다르게 소년보호사건과 소년형사사건으로 나누어 별도의 처리과정을 거치도록 하고 있다. 즉 소년사건처리의 관할과 절차를 이원화하여 소년사건의 유형에 따라 별개의 법원이 심리와 처분을 나누어 관할하고 있다.

소년보호사건의 관할은 법원 소년부에 속하고(소년법 제3조 제2항), 소년형사사건의 관할은 일반형사사건의 예에 의한다(소년법 제48조).[11]

가. 발견단계

소년범의 발견은 주로 경찰에 의해서 이루어지는데 범죄소년을 검거한 때에는 그 범죄소년을 검사에게 송치하여야 하며, 촉법소년과 우범소년을 발견한 때에는 훈방하거나 검사를 거치지 않고 직접 법원 소년부에 송치하여야 한다(소년법 제4조 제2항). 이외에도 범죄소년, 촉법소년, 우범소년을 발견한 보호자 또는 학교 · 사회복리시설·보호관찰소의 장은 해당 소년을 법원 소년부에 통고할 수 있다(소년법 제4조 제3항).

검사는 경찰이 송치한 범죄소년이나 직접 인지한 소년피의사건을 수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기소유예, 혐의 없음, 죄가 안됨, 공소권 없음 등의 불기소 처분을 하거나 소년부송치 또는 형사법원에 기소한다.

나. 조사단계

소년사건 처리절차상에서의 조사는 크게 검찰단계에서의 검사 결정전 조사, 법원단계에서의 법원조사관 조사, 소년분류심사원에서의 비행진단과 보호관찰소의 판결전 조사로 나눌 있다.

'검사 결정전 조사'는 검사가 소년피의사건에 대하여 소년부송치, 공소제기, 기소유예 등의 처분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피의자에 대하여 보호관찰소장, 소년분류심사원장 또는 소년원장에게 피의자의 품행, 경력, 생활환경이나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조사할 수 있는 제도로(소년법 제49조의2), 조사결과는 검사가 소년사건에 대해 보호사건으로 처리할지, 형사사건으로 처리할지의 절차를 결정하는 선의권을 행사하기 위한 요보호성의 판단자료 및 다이버전의 결정을 위한 판단자료, 공소제기를 위한 판단자료 등으로 활용한다.

재판단계에서의 '법원조사관에 의한 조사'는 심리학, 교육학, 사회사업학 등의 지식과 경험을 가진 법원조사관으로 하여금 소년의 비행사실, 성행, 환경 등을 조사하게 하는 것이다.

소년보호기관에서의 조사업무는 「소년법」 제18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법원의 위탁결정으로 소년분류심사원[12]에서 1개월 이내에 비행소년을 수용·보호하며 심리학, 교육학, 정신의학 등 전문지식을 갖춘 분류

---

11) 보호사건은 검사가 소년에 대한 피의사건을 수사한 결과 벌금이하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이거나 보호처분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 사건을 관할소년부로 송치하여 처리하고(소년법 제49조 제1항), 형사사건은 그 동기와 죄질이 금고이상의 형사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건이 해당된다(소년법 제49조 제2항).

12) 소년분류심사원은 법원 소년부로부터 위탁된 소년을 수용하여 분류심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법원의 조사·심리자료로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전국에 1개 기관에 불과하여 소년분류심사원이 없는 지역에서는 부산·대구·광주·대전·춘천·제주 소년원에서 그 업무를 대행한다.

심사관이 대상소년의 생활사를 중심으로 한 사회·환경적 조사, 각종 심리검사, 행동관찰, 신체·정신상황, 보호자 상담 및 각종 기록조회 등 다각적 수단을 동원하여 요보호성을 판별하는 '분류심사'(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24조)와 「소년법」 제12조에 따른 전문가 진단의 일환으로 법원 소년부가 비행초기단계 소년에 대하여 청소년비행예방센터[13]에 주간에 출석시켜 비행성 진단을 받을 것을 명함으로써, 청소년비행예방센터에서 비행원인 등 종합적인 진단과 더불어 소년의 비행성 제거를 위한 인성교육을 병행하는 '상담조사'가 있다.[14]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조사업무는 소년형사절차에서 소년에게 보호관찰을 명하기 위하여 법원이 필요한 경우 보호관찰소장에게 피고인에 관한 범행의 동기, 직업, 생활환경, 교우관계, 가족상황, 피해회복 여부 등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도록 요구하는 '판결전조사'(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와 소년보호사건 처리절차에서 소년의 품행, 경력, 가정상황, 그 밖의 환경 등 필요한 상항에 관한 조사를 요구하여 시행되는 '결정전조사'(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 제1항)가 있다.

다. 심판단계

재판단계에서의 관장기관으로는 형사법원, 법원 소년부, 소년분류심사원이 있다. 소년분류심사원은 비행성을 진단하는 기관이고, 법원 소년부에서는 경찰, 검찰, 법원에서 보내온 소년사건에 대해 비행원인을 조사 · 심리하여 보호처분을 결정한다. 소년부 판사는 경찰서장 또는 보호자 등이 송치·통고한 촉법소년·우범소년을 조사 또는 심리한 결과 검찰송치, 형사법원 이송, 심리불개시, 불처분결정, 보호처분을 할 수 있다. 보호처분은 1호에서 10호까지 있으며, 소년원송치 대상은 7호 ~ 10호처분 소년이다.

라. 집행단계

대상소년이 보호처분을 받게 되면 보호처분의 종류에 따라 아동복지시설·보호관찰소·소년원[15]의 장 등이 보호처분을 집행하게 되고, 형사처분을 받아 실형이 확정되면 소년교도소장이 형을 집행한다.[16]

---

13) 청소년비행예방센터의 주요 임무는 법원·검찰청·학교 등에서 의뢰한 위기청소년에 대한 대안교육 및 부모에 대한 보호자교육 실시, 소년부 판사가 의뢰한 비행청소년의 상담조사 실시, 지역사회 청소년에 대한 심리상담, 일일체험, 주말캠프 및 초·중등교사 직무연수, 가족캠프 등의 비행예방업무를 수행하며 전국에 17개 기관이 있고, 대외명칭은 '청소년꿈키움센터'이다.

14) 판사의 결정으로 소년분류심사원과 청소년비행예방센터에서 분류심사 및 상담조사를 받는 기간은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2항과 「동법 시행령」 제85조에 따라 소년의 재적학교의 출석일수로 인정된다.

15) 전국에 10개 소년원이 있으며, 이 중 여자소년원은 2개 기관으로 안양소년원은 10호처분, 청주소년원은 8호 및 9호 처분 소년을 각각 수용·교육한다.

16) 소년원Vs 소년교도소 비교

〈그림3 소년사건처리절차 및 소년보호기관의 임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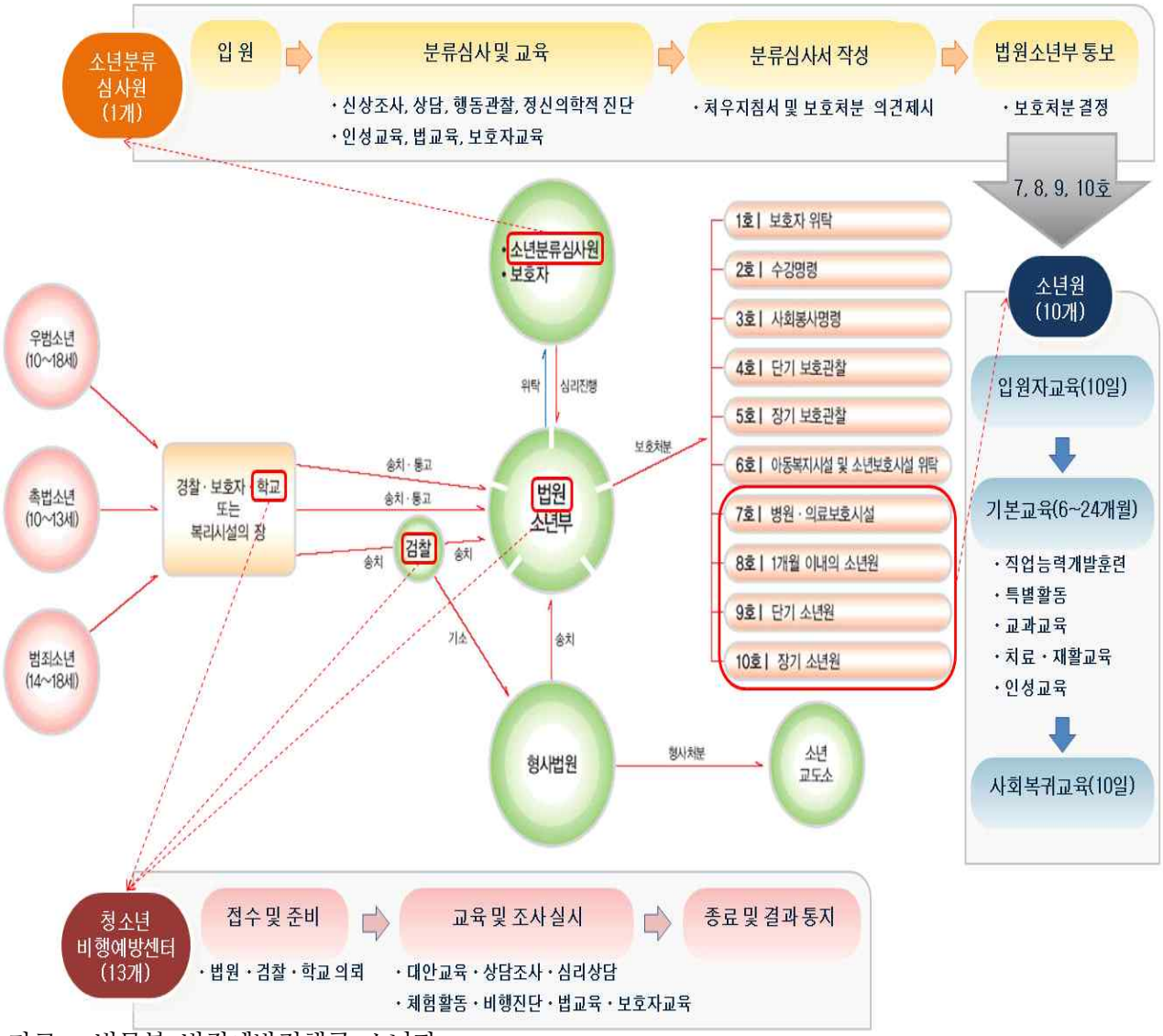

※ 자료 :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소년과

구 분	소 년 원	소년교도소
적용법률	• 소년법 •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 형법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처 분 청	• 가정법원 또는 지방법원소년부	• 형사법원
처분종류	• **보호처분**(1~10호 처분) – 8호(1개월), 9호(6개월 이내), 10호(2년이내) 처분자	• **형사처분** 생명형(사형), 자유형(징역·금고·구류) 재산형(벌금·과료·몰수) 명예형(자격상실·자격정지)
시 설	• 10개 소년원(2개 여자소년원)	• 1개 소년교도소(여자소년 청주여자교도소)
수용대상	• 범죄소년, 촉법소년, 우범소년(이상 비행소년)	• 범죄소년
수용기간	• **2년 미만**	• 선고에 의한 자유형 집행기간
사회복귀	• 퇴원 : 교정목적을 달하였다고 인정할 때 • 임시퇴원 : 교정성적이 양호하고 보호관찰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될 때	• 석 방 : 형기 종료시 • 가석방 : 行狀이 양호하여 개전의 정이 현저한 때(행형성적 양호자에 대한 시혜)
신분제한	• **장래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음**(소년법 제32조 제6항)	• 법에서 정한 복권 기한 내 수형인명부 기재·관리 **(전과기록)**

3. 소년원내 인권적 처우[17] 환경 및 실태

가. 소년원 시설 현대화를 통한 교육·생활환경 개선

기존 소년원 생활실은 대형 집단혼거실(10인~15인) 구조로 수용소년의 인권침해와 교정교육의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우려되는 상황이었으므로, 2013년부터 「자유를 박탈당한 소년의 보호에 관한 UN 규칙」 등 국제 인권기준에 부합하도록 4인실 이하의 소규모실로 개선하는 "소년원 시설 현대화"사업을 추진 중이다. 서울소년분류심사원과 소년원 10개 기관 등 총 11개 기관 중 4개 기관이 완료되었고, 청주소년원을 비롯한 3개 기관이 현재 진행 중이며, 서울소년원 등 4개 기관은 예산 확보 후 추진할 예정이다.

청주소년원의 경우 기존 생활관도 개인별 책상 및 침대 등 생활공간을 분리하여 주고, 전반적인 시설을 밝고 쾌적하게 조성하여 감수성이 예민한 10대 소녀들의 특성을 고려한 생활환경을 구비하고 있다.

대구소년원 생활관 리모델링 전후 비교

책방, 학과장 복도, 예절교실, 강당	여학생 생활실(개인별 침대 · 책상)

청주소년원 시설 전경

17)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5조(처우의 기본원칙)** ①소년원장 또는 소년분류심사원장은 보호소년, 위탁소년 또는 유치소년(이하 "보호소년등"이라 한다)을 처우할 때에 인권보호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그들의 심신 발달과정에 알맞은 환경을 조성하고 안정되고 규율있는 생활 속에서 보호소년등의 성장가능성을 최대한 신장시킴으로써 사회적응력을 길러 건전한 청소년으로서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보호소년에게는 품행의 개선과 진보의 정도에 따라 점차 향상된 처우를 하여야 한다.

나. 가족과의 정기적 연락 등 충분한 소통권 보장

소년원에서는 모든 소년들이 1일 1회 30분 이내(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 제1항)로 기관별로 정해진 시간 내에서 자유롭게 면회를 할 수 있다. 청주소년원의 경우에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주 6일동안 12:00부터 12:40까지 통상 점심시간을 면회시간으로 정해 면회를 실시하고 있으며, 원거리에 거주하는 보호자가 미처 면회시간을 알지 못했을 때에는 정해진 시간 이외에도 시간외 면회를 허락하고 있다.[18)]

또한 소년들이 가족, 친지, 은사 등과 우편으로 편지를 주고받는 것을 제한하지 않으며 인터넷 서신의 경우에만 수신만 허용한다. 실무에서는 대부분의 소년원에서 소년이 부모에게 보내는 서신의 횟수를 제한하지 않으며 부모 또는 은사나 소년부 판사에게 작성하는 모든 편지를 송부하고 있다. 다만 편지의 경우 공범에게 보내는 것이나 편지의 내용이 교육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에 한하여 왕래를 제한하기도 하나 이러한 편지도 소년의 의사에 따라 반송, 폐기하거나 출원할 때에 본인에게 모두 지급하고 있다.[19)]

전화통화 역시 소년원 내규[20)]에 평일 근무시간 내에 실시하되 1회 3분 이내, 신입소년의 경우에는 10일 이내 1회, 수용기간이 1월 이상인 자는 월 1회 이상 등과 같이 횟수나 시간이 정해져 있으나 실무상으로는 폭넓게 담임교사의 재량으로 규정보다 초과하여 소년이 희망하며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시간과 횟수에 구애됨이 없이 자유롭게 전화통화를 허용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원거리 거주자를 위해 스마트폰을 이용한 스마트 영상전화도 실시하고 있다.

다. 상급학교 진학 및 직업훈련 직종 다양화

소년원에 입원한 소년들은 대부분이 학업 중단자로 기초학습능력이 부족한 바, 전체 소년원에 중졸·고졸 검정고시반을 편성하여 연2회(4, 8월) 검정고시를 응시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으며, 중·고등학교 재학 중 소년원에 입원한 소년들에 대하여는 교과교육과 인성교육을 병행하여 소년들의 학업이 중단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21)]

---

18)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8조(면회·편지·전화통화)** : ①원장은 보호소년등의 보호 및 교정교육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외에는 보호소년등의 면회를 허가하여야 한다. ②~③(생략) ④원장은 보호소년등의 보호 및 교정교육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호소년등의 편지왕래를 제한할 수 있으며, 편지의 내용을 검열할 수 있다. ⑤제4항에도 불구하고 보호소년등이 변호인등과 주고받는 편지는 제한하거나 검열할 수 없다. 다만 상대방이 변호인등임을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⑥원장은 보호소년등의 보호 및 교정교육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가족 등과 전화통화를 허가할 수 있다.

19)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편지 왕래의 제한)** ①원장은 법 제18조제4항에 따라 편지를 검열한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편지의 왕래를 제한할 수 있다. 1.공동으로 비행을 저지른 관계에 있는 사람의 편지인 경우 2.편지 내용이 보호소년등의 교육에 해가 되거나 보호소년 등이 그 내용을 알아서는 아니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②제1항에 따른 편지 왕래의 제한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한다. 1.보호소년등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반송할 것 2.보호소년등의 동의를 받아 폐기할 것 3.보호소년등의 동의를 받아 담당직원이 보관하였다가 출원할 때 내줄 것 ③(생략)

20) **소년보호 수용관리 통합 지시공문** 제4부 생활지도 제9장 전화통화 부분 참조

21) 상급학교 진학 : 2011년 111명(고등학교 89명, 대학교 22명), 2012년 137명(고등학교 92명, 대학교 42명), 2013년 115명(고등학교 70명, 대학교 45명), 2014년 134명(고등학교 63명, 대학교 71명), 2015년 154명(고등학교 63명, 대학교 91명)(이하 TEAMS상 통계자료)
검정고시 합격 : 2011년 492명, 2012년 685명, 2013년 615명, 2014년 667명, 2015년 600명

또한 소년원 출원 이후 자립능력을 강화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전국 소년원에서 제과제빵, 커피바리스타, 한식조리, 헤어디자인, 가발전문, 자동차정비, 골프매니지먼트 등 20개 직종의 직업훈련 교육과정을 운영하면서,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기능사 자격 및 민간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직업훈련을 실시하고 있다.[22)]

예술분장(웨딩코디네이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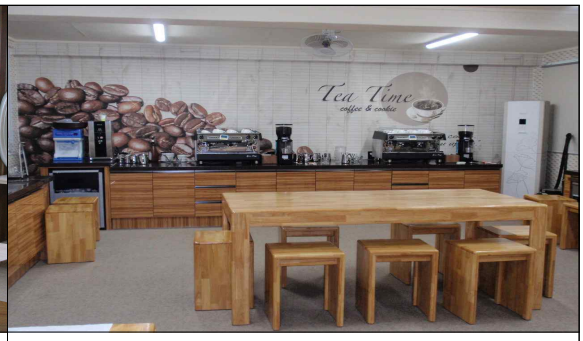

바리스타 교육과정

청주소년원 직업훈련 교육장

라. 품성개선을 위한 인성교육 확대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등 소년보호기관 전체 소년을 대상으로 조화로운 인격형성과 비행성 교정을 목적으로 하는 인성교육을 실시하는 바, 소년원의 경우에는 모든 소년이 수용기간 중 반드시 2개 이상의 인성교육과정을 수료하여야 한다.

프로그램은 강·절도, 성비행, (학교)폭력 등 비행유형별 전문교육과정과 자기성장, 가족관계 회복, 대인관계능력 향상, 진로탐색, 성폭력 가해자·피해자 치료프로그램 등 심리치료 교육과정을 운영하며 이와 더불어 미술, 운동, 연극 등의 예체능교육과 함께 봉사활동, 문화예술관람, 스키캠프 등 다양한 체험형 교육과정도 함께 이수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다.[23)]

마. 인권친화적 생활지도

소년원에 수용되는 모든 신입소년에 대해 교육을 실시하는데 그 주요내용[24)]은 소년원 교육과정 및

---

22) 직업훈련 자격증 취득 : 2011년 670명, 2012년 900명, 2013년 774명, 2014년 947명, 2015년 777명

23) 2016년 현재 전국 소년원에서 79개의 예체능 과정이 운영(예능 46개, 체육 33개 과정)되고 있으며, 청주소년원의 경우에도 난타, 우쿠렐레, 넷볼, 치어리딩, 방송댄스, 배드민턴, 오카리나, 원예 등 8개 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24) 2016년도 소년보호기관 교육계획서 6쪽 참조

교육내용, 개인별 기본교육과정 및 생활실 등을 결정하는 분류처우 제도를 비롯하여 진정 및 청원절차, 면회 및 편지 절차, 소년원 생활 제반 규정 등의 기본적인 권리 및 의무 등이다. 이러한 신입소년에 대한 교육을 통하여 소년이 심리적 안정과 새로운 환경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성행을 개선하고 올바른 생활습관을 익힐 수 있도록 상·벌점 체크리스트제도를 운영하여 교정성적에 반영함으로써 목표점수에 일찍 도달한 소년은 조기에 출원할 수 있으며, 모범학생으로 선정되면 체험학습, 문화예술 공연 관람 등의 다양한 개방처우 기회를 우선 제공한다.

또한 모든 소년들에게 생활용품을 일체 관급으로 지급하며 교도소의 영치제도가 없는 바, 이는 모든 학생이 빈부의 차이로 인한 차별받음이 없도록 하기 위함이다.

모든 소년원에는 전문의와 간호사가 상주하여 상시 진료가 가능하며 신입소년의 경우 자체 신체검사와 혈액검사를 통해 결핵·성병 등의 검사를 실시하는 한편, 한국건강관리협회가 주관하는 정기 건강검진을 모든 소년에게 시행하고 있다. 검사를 통해 성병, 소아당뇨 등 각종 질병이 발견되면 외부병원에 정기적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정신질환 소년의 경우에는 외부병원 진료는 물론 전문 상담가에 의한 각종 심리상담을 실시하는 한편, 외부 전문기관에 의한 연극·미술·무용치료와 같은 다양한 치료프로그램을 실시함으로써 소년들의 육체적, 정신적 건강을 돕기 위한 체계적인 건강관리 시스템이 구비되어 있다.

Ⅲ. 소년원생들에 대한 참여권(의견청취권) 보장제도

1. 분류심사 시 면접조사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분류심사[25] 업무는 법원 심리과정에서 판사가 사건의 조사 또는 심리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한 소년에 대하여 소년의 신상관계, 가정·환경·심리적 측면, 행동관찰 등 제반사항을 조사하여 비행원인을 규명하고 처우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업무이다.

분류심사업무는 처음 위탁 시 이루어지는 간단한 신상조사와 건강검진을 시작으로 특수지능적성검사, 특수인성검사, 직업흥미검사 등 다양한 심리검사를 실시하며 '지나온 나의 생활'과 같이 자기기록서를 직접 작성하게 하고, 학교생활기록부, 범죄경력조회서, 건강조사 등과 같은 다양한 객관적 자료 등을 조회한다.

또한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된 약 1달간의 기간 동안 담임교사는 물론 교육에 참여하는 모든 직원

25)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24조(분류심사)** ①분류심사는 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소년의 신체, 성격, 소질, 환경, 학력 및 경력 등에 대한 조사를 통하여 비행 또는 범죄의 원인을 규명하여 심사대상인 소년의 처우에 관하여 최선의 지침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분류심사를 할 때에는 심리학·교육학·사회학·사회복지학·범죄학·의학 등의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에 근거하여 보호소년등의 신체적·심리적·환경적 측면 등을 조사·판정하여야 한다.

들에 의해 관찰되어지는 소년의 생활모습과 교사와 주기적으로 상담한 내용들이 TEAMS[26]상에 누가 기록되며, 분류심사관은 이상의 모든 객관적 자료들을 취합하여 분류심사서를 작성한다.

이 과정에서 소년 및 소년의 보호자에 대한 분류심사관의 면접조사가 이루어지는데 보호자 면담은 유선상으로도 가능하나 소년과의 면담은 대면하여 실시하여야 한다.[27] 이러한 대면상담을 통하여 소년에 대한 정확한 객관적 사실을 확인하게 되고 소년들의 의견을 심사서에 반영하는데 실제로 위탁된 소년들에게는 분류심사관과의 면접이 심리적으로 매우 중요하게 작용한다. 따라서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된 기간동안 담임교사와의 수시 상담을 통하여 소년들의 의견이 청취되고 애로 및 민원사항이 해결될 수 있도록 조력하며, 최종적으로 판사의 심리자료로 활용되는 분류심사서에 소년의 의견을 반영함으로써 소년들의 의견청취권이 보장된다고 할 수 있다.

2. 처우심사 시 면담 및 회의 출석

소년원에서는 수용되는 모든 소년들에 대한 효과적 처우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기관장 및 해당 직원 등이 참석하는 5명 이상 9명 이하로 구성된 처우심사위원회[28]를 설치·운영한다. 처우심사위원회에서는 소년의 개별처우계획 수립을 포함하여 타 소년원으로의 이송·외출·통근·통근취업·징계·포상·계속수용 등 전반적인 소년의 처우에 대해 논의하여 결정하고, 소년의 출원 시에는 퇴원 또는 임시퇴원 여부를 심의한다.

회의가 개최되기 전 각각의 사안별로 담임교사 및 처우회의 담당교사와 소년과의 사전 면담을 통하여 심사자료표가 작성되는데 이 과정에서 소년은 물론 보호자의 의견도 사전에 파악하여 반영된다.

신입처우심사를 예를 든다면 청주소년원의 경우 소년에 대한 처우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먼저 소년의 학업연계를 위한 검정고시 응시여부를 결정하고, 직업훈련과정 중 예술분장과 커피바리스타 중 소년이 무엇을 희망하는 지, 특별활동은 치어리딩, 배드민턴, 원예 등의 과정에서 어떤 활동에 참여하고 싶은지를 소년의 의사에 따라 결정한다.

처우심사회의는 출원 심사에 관하여는 매월 정기적으로 개최되고 신입생에 대한 개별처우계획 또는 기타 사안에 대해서는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개최되는데 모든 소년원에서는 처우심사 시 해당 소년을

---

26) 소년보호종합관리시스템(Total Education And Management System) : 입출원, 분류심사, 교육, 생활지도, 개별처우, 의무, 민원, 대안교육, 조사, 보호자교육, 사회정착지원, 통계관리 등 소년보호기관 전반의 업무에 대해 담당자들이 자료를 입력하고, 조회하고, 관리하는 소년보호기관의 전산관리시스템

27)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9조(면접조사)** ①면접조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1. (중략)소년에 대한 면접조사의 방법 : 직접 면담하는 방법 (이하 생략)

28)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처우심사위원회의 설치·운영)** ①(생략) ②처우심사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보호소년의 개별처우계획 수립 2.보호소년에 대한 향상된 처우의 결정에 관한 사항 3.보호소년의 이송·외출(원장이 처우심사위원회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5호에서 같다)·통학·통근·통근취업·징계·포상 및 계속수용에 관한 사항 4.보호소년의 소년원 퇴원 또는 임시퇴원에 관한 사항 5.위탁소년 및 유치소년의 외출·징계·포상 등의 처우에 관한 사항 6.그 밖에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생략)

출석시켜 사전 조사된 자료와의 합치여부를 확인하고 소년이 자신의 처우에 대한 의사를 표명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한다.

다만 아쉬운 점은 실무에서는 소년에 대한 모든 처우 전반에 걸쳐 소년은 물론 보호자의 의견이 수렴되고 있음에도 법령상으로는 소년의 참여권에 대한 명시규정이 없어 추후 법제화가 필요하겠다.

3. 급식관리위원회 회의 참여

소년원마다 소년들에게 제공하는 급식[29]관련 업무를 관장하기 위해 급식관리위원회를 두고 있는데 매월 1회 회의를 개최한다. 급식관리위원회에서는 예상 급식비 산정, 부식의 예상 견적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매월 실시하는 식단 선호도 조사 결과, 익월 주간 식단표 등에 대하여 심의한다.

관련 법무부 예규[30]에 따르면 청소년비행예방센터의 경우에는 인솔교사 및 학생대표(교육대상자)를 급식관리위원으로 선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소년원 학생에 대한 위원 선임 관련규정은 없다. 따라서 소년원에서의 급식관리위원회에 학생의 참여가 명시규정은 아니나 실무상 많은 소년원에서 실제 회의에 소년들을 참석시켜 의견을 제시하도록 함으로써 본인들이 제공받는 급식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소년들이 선호하는 부식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청주소년원의 경우에는 회의가 개최되는 날에는 담임교사들로부터 모범학생 2명을 추천받아 주방에서 음식의 조리부터 배식, 설거지 등 당일 점심 배식준비의 모든 절차에 참여하도록 하고 회의에 참석시키고 있다. 참여한 소년들은 대부분 '급식단가(1일 5,097원)가 낮은데도 불구하고 재료들이 모두 유명상표라서 놀랐다', '직접 식사준비를 해보니 조리하시는 분들의 수고를 알게되었다.''모든 학생들에게 고르게 배식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등의 의견을 제시한다. 더불어 식단 작성 시 학생들이 희망하는 식단을 추가로 반영하는 등 학생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있다.

이상과 같이 급식관리에 있어서도 1차적으로 매월 식단선호도 조사(무기명 여론조사), 2차적으로는 급식관리위원회에 소년들을 참석시킴으로써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있다.

4. 개별상담

소년원·소년분류심사원에서는 보호소년 등의 문제와 그들의 욕구를 효과적으로 해소하여 교정목표를 조기에 달성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상담[31]을 실시한다. 모든 학생에 대해 초기 2개월 이내에는 주 1

---

29) **보호소년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7조(급여품 등)** ①(생략) ②보호소년등에게는 주식, 부식, 음료, 그밖의 영양물을 제공하되, 그 양은 보호소년등이 건강을 유지하고 심신의 발육을 증진하는 데에 필요한 정도이어야 한다. (이하 생략)

30) **소년보호기관 급식관리지침(법무부 예규 제1110호) 제13조(급식관리위원회 구성)** ①(생략) ②급식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원장 또는 센터장이 되며, 위원은 당해 기관의 과장(팀장) 이상의 직위에 있거나 영양 또는 조리에 관한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원장 또는 센터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청소년비행예방센터의 경우에는 인솔교사 및 학생대표(교육대상자)를 위원으로 선임할 수 있다. ③~④(생략)

회 상담을 실시하여야 하고 3개월 부터는 월 1회 이상 상담을 실시하되, 소년이 상담을 신청하거나 문제를 유발한 학생 또는 부적응 학생에 대해서는 수시로 상담을 실시한다. 이러한 상담을 통하여 소년들은 고민거리는 물론, 자신의 요구사항 등에 대하여 적극 의견을 개진함으로써 본인의 처우에 관한 의사를 표명한다. 이러한 직원들에 의한 상담 이외에도 다양한 심리치료프로그램 등을 통하여 전문상담가에 의한 상담도 이루어지는데 상담 결과는 TEAMS에 입력되어 관련 직원들이 모두 공유할 수 있도록 하고 교사들은 소년의 문제해결을 위해 적극 노력한다.

5. 보호소년 여론조사

소년원에서는 소년들의 처우에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소년들을 대상으로 월 1회 이상 무기명 여론조사[32]를 실시하고 그 결과 반영할 수 있는 의견에 대해서는 즉시 개선하거나 처우에 반영하고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소년들에게 공지하는 등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소년들과 공유하며 소년들이 소년원내에서의 처우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도록 하고 있다.

매월 실시하는 처우에 관한 여론조사는 고민이나 문제가 발생하면 주로 누구와 의논하는지, 담임교사와는 충분한 상담이 이루어지는지, 소년들 상호간 또는 교사로부터 인권침해 사례가 있는지, 본인이 받고 있는 교육에 대한 만족정도, 면회시설 및 분위기, 의무과 진료 및 지급품에 대한 만족도, 기타 현재 해결하고 싶은 고민 등에 대한 기술 등 총 12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수용기간 중 이루어지는 처우에 관한 여론조사 이외에 소년원에서의 생활을 마치고 출원하기 직전에 모든 출원생을 대상으로 '학교생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다. 설문지는 신입반에서 소년원 교육과정에 관한 안내를 받았는지 여부에서부터 상벌점이 공정하게 부여되는지, 급식 및 의복, 생필품 등에 대한 만족도, 담임교사 또는 당직교사의 소년에 대한 지도태도 등 총78개의 리커트척도 문항과 마지막으로 평소 하고 싶었던 이야기, 꼭 고쳐주었으면 하는 것이 무엇인지 등 3개의 자유 기술문항이 포함되는 총 81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여론조사 제도는 그 결과를 직원들이 공유하고 처우에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소년들이 소년원이라는 수용시설 내에서 그들이 필요(needs)가 한 최대한 충족될 수 있도록 의견수렴의 창구역할을 하고 있다.

---

31)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0조(원장의 면접)** 원장은 보호소년 등으로부터 처우나 일신 상의 사정에 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수시로 보호소년등과 면접을 하여야 한다.

보호소년 처우지침(법무부 훈령 제1062호) 제15조(상담 등) ①소년원장은 송치, 이송으로 새로 입원한 보호소년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상담 및 행동관찰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입원 후 2개월 이내 : 주 1회 이상 2. 입원 후 2개월 이후 : 월 1회 이상 ②제1항에 따른 상담 및 행동관찰은 실시할 때마다 정보시스템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32)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여론조사)** 원장은 보호소년등을 적절하게 처우하기 위하여 보호소년등을 대상으로 월 1회 이상 처우에 관한 의견을 조사하고 그 처리결과를 보호소년등에게 알려야 한다.

6. 청원 및 진정제도

소년이 소년원에서의 처우에 대해 불복할 때에는 법무부장관에게 즉시 문서로 청원[33]할 수 있도록 법제화 되어 있는 바, 실무상으로는 전국 소년원에서 처우에 불복하여 청원이 이루어지는 사례는 거의 없고 면회의 편의성이나 학교 통학 등을 위한 청원이송[34]이 종종 발생한다. 처리절차는 소년과 소년의 보호자가 왜 청원이송이 필요한지 신청서를 작성하여 소년원장에게 제출하면 소년원에서는 법무부로 공문을 발송하고 관할부서인 법무부 소년과에서 청원이송을 허가하여 본인에게 고지 후 이송절차를 밟게 된다.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소년과 자료에 따르면 전국 10개 소년원에서 2013년 2건, 2014년 11건, 2015년 7건 등의 청원이송 건이 발생하였다.

처우의 불복을 위한 청원과는 별개로 인권침해나 평등권 침해 등의 차별행위를 당한 경우 인권위원회 또는 법무부 인권국에 그 구제를 요청할 수 있는 진정[35]제도가 법무부 예규로 마련되어 있다. 진정서는 청원신청서와 달리 소년원에서 개봉이 불가하며 진정함에 투입된 진정서는 즉시 인권위원회나 법무부 인권국으로 송부하고 진정서가 접수된 기관에서 절차에 따라 진정내용을 처리하게 된다.

Ⅳ. 맺음말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소년원에서는 소년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처우에 반영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가 마련되어 운영 중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를 박탈당한 소년에 대한 진정사례는 해마다 발생하고 있다. 물론 그 내용이 적절하지 못한 사례도 있으나 우리는 소년들의 목소리에 귀 귀울여야 하며, 그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따라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현장에서 제도를 충분히 활용하여 소년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직원들의 역할이다. 아무리 훌륭한 제도가 정비되어 있다 할지라도 그 것을 운용하는 직원의 진정성이 결

---

33)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1조(청원)** 보호소년등은 그 처우에 대하여 불복할 때에는 법무부장관에게 문서로 청원할 수 있다.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청원의 편의 제공) ①원장은 법 제11조에 따른 청원서를 접수하면 지체없이 이를 법무부장관에게 보내야 한다. ②원장은 법 제11조에 따른 청원을 할 수 있다는 안내문을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는 등 청원의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원장은 보호소년등이 청원을 못하게 하거나 청원을 하였다는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청원의 처리절차) ①원장은 영 제13조에 따른 청원의 편의를 위하여 보호소년등이 이용하기 편리한 곳에 청원함을 설치하고, 매일 청원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청원에 대한 결정은 문서로 하여야 하며, 그 결정서는 지체없이 청원인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③원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청원처리부를 갖추고, 청원의 처리경위를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34) **제15조(청원에 따른 이송)** 소년원장은 보호소년 또는 그 보호자등에 다른 소년원으로 이송해 줄 것을 청원한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보호소년을 그 소년원으로 이송할 수 있다.

35)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등 업무처리지침(법무부 예규 1098호)**에 세부적 절차가 규정되어 있음

여되거나 전문성이 없다면 그 제도는 충분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할 것이다. 이는 소년원 직원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UN「아동권리협약」이 요구하는 소년에 대한 '비차별(Non-discrimination)', '최선의 이익(Best interests of the child)', '생명, 생존과 발달의 권리(Right to life, survival and development)', '의견의 존중(Respect for the views of the child)' 등과 같은 기본원칙이 소년사법전반에서 광범위하게 적용되기 위해서는 구비된 법률과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소년사건절차 각 단계에서의 실무자의 전문성이 담보되어야 한다. 더불어 위기청소년의 건강한 성장·발달을 위해 정부, 시민단체, 기업 등 사회 각계가 공조하여 지원체계를 구축하여야 함을 물론, 사회 전반에서의 성숙한 인권 존중의식 함양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Ⅱ-2

소년재판과 아동인권

권 양 희 (서울가정법원)

소년재판과 아동인권

2016. 6. 14.

서울가정법원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소년보호재판 절차
Ⅲ 보호소년 처우의 문제점
Ⅳ 여론 - 복지시설 아동과 통고제도

서울가정법원

Ⅰ. 들어가며

서울가정법원

01 소년사건의 기본 절차

서울가정법원

※ KBS 청소년기획 - 세상 끝의 집 E1. (140706)

Ⅱ. 소년보호재판절차

서울가정법원

01 소년보호재판의 목적

비행성이 있는 소년에 대하여 처벌보다는 환경조정과 품행교정을 위한 보호처분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를 함으로써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함

소년보호재판은 소년의 성행 (학생, 중퇴, 결석, 가출, 친구관계, 학교생활 등), 가정환경(편부나 편모, 조손가정, 형제관계, 가정폭력, 음주 등), 보호자의 보호의지나 보호능력 등을 더 중요하게 취급하고, 전과로 남지 않음.

서울가정법원

02 소년보호재판의 기본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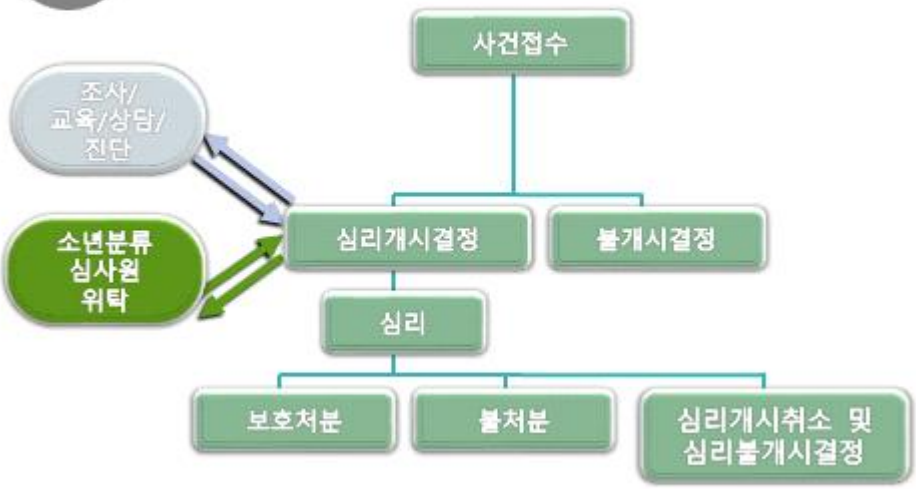

서울가정법원

03 심리절차에서의 아동의견청취 방법

- 처분전 교육
- 조사관 조사
  - 아동의 나이가 어리거나 심리적, 정서적 문제가 있는 경우
  - 화해권고, 청소년참여법정
- 전문가 진단/전문가 심리상담
- 보호관찰소 결정전 조사
- 비행예방센터(꿈키움센터) 상담조사
- 소년분류심사원 가위탁 조사 및 교육
  -사안이 중한 경우 또는 잦은 가출로 보호의 필요가 있는 경우
- 법정 진술권

서울가정법원

04 소년분류심사원

서울가정법원

04 소년분류심사원

서울가정법원

04 소년분류심사원

서울가정법원

05 소년분류심사원 가위탁의 문제점

- 열악한 시설
- 상시적 과밀 문제
- 분리수용의 어려움
  - 성별, 나이에 따라 시설 내 분리 수용
  - 초범/재범, 가위탁 경험 유무에 따른 분리 수용 필요함

서울가정법원

Ⅲ. 보호소년 시설 처우의 문제점

서울가정법원

01 보호처분의 종류

사회내처우	1호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는 사람에게 감호 위탁
	2,3호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4,5호	보호관찰 (단기 1년/장기 2년)
시설내처우	6호	아동복지법 상의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7호	치료 위탁(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상의 소년의료 보호시설에 위탁)
	8-10호	소년원 송치(1개월/단기 6월/ 장기 2년)

서울가정법원

02 6호 소년보호시설

02 6호 소년보호시설

02 6호 소년보호시설

02 6호 소년보호시설

02 6호 소년보호시설

02 6호 소년보호시설

03 6호 소년보호시설의 문제점

- 한정된 인원, 시설 부족
  - 전국 7개 뿐
-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미흡
  - A 보호시설 : 재정지원 중단으로 폐쇄 위기
  - B 보호시설 : 생계비 지원 감축
    부모가 양육 거부한다는 증명 제출 요구
- 퇴소 후 전학 종용의 문제

서울가정법원

04 소년원

서울가정법원

04 소년원

04 소년원

04 소년원

서울가정법원

04 소년원

서울가정법원

05 보호소년 처우의 문제점

- 상당수가 아동학대, 가정폭력 등 경험자
- 열악한 보호소년처우
  - 상주하는 정신과 의사가 없는 의료소년원
  - 광열비 포함 하루 5000원의 열악한 식사
- 과밀 문제
- 여자 장기소년원은 전국 단 한 곳
  - 면회의 어려움
- 귀주환경 불량으로 가석방 심사에서도 제외되는 아이들

서울가정법원

IV. 여론 - 복지시설 아동과 통고제도

서울가정법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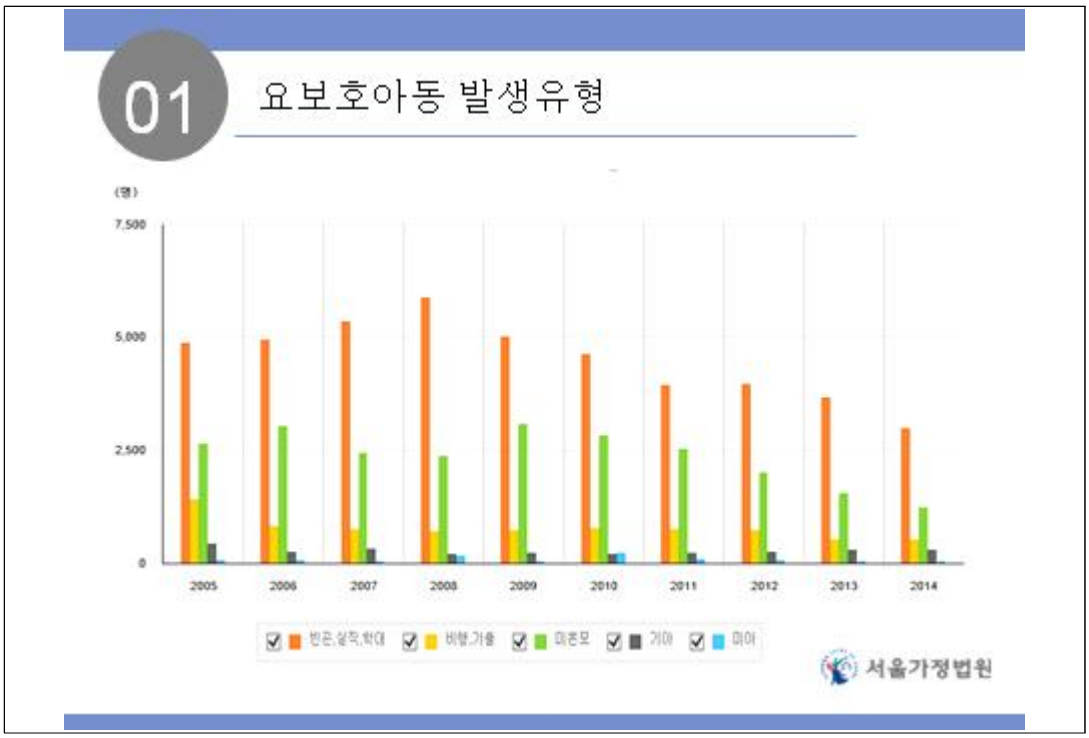
01
요보호아동 발생유형
(명)
7,500
5,000
2,500
0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서울가정법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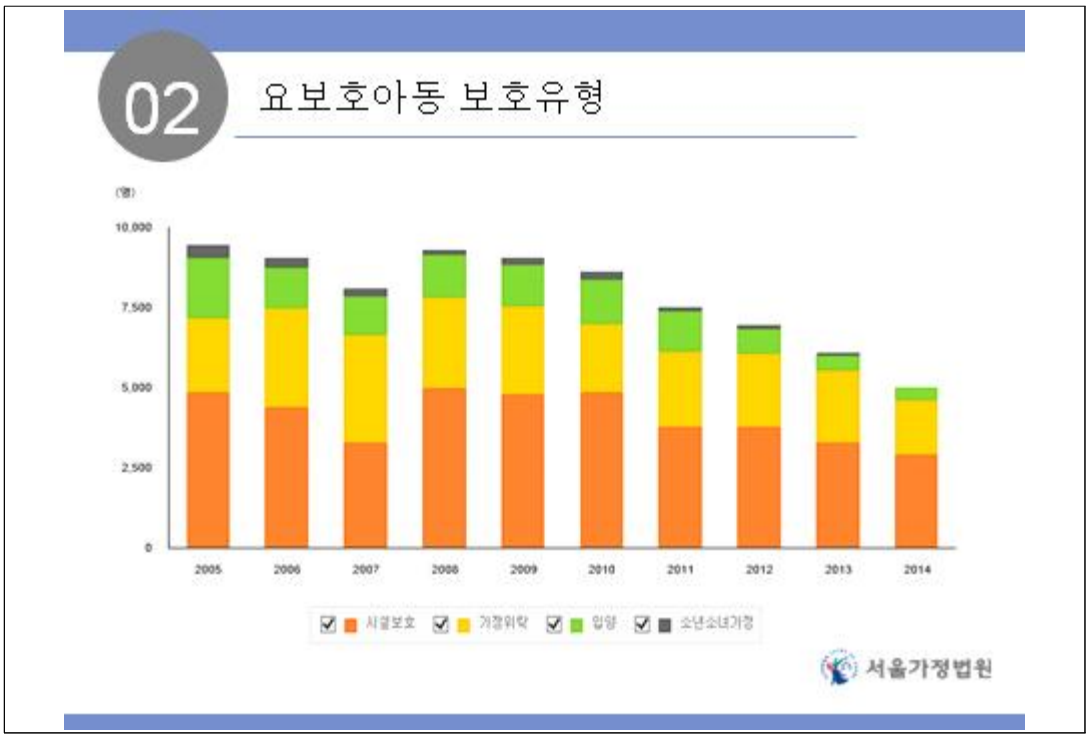
02
요보호아동 보호유형
(명)
10,000
7,500
5,000
2,500
0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서울가정법원

03 시설퇴소아동의 자립 지원

- **시설 아동의 퇴소 시기**
  - 원칙 : 만18세 도달한 경우 (아동복지법)
  - 예외 : 대학 이하의 학교 재학 중이거나 직업훈련 받고 있는 경우
- **퇴소 아동을 위한 자립 지원**
  - 주거지원 : 자립생활관, LH공사 영구임대주택, 전세임대주택 등
  - 경제적 지원 : 자립정착금, 디딤씨앗통장, 기초수급
  - 기타 : 직업교육, 대학 입학 등록금

서울가정법원

04 시설 부적응 아동의 문제

- **시설 부적응 아동에 대한 배려 미흡**
  - 대부분 가정해체, 학대 등의 경험이 있는 아동 : 절도, 시설내 다툼
  - "폭탄돌리기"로 표현되는 잦은 전원조치
  - 또다시 "버려지는" 경험
  - 전원조치에 아동의 의사 반영하도록 원칙화
- **소년법상 통고제도를 통한 보완**
  - 양날의 검
  - 소년보호처분 종결 후 원시설 복귀의 어려움
- **아동복지시설에서 이탈하는 순간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없는 문제**

서울가정법원

05 아동의 복지와 지방자치

- 지방자치단체별 재정 상황에 따라 아동 복지 수준 차이
- 시설아동의 거주 이전의 자유가 실질적으로 제한되고 있는 문제
- 시설 부적응 아동에 대한 배려 부족

서울가정법원

감사합니다

서울가정법원

Ⅴ 제4차 아동권리포럼

제4차 아동권리포럼
2016. 8. 19. 15:00-17:00 페럼타워 2층 중회의실 M1

보건복지부위탁 2016년도 아동인권증진사업
제4차 아동권리포럼

2016. 8.

Ⅰ 제4차 아동권리포럼 개요

□ 제4차 포럼 개요

- 일시: 2016년 8월 19일 금요일 15:00 - 17:00 (2시간)
- 장소: 페럼타워 2층 중회의실 M1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5길 19)
- 주제: 학교에서의 아동참여와 의견청취권 보장 실태

□ 내 용

1. 주제발제

가. 학교에서의 아동참여와 의견청취권

- 발제1 (김동영, 서울문현중학교)
- 발제2 (손수연, 대전외국어고등학교)

나. 학교 내 학생의 참여 및 자치에 관한 현황과 과제

- 발제3 (김민태, 前 경기도교육청 학생인권옹호관)

2. 자문위원 질의응답을 통한 토의

- 발제자 발표를 통한 실태 인식
- 아동의 학교생활과 학교운영 전반에서 아동의 참여권과 의견청취권이 보다 실효적으로 보장될 수 있는 법적·제도적 개선방안 모색

3. 제5차 주제 선정 및 일정 논의(제5차 아동권리포럼 발제자 추천)

Ⅱ-1 학교에서의 아동참여와 의견존중 사례

김 동 영 (서울문현중학교)

⊙ 아동은 학교에 입학한다고 해서 자신의 인권을 잃는 것이 아니다. 그리하여, 교육은 아동 고유의 존엄을 존중하고 협약 제12조 제1항과 같이 아동이 자신의 견해를 자유로이 발표할 수 있게 하며, 학교생활에 참여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아동의 학교생활 참여, 학교 사회와 학생회의 조직, 또래교육과 또래상담 그리고 학교의 교육활동 과정에 아동의 참여 등은 이 권리의 실현을 학습하고 경험하는 과정의 일환으로서 장려되어야 한다(아동권리위원회, 일반논평 No.1, 2001, CRC/GC/2001/1, para.8).

⊙ 협약 제12조부터 제17조에 비추어 대한민국이 법률, 교육부 발행 지침 및 교칙을 수정하여 아동이 의사결정 과정 및 교내와 정치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모든 아동이 교내 등에서 정치활동에 참여하거나 이를 수행하고 학교 운영위원회에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을 포함, 집회와 표현의 자유를 완전히 누릴 수 있도록 촉구할 것(아동권리위원회, 2012, CRC/C/KOR/CO/3-4, para.40-41).

〈관련 법령 및 규정〉

교육기본법
▷ 제5조(교육의 자주성 등) ② 학교운영의 자율성은 존중되며, 교직원·학생·학부모 및 지역주민 등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운영에 참여할 수 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 제9조(학교규칙의 기재사항 등) ④ 학교의 장은 제1항 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학칙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학생, 학부모, 교원의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7조의2(학생의 안전대책 등) 학교의 장이 법 제30조의8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학생의 안전대책 등을 수립할 때에는 학생, 학부모 및 교직원의 의견을 듣고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쳐야 한다. ▷ 제59조의4(의견 수렴 등) ② 국·공립학교에 두는 운영위원회는 학생의 학교생활에 밀접하게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학생 대표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국·공립학교에 두는 운영위원회는 국립학교의 경우에는 학칙으로, 공립학교의 경우에는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 대표가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운영위원회에 제안하게 할 수 있다.

학교규칙 운영매뉴얼 (교육부) ◆ 학칙은 학생들의 참여로 만들어지며, 학생들이 스스로 만든 규정을 준수하고자 노력할 때 자치규범으로서의 본질적인 가치가 실현된다. ◆ 학칙은 학생들이 자신들의 생활과 관련한 여러 문제들에 대해서 자율적으로 해결하고 창조해 가는 학생자치활동의 원천이다.

1. 교육기본법이 정하고 있듯이, 학생은 학교운영에 참여할 권리가 있습니다. 실제로 학생이 학교운영에 참여하고자 하는 의사를 표현하면 참여할 기회가 주어졌나요? 기회가 주어졌다면 학교운영 활동의 자율성은 얼마나 주어졌다고 생각하나요? 이때의 학교운영이란 학교교칙을 정하거나 수정하는 것, 학교가 수련회, 소풍 일정과 같이 아동의 활동과 관련된 계획을 세우는 것 등 모두를 포함합니다.

학생이 학교운영에 참여할 권리는 제한적으로 보장되고 있습니다. 매월 2회 격주로 학급 임원 주도하에 학급자치회의를 실시합니다. 회의에서 제시된 내용은 학급 임원을 통해 매월 1회 열리는 대의원회에서 발표됩니다. 대의원회에서 나온 건의사항들을 학생회가 해결하거나 담당 교사에게 건의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제도에는 몇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첫째, 학급자치회의의 자율성이 부족합니다. 자치회의 주제부터 전 학급이 미리 정해진 공통 주제를 바탕으로 회의를 합니다. (해당 주제는 교사에 의해 정해집니다.) 자치적으로 정하는 주제가 아니다 보니 정작 회의보다는 불편사항 신고가 더 많습니다. 게다가 학생들의 참여도가 저조하다 보니 질문에 대한 답만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회의가 진행되기도 합니다. 지나치게 일반적이어서 현실적인 문제 해결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 의견만 기록되는, 형식적인 회의가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둘째, 대위원회를 통한 문제 해결이 자치적이지 않습니다. 학급자치회의를 통해 얻어낸 회의 결과들을 대의원회에서 보고받고 담당 교사에게 전달하는 것이 일반적인 과정입니다. 문제는 의견을 그저 '전달' 하는 것에 그친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대의원회에서는 학급회의보다 심도 있는 건의사항이 자주 등장하지만, 이것이 실현되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저는 이것이 의견과 해결방안을 단순히 전달하는 선에서 그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이 문제를 직접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기회가 있다면 좀 더 효과적일 것입니다.

셋째, 학생회 활동에도 약간의 제한이 있습니다. 제가 자치법정 담당 부장으로 다른 부장들과 활동했기에 이것을 피부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학생 자치 활동에는 방송부, 자치법정부, 선도부, 교통안전

부, 체육부, 문화예술부 등이 있으며, 해당 부서의 부장이 학생회에 참여하게 됩니다. 학생회는 교내 행사 추진이나 대의원회 건의사항 해결을 합니다.

문제는 학생회의 활동에 약간의 제약이 있다는 점입니다. 대부분의 교내 행사는 담당 선생님들이 기획하시게 됩니다. 물론 행사 시간, 방법, 비용 등 상세한 부분에서는 학생회가 참여합니다. 하지만 결국 큰 틀을 잡는 것과 최종 승인은 담당 선생님이 하시고, 만약 거절하시면 아무리 좋은 기획이라도 반영될 수 없습니다.

일례로 자치법정 과정에서 모의 헌법재판소를 진행하자고 선생님께서 제안하셨던 적이 있었습니다. 선생님께서 화장의 기준을 정해보자고 하시기에, 그럼 두발 단속 기준을 정하는 것은 어떻겠느냐고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자 선생님께서는 해당 분야는 좀 민감하니 그냥 손대지 말자고 하셨습니다. 전혀 불필요한 규정인 투블럭 머리 단속 때문에 피해를 보는 학생들이 많다는 점에서 꼭 논의되어야 할 사항이었지만, 합당한 이유 없이 거절당했습니다.

분명 학생 자치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학생회지만 외부의 압력에 지나치게 무력한 면모가 있습니다.

넷째, 특히 교칙에 대한 학생 의견 반영이 힘듭니다. 저희 학교에서는 수련회, 교칙 변경 등 중대한 사안에 한해서 학교단위 설문조사를 실시합니다. 1년 전쯤 벌점 제도에 있어서 몇 가지 교칙 수정이 있었는데, 학교측에서는 변경사항에 대한 찬반투표를 진행했습니다. 이러한 운영 방식에도 문제점이 있습니다.

결국 학생들이 교칙을 '수정'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학생들이 가장 큰 불만을 품는 부분이 교칙입니다. 물론 학생의 잘못이 있는 경우도 있지만, 과한 두발제한과 같이 인권을 침해하는 교칙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일례로 투블럭 머리는 두상이 특이한 학생들에게 있어서 단정한 머리를 유지시키는데 도움을 주기도 합니다. 이런 머리 모양이 합당한 근거 없이 교칙으로 제한되자, 몇몇 학생들이 이것을 없애달라고 건의했습니다. 그러나 건의의 결과물은 2달간 경고조치 이후의 벌점 부여. 결국 학생들이 불합리한 규칙을 고치지는 못했습니다.

선택의 폭이 제한적인 설문조사를 하고나서 동의했으니 따르라는 것은 불합리한 것입니다. 학생 스스로가 교칙을 고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2. 교육부가 배포한 학교규칙 운영매뉴얼에서도 알 수 있듯이, 학생자치활동은 학생의 기본권 중 하나입니다. 동아리를 설립하거나 교외활동을 하고자 할 때, 학생자치활동의 자율성이 얼마나 보장된다고 생각하나요?

동아리 설립이나 교외 활동에 있어서는 자율성이 잘 보장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학생이 원하는 동아리를 설립하는데 큰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며, 담당 교사가 배치되어 원활한 동아리 활동이 진행되도록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물론 중학교 사정상 전폭적인 지원을 해주지는 못하지만, 적어도 학생이 자치적으로 하는 동아리 활동을 막지는 않습니다.

3. 그밖에 학교에서의 활동에 있어 학생참여와 의견청취권이 보장되고 있다고 실감한 경험이 있거나, 제한받는다고 느낀 경험이 있다면 설명 부탁드립니다.

앞서 언급한 문제점이 있긴 하지만 학교에서 학생회를 조직해주고 지원금까지 배정하는 모습을 보며 최소한의 학생참여가 보장됨을 느꼈습니다. 저희 학교 학생회에서는 자체적으로 학교 홍보 UCC를 제작하기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학생 주도로 구기대회도 개최했고, 방송부에서의 라디오도 개설되었습니다. 다양한 학생 자치 활동들이 늘어가는 모습에서 자신감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다만 여전히 계획의 중심에는 선생님들이 있다는 점, 선생님의 의도에 따라 방향이 틀어지기도 한다는 점, 교칙 수정은 사실상 금기나 다름없다는 점이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II-2	학교에서의 아동참여와 의견존중 사례

손 수 연 (대전외국어고등학교)

- 목 차 -

1. 서론: 학교의 주인은 누구인가
2. 학교운영에서의 아동참여와 의견존중 경험
   가. 학교운영위원회
   나. 학생자치활동
      1) 학생회
      2) 동아리 활동
   다. 교외체험활동
      1) 수학여행
      2) 현장체험학습
      3) 그 밖의 교외활동(동아리, 대회, 사회참여 활동)
   라. 학교행사 운영
      1) 체육대회
      2) 예술제
   마. 보충수업 운영
   바. 학교급식
   사. 기숙사 운영
   아. 학생 징계절차
3. 다른 학교의 사례
   가. 설문조사 개요
   나. 질문내용
   다. 설문조사 결과
   라. 시사점
4. 학생참여와 의견존중의 권리가 보장되기 위하여 필요한 점
   가. 학교운영에서 고려되어야 할 판단 기준: 대학입시가 아닌 아동최상의 원칙
   나. 학생주체에 대한 성인의 인식: 보호대상보다는 자발적·능동적 존재로
   다. 아동 당사자의 아동권리 인식: 아동이 행복한 세상의 시작
   라. ‘참여’에 대한 교육
5. 결론

1. 서론 : 학교의 주인은 누구인가

‘교육은 반드시 모든 아동의 필수적인 삶의 기술에 대한 학습에 대한 보장 및 어떠한 아동도 삶에서 마주칠 것으로 예상되는 도전에 대한 준비를 갖추지 못한 채 학교를 떠나지 않도록 보장할 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36]

여태껏 교육을 이렇게 넓은 범주에서 생각해 보지 않았기에, 내가 그러한 교육을 받아왔다고, 받고 있다고 느끼기 어려웠기에 위 내용은 ‘내가 받았던 교육이 과연 이러한 목표를 갖고 실행되었던 것인가’하는 쉽게 잊혀 지지 않을 물음을 던져주었습니다. 아동이 행복한 세상이 더 나은, 더 따뜻한 세상의 시작이라고 믿고 있는 저로서는 그러한 사회를 만드는데 있어 교육은 필수적 요소라고 생각했기에 위 내용은 제게 적지 않은 충격을 주었습니다.

교육이 학교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직간접적인 교육은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대부분이 8살이라는 어린나이, 혹은 그 이전부터 성인이 되기 전까지의 대부분의 시간을 학교에서 보내기 때문입니다.

‘아동의견 존중과 참여’에 대한 발제요청을 받고 아래의 내용을 쓰기 위한 수많은 고민의 과정 속에서, 저는 아동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행복한 학교생활이 선행될 필요가 있음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과연 행복한 학교생활이란 무엇인가, 어떻게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것인가’라는 물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위 물음에 답하기 위해서는 우선 제가 하루의 대부분을 보내는 곳인 학교 내의 상황을 제대로 아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에 본 포럼의 주제인 ‘아동의 참여권과 의견이 존중될 권리’가 우리 학교에서는 얼마나 잘 보장되고 있는지부터 고민해 보았습니다.

2. 학교운영에서의 아동참여와 의견존중 경험

가. 학교운영위원회

교육부의 「학교 운영위원회의 이해 리플릿」에 따르면 학교운영위원회란 학부모·교원·지역사회 인사가 함께 학교 운영에 대한 중요한 사항을 논의하는 단위학교 차원의 교육 자치 기구를 의미하며, 학교 내외의 구성원이 함께하는 학교 공동체, 학교운영의 중요사항을 심의·자문하는 자치기구의 성격을 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단위 학교의 자율성과 책무성을 강화하고 학생·교원·지역사회 등의 다양한 요구와 의견을 반영하며 수요자 중심의 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도입되었다고 합니다.(2015.12.23.)

그러나 학교운영위원회에 학생의 참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학교 운영위원회가 정확히 어떤 일을 하는지, 어떤 사항을 논의하며 그 논의사항에 대한 결과는 어떤지, 그 결과가 학생들

36) 유엔 아동권리 위원회 일반논평, 교육의 목적 중.

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잘 알지 못합니다.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위원, 운영위원회의에 대한 정보는 학교홈페이지에 기재되어 있지만 아무도 학교운영위원회의 정보가 공개되어있으니 찾아볼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교육이란 '교육의 수요자인 학생의 잠재력과 가능성, 성장배경과 전망, 예상되는 삶의 세계에 비추어 제공되는 교육'을 의미합니다. **학교운영위원회가 수요자 중심의 교육을 목적으로 한다면 그 구성원에 학생대표가 의무적으로 소속되어 회의 진행과정과 내용을 알고, 학생들의 의견을 대변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나. 학생자치활동

1) 학생회

: 시설 개선

2016학년도 학생회의 공약 이행사항 중 하나로서, 학생들이 불편사항이나 건의사항을 수시로, 자유롭게 기록할 수 있도록 한 게시물이 각 층의 게시판에 부착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학생회는 보다 더 많은 학생들의 건의사항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이를 살펴보면 학교 시설에 대한 건의가 주를 이루는데 건의가 받아들여져 시설이 고쳐지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시설이 고쳐지지 않는 경우 학생들은 그 이유를 알기 어려우며 개선되지 않는 상황에 대해서 건의를 끊임없이 계속하거나 하릴없이 기다리는 방법을 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학생들이 하루의 대부분을 생활하는 곳이 바로 학교입니다. 시설개선을 위한 학교의 노력은 감사하지만 **학교 사정상 개선이 어려운 경우에는 학생들이 그 이유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하고 건의 사항이 최대한 수렴될 수 있도록 해결방법을 논의하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학생회 회의

학생회는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학생 대표로서 선생님들께 학생들의 의견을 전달하며, 학교의 방향을 함께 제시해 나가는 역할을 합니다.

학생회 회의는 한 달에 한 번 이상 전 학년, 전 학급의 반장·부반장, 각 학년의 학년장, 학생회 회장과 부회장, 생활인성부 교사가 한 자리에 모여 학생의 학교에 대한 건의사항, 학교의 학생에 대한 주요 안내 사항, 행사 기획, 교칙 제정·수정 등 학교 전반의 크고 작은 일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곳입니다. 그렇다고 학생회가 각반, 각 학년의 대표들끼리만 이야기하는 곳은 아닙니다. 전교 임원단과 학교가 상의하여 어떠한 의제를 제시하면 그 의제에 대한 안내를 들은 각반 임원들은 이를 학급원들에게 전달합니다. 그 후, 학급자치활동시간에 회의를 진행하여 의제에 대한 학급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정리하여 이후 개최되는 학생회 회의시간에 각 반을 대표하여 학급의 의견을 이야기합니다. 즉 학생회는 가능한 많은 학생들의 의견을 듣고 반영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이지요.

하지만 학생회에서 상정되고 논의된 안건들이 어른들과 이야기 되었을 때는 학생들의 기대와 다른

상황에 놓이는 경우를 종종 보았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교칙 개정에 관한 것입니다. 교칙 개정에 관련된 내용은 민감하고 중요한 사안인 만큼 우선적으로 전교생의 의견을 수렴합니다. 이후 학생회와 전교임원단은 거듭된 회의를 통해 도출된 최종 안건을 학교에 전달합니다. 그러나 선생님 한 개인의 판단으로 인정받지 못하거나, 학부모 한 명의 의견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일례로 저희 학교 두발규정 완화에 대한 것을 들 수 있는데, 학생회의 거듭된 회의와 교사측과의 합의 후 교칙 개정에 대한 가정통신문을 배부하여 학부모님들의 찬성여부와 그 외의 다른 의견에 대해 여쭌 적이 있었습니다. 한 학부모님께서 이 개정사안에 대해 반대하며 차라리 머리규정을 이렇게 하는게 어떻겠냐고 제안하셨고, 그분의 의견대로 교칙이 개정되었습니다. 물론 학부모의 동의를 구하는 것은 교칙 개정에 있어 필수적인 것이나 750명의 학생들의 의견이 어른 한명의 의견으로 인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을 보며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존중하겠다는 이유로 구성한 학생회를 진정으로 이해하고 존중하고 있는 것인가' 라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2) 동아리 활동

저희 학교에는 약 100개 이상의 동아리가 개설되어 있습니다. 동아리의 수만큼 그 분야역시 다양하고 중요성이 높으며 학생의 참여 역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동아리의 모든 활동은 학생들 스스로 자치적으로 기획하고, 구성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동아리 활동에 있어 학생 참여와 의견 존중은 매우 잘 실현되고 있습니다.**

동아리는 일반적으로 비슷한 진로, 관심분야, 흥미를 갖고 있는 학생들 10명에서 20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들이 원하는 활동을 학생 스스로의 회의와 여러 과정을 통해 계획하고 실행하는 공동체 집단입니다. 동아리를 구성할 때 동아리 부장, 차장, 지도교사 선생님, 활동장소(교내 교실)가 필수적으로 정해져야하며 위의 사항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할 시 동아리는 개설 될 수 없습니다. 학생들은 동아리 부장, 차장, 부원, 활동분야·목표·주요 활동내용·활동장소 및 지도교사의 사인으로 구성된 동아리 신청서를 학교에 제출하고 이 기획서가 학교의 승인을 받으면 비로소 동아리가 개설됩니다. 앞서 말한 동아리 구성과정의 모든 활동은 교사의 특별한 도움 없이 학생들 스스로가 직접 진행해 나갑니다. 동아리가 구성 된 이후에도 동아리의 모든 활동은 학생들 스스로가 기획하고 실행하며 이 과정에서 어른의 도움, 즉 교사의 역할이 필요한 특별한 경우에만 지도교사의 도움을 받습니다.

동아리를 구성할 때 동아리 담당선생님도 함께 정해져야 하는데 이 경우 동아리의 특성 혹은 각 동아리의 상황에 맞는 선생님을 학생들이 직접 찾아다니며 허락을 구하는 과정을 통해 동아리 지도 교사가 정해집니다. 동아리 지도교사는 학교 행정절차 해결, 더 나은 방향 또는 더 안전히 활동할 수 있는 방법 제시, 문제 상황 해결, 생활 기록부 작성과 같이 교사의 역할이 필요한 경우 혹은 학생들이 도움을 청하는 경우에 적절한 도움을 주시는 역할을 합니다.

동아리의 자율성이 가장 부각되는 일례로 지난 7월 처음으로 개최된 '동아리 진로체험의 날' 행사를 들 수 있습니다. '동아리 진로체험의 날'행사란 바쁜 학교생활 속, 진로 탐색과 진로 계획 수립·수정의 기회를 마련하기 어려운 학생들이 더 큰 꿈을 꾸고 자신의 진로분야에 대해 더욱 알아갈 수 있도록 기획된 행사입니다. 비슷한 흥미 또는 진로분야를 갖고 있는 친구들이 모인 집단이 바로 동아리이기

때문에 동아리 단위로 행사가 진행되었으며, 동아리 특성에 맞는, 부원들의 관심 진로분야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을 만나거나 관련 정보를 얻고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는 곳을 방문하는 식으로 기획되었습니다. 학교 예산을 사용해야 하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과정은 동아리 내에서 자체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연사 섭외, 방문 장소 선정, 허가 받기, 예산 사용 계획서 작성 등 행사에 필요한 모든 일들을 동아리 학생들 스스로가 기획하고 진행한 것입니다.

동아리 활동 외에도 학생들 스스로 모임을 구성하여 어떠한 캠페인이나 인식개선활동, 홍보활동을 할 때도 교내 생활인성부의 허가만 있다면 자유로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 교외체험활동

1) 수학여행

저희 학교의 수학여행은 각 전공어과[37]의 특색을 살려 과별로 기획하는 테마 학습으로 진행됩니다. 작년의 경우를 예로 들면 프랑스어과는 '서울에서 만나는 프랑스'를 테마로 서울소재의 프랑스 학교 방문, 서울대학교 불어교육과 교수 특강, 국립 현대미술관 방문을 주요 일정으로 수학여행을 기획했다면, 스페인어과는 스페인어를 사용하는 남미국가 대사관 방문, 러시아어과는 한국에서 만나는 러시아 역사를 주제로 덕수궁을 방문 하는 등 각 과의 특색에 맞는 활동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수학여행 일정은 학생과 담임교사, 각 전공어과 교사와의 합의로 이루어지는데 담임교사와 전공어과 교사, 학생 모두 그들의 의견을 자유롭게 제안할 수 있으며 소통을 거듭하여 더 많은 사람이 원하는, 만족할 수 있는 방향으로 활동이 기획됩니다.

2) 현장체험학습(이하 '소풍'이라고 칭하겠습니다.)

소풍 역시 각 반마다 하나의 테마를 선정하여 기획합니다. 예를 들면 대전속의 자연만나기를 테마로 대청댐에 방문하는 학급, 근처 계곡이나 공원을 방문하는 학급이 있는가 하면, 체험 활동장을 방문하여 다양한 체험활동을 하는 학급도 있습니다. 소풍은 수학여행보다 학생들의 의견반영과 참여가 자유롭습니다. 학생들 스스로 수차례의 학급회의를 걸쳐 소풍장소 선정(소풍장소는 대전 내에 위치해야 합니다.)부터 식사 장소, 이동방법, 소풍에서 진행할 활동까지 소풍의 모든 내용을 기획하고 준비하기 때문입니다.

3) 그 밖의 교외 활동(동아리, 대회, 사회참여 활동)

교외 활동 시 어디까지가 자유·존중이고 방임인지 또 어디까지가 안전이고 통제인지 모호한 경우가 있습니다. 학생의 안전을 위한다는 이유가 때로는 학생활동을 제한하는 구실이 될 때가 있다고 느낍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 안전이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된 것은 사실이고 이는 학생들도 매우 잘 알고

37) 외국어 고등학교라는 특수한 학교특성상 학생들은 자신이 배우고자 하는 언어의 과에 속해있습니다. 저희 학교에는 영어, 독일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중국어, 일본어, 러시아어 7개의 학과가 개설되어 있습니다.

있고 이해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과연 정말 학생들의 안전을 걱정하여 내린 결정인지 학교를 위한 결정인지 혼란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일례로 저희학교 외교동아리의 수요 집회 불참을 들 수 있습니다. 수요집회란 '일본군 위안부'의 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집회입니다. 공식 명칭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이며 주한 일본 대사관 앞에서 매주 수요일에 열립니다. 이 수요 집회에 참여하기 위해 학교의 동의를 얻는 과정에서 정치적 활동은 자제하라는 학교의 결정에 그들은 결국 수요집회에 참여 할 수 없었습니다. 동아리 활동으로서 그저 '일본군 위안부'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위했던 순수한 마음이 '정치적'이라는 이유로 무산되었던 것이지요.

라. 학교행사 운영

1) 체육대회

학교의 가장 큰 행사인 체육대회와 축제의 준비과정과 운영에 있어 학생들의 의견은 매우 잘 반영되고 있습니다. 체육교사와 자원한 학생들이 모여 구성된 학생 기획단은 매일 점심시간 체육대회의 전 과정에 대해 교사와 회의를 진행합니다. 기획단은 학생 대표로서 학생들의 요구사항을 수렴하여 교사에게 전달하고 회의를 통해 학생들의 불편사항을 최대한 해결하고 요구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이를 통해 학생과 교사의 요구사항이 서로에게 잘 전달될 수 있었으며 교사와 학생들 간에 오해 없이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졌고 그 덕분에 더 많은 사람들이 만족하고 즐거워했던 체육대회가 기획되었습니다.

2) 예술제

예술제 역시 각 반의 반장, 학년장, 전교 임원단으로 구성된 기획단이 있는데 예술제의 경우 기획단 내에서도 기획 총괄부, 전공어 연극부, 개인 공연부, 방송부, 봉사부 등으로 나뉘어 학생들의 요구사항을 최대한 수렴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축제 사회자 오디션, 공연오디션 모두 학생들이 기획하고 추진하며, 이 과정에서 학생간의 마찰과 불편사항은 최소화하고 모두에게 공평한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즉 학생이 학생 스스로를 위해 그 누구도 피해 받지 않는 행복한 축제를 기획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축제기획단 각 부서에서 어떤 일을 어떻게 진행하는지에 대한 구체적 안내가 부족하여 학생들이 상세한 과정을 알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마. 보충수업 운영

보충수업이란 학교 공식 수업 외에 학생들의 학력증진을 위해 방과 후에 따로 개설되는 수업입니다. 학기 중에는 정규교과가 끝난 이후인 8,9교시에, 방학 중에는 약 2주에서 3주간 보충수업이 진행됩니다. 전공어 교과의 시수가 매우 많은 저희 학교의 특성상 보충수업에는 수능을 위해 국·영·수 교과 위

주로 시간표가 편성되는데 이 과정에서 학생들의 의견은 전혀 반영되지 않습니다. 학생들 각자 자신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부분, 자신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다를 것인데, 모두가 학교가 정한 시간표 아래 같은 수업을 듣는 것은 학생과 교사 서로에게 유익하지도 효율적이지도 않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반대로 대학교의 수강신청 방법과 비슷한 방법으로 학교가 개설한 사이트를 통해 자신이 부족한 과목, 필요한 부분의 수업을 신청하여 그 수업의 시간표에 맞게 교실을 이동하며 수업을 듣는 방식이 고등학교 내에서도 점점 보편화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어과목에 대해 학생 스스로 수강할 수업을 신청하는 경우, 화법과 작문, 고전 문학, 현대 문학, 문법 등 다양한 분야로 세분화되어 있는 국어수업 중에서 학생 스스로 자신에게 필요한 수업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반면 학교의 일괄적인 계획 아래 시행되는 보충수업에서는 국어과목이 국어1, 국어2, 국어3, 국어4로 나뉘어 국어 1,2 선생님은 문법을, 국어 3선생님은 문학을, 국어 4선생님은 화법과 작문과 비문학을 수업하는 방식으로 수업이 진행됩니다. 이 경우에는 학생 스스로 과목을 선택하고 계획할 수 있는 기회 자체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물론 학생에게 불필요하고 유의미하지 않은 수업은 없겠지만 수능이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의 효율을 최대로 해야 하는 상황에서 모든 과목의 모든 영역을 다 듣는 것은 학생이 수업에 집중하기도 어려울뿐더러 수업의 질과 만족감을 낮추는 원인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학생과 교사 모두에게 좋은 방법이라고 사료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일괄적인 보충수업 방식 하에서는 때때로 자신의 계획대로 방학을 보내기 위해 보충수업에 참여하려하지 않는 학생과 담임교사 사이에 갈등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학생이 원하는 과목을 선택해서 들을 수 있도록 하거나 그것이 어렵다면 학생들이 원하는 수업이 개설될 수 있도록 학교와 학생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바. 학교급식

학교에서는 학생의 학교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다양한 설문조사를 시행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급식 만족도 조사인데 매번 조사를 할 때마다 설문조사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그 결과가 실제로 우리가 집밥보다 자주 먹는 학교 급식에 어떻게 반영되었고 반영되고 있는지는 학생에게 공개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최근 학생 회장단, 교장선생님, 영양사 선생님, 보건선생님으로 구성된 급식 검수 위원회를 개최하여 급식과 관련한 학생들의 의견을 직접 제시하고 듣는 장이 마련되었습니다. 학생대표가 학생들의 의견을 제시하면 보건선생님과 영양사 선생님께서 그에 대한 생각을 말씀하시고, 교장 선생님께서는 피드백을 하시는 역할로 회의가 진행되었으며, 회의 후 학생 회장단과 교장 선생님과의 일대일 면담 시간을 가져 학생들의 건의사항을 직접 전달하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하지만 **학교에서 진행하는 설문조사에 대하여 왜 이 설문조사를 하는지, 이 결과가 어디에 어떻게 활용될지 학생들은 알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학생들의 학교생활 질 향상을 위해 진행한 설문조사라면 학생 스스로가 그 결과를 아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 기숙사 운영

저희 학교는 대전광역시뿐만 아니라 광주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와 같이 외고가 개설되어있지 않은 지역에서도 지원 가능한 학교입니다. 따라서 타시도, 대전내의 원거리 지역에 사는 학생들을 위해 기숙사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기숙사는 성적이 아닌 원거리 순으로 배정되며 전 교생의 약 1/3이 기숙사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기숙사는 많은 사람들이 함께 생활하는 곳이니만큼 서로에 대한 배려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당연한 사실이지만 그로 인해 개인의 자유 행사범위가 크게 제한되어 있습니다. 개인의 자유가 타인, 공동체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도록 해야 하고 개인의 자유역시 크게 침해되어서는 안 되는 것인데 기숙사라는 공간 내에서는 그 범위와 경계가 모호합니다. 이것이 때로는 학생들의 불편사항이 수렴되지 않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또 한 개인의 잘못으로 전체가 피해를 보기도 하는데[38], 과연 이것이 학생 스스로 자신의 잘못을 깨우치게 하고 다른 학생이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게 하는데 있어 올바르고 교육적인 방법인지에 대해서 이러한 방법을 시행하셨던 어른들께 묻고 싶습니다.

기숙사 역시 학생회처럼 각 층의 층장이 자신이 속한 층의 불편사항을 수렴하여 기숙사 선생님과 모든 층의 층장이 모인 회의 자리에서 학생들의 요구사항을 전달합니다. 층장 회의 내용과 그 결과는 층장이 정리하여 모두가 볼 수 있는 공간(자습실 문 앞)에 게재합니다. 그러나 재정적·행정적 원인으로 인해 학생들의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지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층장회의 외에도 주기적으로 호실간담회를 개최하여 각 층 담당 선생님과 5~6개의 호실의 친구들이 (2인 1실 사용) 한자리에 모여 자신들의 불편사항이나 건의사항에 대해 층장이라는 중간 매개자를 두지 않고 직접 이야기를 나누는 장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학생들의 의견이 선생님께 직접 전달되고 그간의 기숙사 운영에 대한 궁금점을 바로 해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숙사생들의 학업 분위기 조성과 생활 편의를 위한 학교의 노력은 정말 감사하지만 학교의 노력을 기숙사생들이 체감하기 어렵다는 것이 기숙사 생활에 있어 가장 아쉬운 부분입니다.

아. 학생 징계절차

학생자치법정이란 학습태도·복장 불량 등 경미한 교칙을 위반하여 벌점이 누적된 경우, 학생들이 자체적으로 판사, 검사, 변호사를 맡아 재판부를 구성하여 실제 법정처럼 교내에서 법정을 열어 토론, 변호, 판결을 통해 교칙을 위반한 학생을 재판하여 갈등과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법교육 프로그램입니다.

저희 학교 역시 학생자치법정이 구성되어 징계절차에서 자치법정소속 학생이 타학생의 징계 정도에 대해 판단을 내릴 수 있는데 이에 대해 학생과 교사 모두 서로 다른 견해를 보입니다. 학생 자치법정은 학생 스스로가 잘못을 고쳐가는 훈련의 기회가 될 수 있고, 같은 학생으로서 교사보다 학생을 더

38) 컵라면이 기숙사 벌레 출몰의 주요 원인으로 취급되어 컵라면을 금지합니다. 그러나 한 학생이 컵라면을 먹었다는 이유로 그 층의 정수기를 없애버렸습니다.

잘 이해할 수 있어 징계 처분이 더 합리적일 수 있다는 견해가 있는 반면, 아무리 철저한 선발절차와 교육 하에 구성된 자치 법정이라 해도 같은 학생이 타 학생의 징계에 대한 판단을 내린다는 것이 과연 얼마나 적절하고 공정하며 합리적인가에 대해 의문을 갖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학생들이 자신의 잘못을 이전의 딱딱하고 강압적인 방법이 아닌, 학생 스스로가 고안해낸 조금은 신선하고 이전보다 효과적인 방법으로 개선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은 분명한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3. 다른 학교의 사례

발제문을 작성하는데 있어 저희 학교의 이야기와 함께 다양한 학교의 보다 더 많은 학생들의 의견을 함께 담아내고자 설문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가. 설문조사 개요

- 설문 기간 : 8월 11일~8월 13일
- 설문 대상 : 전국의 고등학생
- 설문 응답자 : 전국 51개 고등학교의 고등학생 219명, 9개 중학교의 중학생 9명, 2개 대학교의 대학생 2명, 총 230명 (전체 응답자는 232명이나 현재 학교생활을 하고 있다고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의 2명을 제외하였습니다.)
- 설문 목적 : 고등학생들이 느끼는 학교 내의 아동 참여·의견존중의 정도,
  아동의 의견존중과 참여권이 보장·침해받고 있는 사례 파악

설문 방법 : 객관식 질문, 단답형 질문, 장문형 질문, 직선단계형 질문 활용.
인터넷을 활용하여 설문조사 진행
'Google docs'를 활용하여 제작한 설문지 링크를 SNS에 게시.
카카오톡과 페이스북을 통해 타 학교 학생에게 공유.

- 설문조사자 : 손수연
- 설문조사 링크 :
  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fKNU6qJm1xEP8WlA__tAmeSrACwrWbSk-I97TMrX0_kluslw/viewform?c=0&w=1

(본 설문조사는 저와 제 지인을 통해 공유되었기에 설문조사 대상의 대부분이 대전에 위치한 고등학교의 학생임을 알려드립니다.)

나. 질문내용

번호	질문내용	질문형식	비고
1	성별	객관식	2개 보기 중 택1
2	현재 재학중인 학교	단답형	
3	학교 운영과정 내의 학생의견 존중 정도	직선단계형 (1점~5점)	1~5점 중 택1 숫자가 높을수록 의견 존중 정도가 높음을 의미
4	학생들 스스로 자신의 참여권과 자치권을 존중받고자하는 분위기의 형성 정도	직선단계형 (1점~5점)	1점~5점 중 택1 숫자가 높을수록 그러한 분위기가 잘 형성되어 있음을 의미
5	학생이 학교운영에 참여하고자 하는 의사표현 시, 참여기회가 주어지는 정도	직선단계형 (1점~5점)	1점~5점 중 택1 숫자가 높을수록 참여기회가 잘 주어지고 있음을 의미
6	학생 의견 존중과 참여가 가장 잘 이루어지고 있는 학교활동 3가지	객관식	7개 보기 중 3개 선택
7	참여나 의견 청취의 기회가 배제되어있는 경우 학생당사자의 의견이 반영될 필요가 있는 학교활동 3가지	객관식	6번과 같은 보기 활용 7개 보기 중 3개 선택
8	건의사항, 불편사항 전달 방법	객관식	7개 보기 중 택 1
9	학교활동 중, 학생의 참여와 의견 청취권이 보장받고 있다고 느낀 구체적 사례	장문형	자유 응답
10	학교활동 중, 학생의 참여가 제한받는다고 경험한 구체적 사례	장문형	자유 응답

다. 설문조사 결과

번호	결과	비고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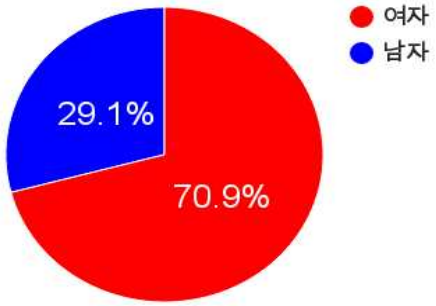	여자 163명 남자 67명

2	중학교 (9개교)	충남여중, 도마중, 성덕여자중, 하안북중, 부산진여중, 용인중, 가양중, 고암중, 연서중	
	고등학교 (51개교)	가오고,광주경영고,광주상일여고,괴정고,노은고,대덕고,대성고,대성여고,대신고,동산고,대전국제통상고,대전고,대전공고,대전여고,대전외고,도담고,동방고,두루고,둔산여고,명문고,명진고,보문고,복수고,서대전고,서대전여고,서울외국인학교,서일고,서일여고,성모여고,세종고,송원여고,우송고,유성고,유성생명과학고,전민고,전남여상,조선대학교여자고,종촌고,중앙고,제일고,청석고,충남고,충남여고,태장고,충남기계공고,한밭고,한빛고,해원고,호수돈여고,황간고	
	대학교(2개교)	중앙대학교, 미국대학교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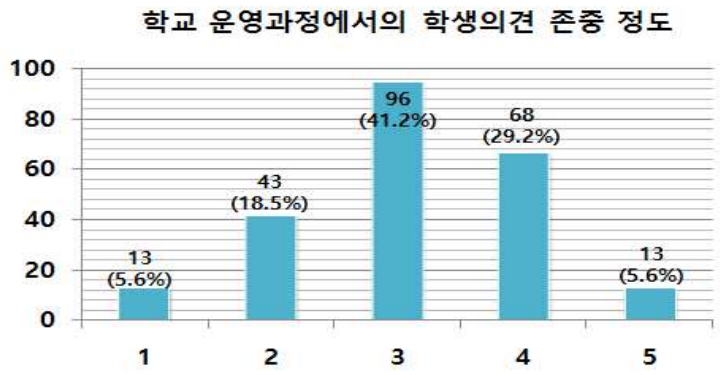		평균 : 3.10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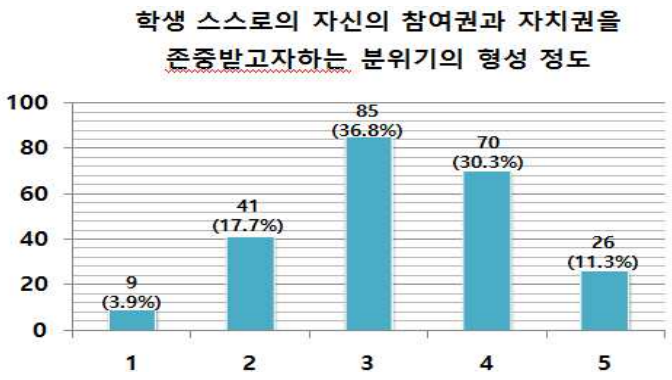		평균 : 3.27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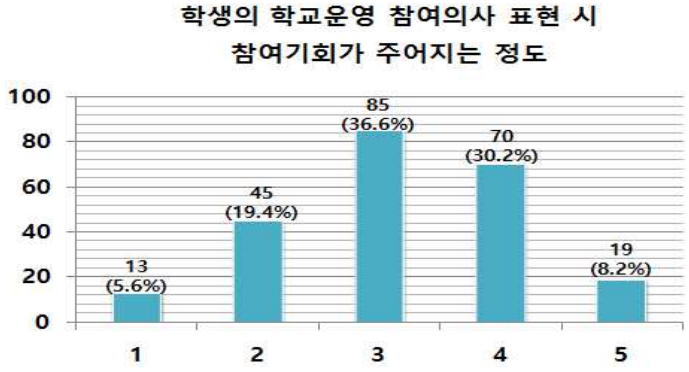		평균 : 3.17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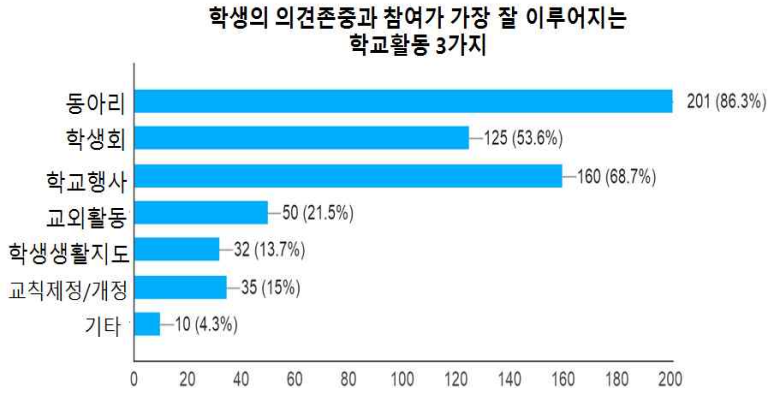	3가지 선택 1.동아리 2.학교행사 3.학생회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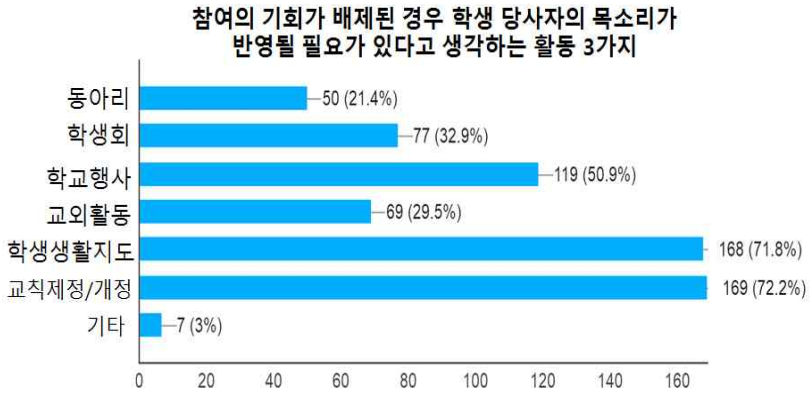	1. 교칙 제·개정 2.학생생활지도 3.학교행사
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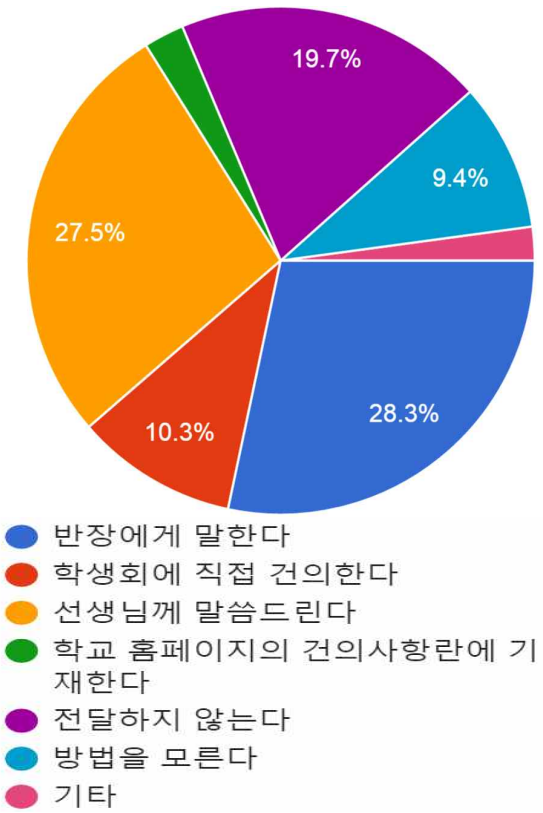	1.반장에게 전달 2.선생님께 말씀 3.전달하지 않음 4.학생회 건의 5.방법을 모름
9	31명 중 15명 : 학교생활에서 학생참여와 의견청취권이	232명 중 31명

	보장되고 있다고 느낀 적 없다고 응답.		응답
	아래는 나머지 16개의 응답을 일정한 기준으로 묶어 나열한 것입니다.		
	교칙 제정 및 개정	▸학생의 의견반영과 참여가 자유로움(두발 자유화, 생활복)	
	급식	▸설문조사와 교사회의를 통해 학생들의 급식에 대한 불만 해소. ▸반찬 선호도를 조사하여 급식의 질 개선	
	학생회	▸학생회를 통해 전달된 학생 건의사항이 학교에 잘 받아들여짐. ▸민주적으로 학생회 회의가 진행됨. ▸학생들이 추진하고자 하는 활동들이 실제로 추진됨.	
	학교 행사	▸학교 축제에서 학생참여가 자유롭게 이뤄짐. ▸학생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가능함. ▸학생들의 요구를 반영한 행사를 진행함.(야영, 비전 그리기 대회, 보물찾기 등). ▸학교행사를 기획하기 전 학생들의 의견을 먼저물음	
	학교 시설	▸에어컨을 틀어달라는 요구가 잘 반영됨	
10	39명 중 8명 : 학교활동 중 학생의 참여가 제한된다고 느낀 적이 없다고 응답		232명 중 39명 응답
	아래는 나머지 31개의 응답을 일정한 기준으로 묶어 나열한 것 입니다.		
	성적	▸성적 관련하여 제한 받는 것이 유일함. ▸교외활동을 성적이 좋은 학생들에게만 안내하여 보통의 학생들은 교외 대회소식을 알지 못함	
	교칙 제정 및 개정	▸두발규정 완화 혹은 두발 자유화에 대해 학생들의 건의가 아주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특정한 학부모 혹은 교사의 의견만 따라 교칙이 제정됨. ▸교칙 개정(특히 교복과 두발에 관하여)에 대하여 학생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고 교사의 의견을 중심으로 이루어짐. ▸엄격한 교칙으로 인해 등하교시 체육복 착용 불가. ▸교장선생님께서 일방적으로 교칙을 정하고 학생들에게 통보함. ▸<u>교칙제정에 있어 학생의 참여권이 보장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이 설문조사를 통해 처음 알게 됨.</u> ▸교칙에 대한 건의는 가능하지만 건의사항이 수렴되지는 않음. ▸교칙은 곧 학교의 전통이라고 여겨져 학생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음.	

	학교 행사	▸체육대회, 축제기획에서 학생들의 의견이 잘 반영되지 않음. ▸축제에서 학생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없애버림.	
	학교 운영	▸학교의 대내외적 이미지가 중요하여 학교생활에 제한을 받음. ▸<u>건의를 하여도 수렴되는 경우가 거의 없으며 반대이유가 많아 건의하는 것이 소용없다고 느낌.</u> ▸<u>모든 것을 학교 마음대로 진행한다고 느껴 건의를 하지 않음.</u> ▸학생의 의견보다 학부모의 의견이 더 잘 반영됨. 학생들의 요구사항 중 반영되는 것은 교과서적인 것뿐이며, 참신한 의견들은 잘 반영되지 않음. ▸생활지도에서 학생들의 의견이 아닌 교칙을 바탕으로 한 '학생다움'을 강조함. ▸<u>학생이 주체라고 생각되지 않음. 학생은 그저 정해진 규칙에 맞추는 대상이라고 여겨짐.</u> 학교의 모든 활동과 운영과정에 있어 학생이 참여한다고 해도 그 의견이 받아들여지지는 않음. ▸학교의 전통을 따라야 함. ▸학생의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음. ▸교사의 독단적인 결정으로 동아리 활동이 진행됨.	
	학생회	▸학생회 소속이 아닌 경우 의견을 말할 기회가 적음. ▸학생회 내에서 어떤 이야기가 오고가는지 전혀 알 길이 없음. ▸학생회에서 간부들끼리만 회의를 진행하였는데 선배들의 결정에 따라야하는 경우가 있음. ▸학생회 선발 과정이 공개적이지 않아서 학생회소속 멤버가 누구인지 잘 모름. ▸학생회 소속이 아닌 학생들은 학생회의 결정을 일방적으로 통보 받음,	
	정규수업 외의 과정	▸야간'자율'학습인데 자율성이 보장되지 않음. ▸보충수업과 야간자율학습에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함. ▸특강에서 자습을 없앰.	

라. 시사점

1) 질문 3번 4번을 통해 학생 스스로 그들의 의견과 참여권을 존중받고 싶어하는 만큼 그러한 분위기가 형성됨을 알 수 있습니다.
2) 질문 6,7번의 응답을 종합해 보면, 학생들의 의견이 가장 반영되지 않는 학교 활동에는 학생생활지도, 교칙제정/개정임을 알 수 있습니다. 반면 동아리 활동은 응답자 대부분의 학교에서 학생 의견 존중과 참여가 잘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학교 행사와 학생회는 참여가 잘 이루어진다는 응답의 비율과, 그렇지 않다는 응답의 비율이 유사함을 통해 학교마다의 편차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3) 질문 8번에 대하여 학생들이 자신들의 건의사항을 말하지 않는 경우와 방법을 몰라 전달하지 않는 경우를 합치면 28%에 달합니다. 학생들이 학교 운영이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학생 참여에 대한 교육과 정확한 참여 절차의 구비가 절실히 필요함을 알 수 있습니다.
4) 질문 8번에 대하여 학생들의 약 10%가 건의사항 전달 방법을 몰라 전달하지 않는다고 응답하였습니다. 또한 '학생 참여가 제한된다고 느꼈던 경험'에 대한 질문에 '학교 운영에서 학생 참여가 가능하다는 것을 이 설문조사를 통해 알게 되었다.'라는 응답이 있었습니다. 학교의 주체인 학생이 학교 운영에 대해 자신의 참여권이 보장되는 것 자체를 몰랐다는 응답은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5) 질문 8번의 '자신의 건의사항을 전달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약 20%의 학생들이 자신들의 건의사항을 왜 전달하지 않는지에 대한 이유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질문 10번의 참여 제한 경험에 대한 응답을 통해, 학생들이 건의사항을 전달하지 않는 이유가 자신들의 건의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반복적 경험 때문이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즉, 자신들의 건의가 반영되지 않았던 경험이 축적됨에 따라, 애써 건의를 해도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소용이 없을 것이라는 인식이 작용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4. 학생참여와 의견존중의 권리가 보장되기 위하여 필요한 점

가. 학교운영에서 고려되어야 할 판단 기준: 대학입시가 아닌 아동최상의 원칙

아무래도 고등학교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이 대학입시이기 때문에 학교 또는 학생의 어떠한 의사결정에 있어 판단의 최우선 기준이 '대학 입시에 도움이 되는가, 입시에 유리하게 작용될 수 있는가'가 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전예술의 전당에서 개최된 한불 수교 130주년 기념 행사 'C'est si bon(쎄씨봉)'에 저희 프랑스어과[39]가 주최 측의 참여 제의를 받고 학생들끼리 참여 여부에 대해 토의하던 중 교장·교감 선

생님께서 준비할 시간도 많지 않고 준비시간이 길어 학업에 방해될 수 있으며, 대학입시에 긍정적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허락하지 않으셨던 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과내부에서도 갑작스러운 상황에 의견이 분분하였고 학생들 역시 학업에 방해될 수 있을 것이라는 우려를 하였지만, 회의 과정에서 학생으로서 언제 이렇게 큰 무대에 서볼 수 있겠냐며 찬성하는 방향으로 결정을 내리는 도중, 학생들이 어떤 생각을, 어떤 의견을 갖고 있는지 묻지 않으시고 그저 그분들의 판단으로 참여가 무산되었을 때 '입시가 과연 학교와 학생의 의사결정에 있어 어디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인가', '학생의 활동은 모두 입시에 초점을 맞추어야하는 것인가'에 대한 아쉬움과 회의가 들기도 했습니다.

어떠한 의사 결정과정에 있어 우선되는 기준이 학생이 아니라 입시가 되는 것은 입시결과로 학교를 평가하고 학벌주의가 만연한 사회 분위기 속에서 학교에서도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 역시 의사결정을 함에 있어 학생의 안전과 행복을 최우선으로 고려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는 물론이거니와, 그에 앞서 사회가 먼저 아동과 학생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분위기를 형성할 수 있도록 사회 구성원 모두의 노력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나. 학생주체에 대한 성인의 인식: 보호대상보다는 자발적·능동적 존재로

학교생활을 하다보면 교사와 학생이 생각하는 제한범위에 있어 보이지 않는 차이가 존재 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학생의 눈높이에서는 당연한 것이 교사와 학교 측에는 당연한 것이 아니며, 학교와 교사 측에게는 당연한 것이 학생들에게는 당연한 것이 아닌 경우에 그 차이를 느낍니다. 이는 어른과 아동의 사고과정과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나 때로는 그 차이로 인해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즉, 어른들이 '안돼!'라고 하는 이유와, 학생들이 '당연하죠!'하고 외치는 이유들이 서로가 납득하고 이해하기에 어려운 경우가 있는 것이지요.

이 제한범위의 차이는 학생의 역량과 잠재력에도 적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때문에 학생이 당연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일도 교사가 보았을 때 그저 아직 어리기에 걱정되는 일로 비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이지요.

어른들도 아동을 한 객체로, 어리고 미숙하기만 한 존재가 아닌 한 개인으로 존중하는 태도를 길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른의 아동을 신뢰하는 태도가 아동이 자신의 권리를 인식하고 의사표현을 자유로이 하는데 가장 좋은 원동력으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다. 아동 당사자의 아동권리 인식: 아동이 행복한 세상의 시작

저희 학교의 학생들은 자신의 자율성과 자치권이 대체적으로 존중받는 분위기 속에서 생활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학생들의 그들의 자율성을 존중받고 의견을 표현하고 싶어 하는 분위기가 매우 강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학생 스스로 자율성을 보장받고 싶어 하는 만큼 학생들이 노

39) 외국어 고등학교의 학생들은 특수한 학교 특성상 자신이 전공어로 배우고자 하는 언어의 과에 속해있습니다.

력하기에 학교와 학생 사이에 신뢰가 형성되어 이러한 분위기가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었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학생들 역시 스스로의 자율성을 보장받고 싶은 만큼 자신의 자유와 권리에 응하는 학생으로서의 의무를 다해야하며, 서로간의 신뢰를 위한 노력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학교는 체육관을 항상 개방해 두는데 학생들이 자신이 먹은 음식을 제대로 치우지 않아 일정기간 폐쇄에 대한 논의가 인적이 있었습니다. 학생의 체력증진과 스트레스해소를 위해, 즉 학생의 편의를 위해 개방하는 학교시설인 만큼 학생 스스로도 책임감과 주인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보장받고자 하며 타인의 권리 역시 존중하고자 하는 학생이라면 꼭 갖춰야할 자세이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자신의 권리를 알고 그에 따른 의무를 다하는 것이 자신과 타인의 권리를 보장받게 하는데 있어 가장 빠른 지름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라. ‘참여’에 대한 교육

위의 설문조사 결과를 통해 우리는 학생이 그들의 의견을 표현하고 존중받고 싶어 하는 만큼 그러한 분위기가 형성됨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전에 학생이 학교운영에 왜 참여해야 하는지,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지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관련 교육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일단 알아야, 자신들에게 주어진 그 권리를 알아야만 그 이후의 과정도 진행될 수 있으며, 이후의 과정에서도 학생들의 원활한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권리를 존중받으면서 의무를 다하는 세상’, ‘의무를 다하면서 권리를 존중받는 세상’ 권리와 의무 둘 중 무엇이 먼저인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권리만 존중한다고, 의무만 다한다고 행복해질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나의 권리와 의무를 다할 때 비로소 나와 내 주위의 진정한 행복이 시작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자신의 권리를 외치고 주장하는 것이 아직은 어색한 국가라고 느껴집니다. 특히 아동의 권리에 있어서는 더더욱 그런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동들이 스스로가 속한 가장 작은 사회인 가정과 학교에서 그들의 권리를 알고, 외치고 의무를 다한다면 그저 어린아이들의 유치한, 어리기만 한 외침이라고 생각하던 어른들의 생각을 조금씩 바꿔나갈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권리를 외쳤던 사람들이야말로 타인의 외침에 진정으로 귀 기울이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5. 결론

학교란 일정한 목적 · 교과 과정 · 설비 · 제도 및 법규에 의하여 교사가 계속적으로 학생에게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이라고 합니다.[40] 학교에 대한 이 정의는 교사, 즉 어른에게 초점을 두고 있는 것처럼

40) 네이버 국어사전 인용

느껴집니다. 그러나 학생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학교라는 공간 역시 존재할 수 없습니다.

학교 운영에 있어 아동 의견존중과 참여가 이루어지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학교의 주체는 학생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학교의 주체인 아동, 즉 학생의 의견이 더 잘 표현되고, 존중되고 받아들여 질 수 있도록 학교와 사회모두가 노력해야 합니다. 자신의 의견이 받아들여지고 존중받음을 경험한 아동이야말로 아동을 최우선으로 하고 그들의 의견을 존중하는 그런 따뜻한 세상을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동이 행복한 세상이 모든 사람이 행복한 세상의 시작, 즉 선순환의 시작이니까요.

저의 발제문을 비롯한 설문조사 결과가 많은 분들이 학교에서의 아동의 참여권과 의견 청취권에 대한 상황을 알게 되는 것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발제문을 읽은 분께서 자신 주변의 아동의 학교생활, 특히 아동의 의견존중과 참여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신다면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할 것 같습니다. 이 발제문이 유엔 아동권리 협약의 기본 원칙인 아동 최선의 이익과 아동 의견 존중이 실현되는 학교,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Ⅱ-3

학교 내 학생의 참여 및 자치에 관한 현황과 과제
- 경기도 현황을 중심으로 -

김 민 태 (前 경기도교육청 학생인권옹호관)

- 목 차 -

1. 학교와 학생의 학교운영 참여권
가. 학생참여권의 근거
나. 학생의 학교운영 참여의 방법과 유형
다. 학생참여 방법 및 유형별 현황 분석
1) 학생참여권 보장의 전제 요건 현황
가) 학생의 알 권리 보장
나) 학생의 표현의 자유 보장
2) 학생의 개별적 학교운영 참여권 현황
3) 학생의 학교운영 참여의 대표적 의제 내용과 현황
4) 학생자치기구의 참여와 활동현황
가) 학생자치활동의 의미
나) 학생자치활동 기구 유형
다) 학생자치기구의 영역별 활동 현황
(1) 학급회의 개최 현황
(2) 학생대표 전체회의(대의원대회) 개최 현황
(3) 학생자치회의 운영과 학교 운영 참여 현황
(4) 학생자치기구의 예산 집행 현황
(5) 학생자치기구의 회의실 확보 현황
라. 학교 내 학생참여 보장 한계 이유에 대한 검토와 개선 방안
1) 학생참여 보장의 한계 원인과 문제점
2) 학생자치 활성화를 위한 학생들의 의견
3) 학생자치 활성화를 위한 교사들의 의견
2. 학교 징계절차와 학생의 참여권
가. 학교 내 학생징계 절차
나. 학생 징계절차에서의 학생 참여권
1) 학생징계위원회의 구성과 학생 참여권
2) 학생징계절차 개시 이전의 학생 참여권
3) 학생징계절차 개시 이후의 학생 참여권
4) 학생징계절차에서의 학생 참여권의 실질적 보장 방안
가) 학생대표의 학생징계절차 참여권 보장 방안
나) 징계 대상 학생의 실질적 방어권 보장 방안

1. 학교와 학생의 학교운영 참여권

가. 학생참여권의 근거

우리 헌법은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를 규정하면서 이를 실현하기 위해 '학교'라는 교육기관을 전제하고 있으며, 자주성, 전문성, 자율성, 중립성 등의 틀에서 학교 교육이 이루어져야 함을 요구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헌법적 요구는 「교육기본법」을 통하여 구체화되고 있다. 특히, 교육기본법 제5조 제2항은 "학교운영의 자율성은 존중되며, 교직원·학생·학부모 및 지역주민 등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운영에 참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학교의 자율성을 강조하면서, 학교 자율성의 주요한 내용으로 교육당사자의 학교운영 참여권을 명시하고 있다.

즉, 이 조항을 토대로 우리 교육기본법은 '학교'라는 교육기관이 학교장의 일방적, 독단적 운영에 의하기 보다는, 교직원·학생·학부모 및 지역주민 등이 참여하여 운영되는 민주적 교육공동체를 목표로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학교 교육에서 학생은 단순한 교육 대상자가 아니라 학교 운영의 당사자임을 분명히 확인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더 나아가 교육기본법 제2장(제12조 내지 제17조)은 교육당사자에 학생(학습자)을 가장 앞에 명시하며 학생의 인권 보장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볼 때, 학생이 '학교'라는 교육공동체의 당당한 운영주체임을 거듭 확인하고 있다고 볼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학교라는 교육공동체의 운영에 있어 학생의 참여와 역할을 다시 구체화하기 위해 「초중등교육법」은 학생인권의 보장(제18조의4)과 학생자치활동의 보장(제17조) 등의 규정을 두고 있다.

하지만 학생의 학교운영 참여에 대한 이러한 명확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학교에서 학생은 교직원과 학부모는 물론, 지역 주민에 비해서도 학교운영의 한 주체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할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경기도, 광주, 서울, 전북 등은 다시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하여 학생의 학교운영 참여와 자치보장이라는 권리를 확인하고 실제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학교에 권고하고 있는 것이다.

<학생의 학교운영 참여권 및 자치권 보장을 위한 규범적 근거>

관련 법령	관련 조항
헌법	**제31조** ①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④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⑥학교교육 및 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제도와 그 운영, 교육재정 및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교육 기본법	**제5조(교육의 자주성 등)** ② 학교운영의 자율성은 존중되며, 교직원·학생·학부모 및 지역주민 등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운영에 참여할 수 있다. **제2장 교육당사자**

	제12조(학습자) ① 학생을 포함한 학습자의 기본적 인권은 학교교육 또는 사회교육의 과정에서 존중되고 보호된다. **제26조의2(교육 관련 정보의 공개)**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알 권리와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보유·관리하는 교육 관련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 관련 정보의 공개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초중등 교육법	**제17조(학생자치활동)** 학생의 자치활동은 권장·보호되며,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제18조(학생의 징계)** ② 학교의 장은 학생을 징계하려면 그 학생이나 보호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18조의4(학생의 인권보장)** 학교의 설립자·경영자와 학교의 장은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	**제9조(학교규칙의 기재사항 등)** 7. 학생 포상, 징계, 징계 외의 지도방법, 두발·복장 등 용모, 교육목적상 필요한 소지품 검사,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의 사용 및 학교 내 교육·연구활동 보호와 질서 유지에 관한 사항 등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 8. 학생자치활동의 조직 및 운영 9. 학칙개정절차 ④ 학교의 장은 제1항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학칙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학생, 학부모, 교원의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0조(학생자치활동의 보장)** 학교의 장은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학생의 자치활동을 권장·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59조의4(의견 수렴 등)** ② 국·공립학교에 두는 운영위원회는 학생의 학교생활에 밀접하게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학생 대표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국·공립학교에 두는 운영위원회는 국립학교의 경우에는 학칙으로, 공립학교의 경우에는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 대표가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운영위원회에 제안하게 할 수 있다. **제64조(학교발전기금)** ②발전기금은 다음 각호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한다. 4. 학생복지 및 학생자치활동의 지원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	**제14조(정보에 관한 권리)** ① 학생 또는 보호자는 학생 본인에 관한 학교 기록을 언제든지 열람할 권리를 가진다. ② 학생은 학교에 대해 학생에게 영향을 미치는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③ 학생 또는 보호자는 학생 본인에 관한 기록 중에 부정확한 내용, 교육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내용, 학생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내용 등에 대하여 정정이나 삭제를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 ④ 학교는 예·결산 등 학교 재정 관련 정보를 학생이 쉽게 알 수 있는 내용과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제16조(의사 표현의 자유)** ① 학생은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문제에 대하여 자유롭게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는 학생이 표현의 자유를 행사하는 경우 부당하고 자의적인 간섭이나 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학교는 교지 등 학생 언론활동, 인터넷홈페이지 운영 등에서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필요한 시설 및 행·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7조(자치활동의 권리)** ① 동아리 등 학생의 자치적인 활동은 보장된다. ② 학교는 학생자치기구의 구성과 소집 및 운영 등 활동에서 자율과 독립을 보장하고 성적 등을 이유로 구성원 자격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8조(학칙 등 학교 규정의 제·개정에 참여할 권리)** ① 학생은 학칙 등 학교 규정의 제·개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는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여 학칙 등 학교 규정을 제·개정하고, 이를 학교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③ 학교는 학칙 등 학교 규정의 제·개정 과정에서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며, 학생회 등 학생자치기구의 의견제출권을 보장해야 한다. **제19조(정책결정에 참여할 권리)** ① 학생은 학교 운영 및 교육청의 교육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② 학생회 등 학생자치기구 및 학생들의 자발적 결사는 학생의 권리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의견을 밝힐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③ 학교장과 교사는 학생대표와의 면담 등을 통하여 정기적으로 의견을 청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학생대표는 학생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관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⑤ 학교장과 교육감은 학생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결정할 때에는 학생의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25조(징계 등 절차에서의 권리)** ① 학생의 징계는 징계사유에 대한 사전 통지, 공정한 심의기구의 구성, 소명의 기회 보장, 대리인 선임권 보장, 재심요청권의 보장 등 적법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나. 학생의 학교운영 참여의 방법과 유형

학생의 학교운영에 관한 참여권 보장과 관련하여서는 일반적으로 학생자치기구를 통한 참여방법만이 주되게 논의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앞서 제시한 학생참여권의 근거가 되는 규범들의 내용을 살펴보면, 학생의 학교운영 참여 방법은 학생 개인 자격의 참여와 학생자치기구를 통한 참여가 명백히 구분되어 보장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즉, 학생은 학교운영에 대해 학생자치기구를 통해서만 참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학생 개인의 자격에서 의견을 표명하고 참여를 요구할 수 있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따라서 학생의 학교운영 참여에 관한 보장 정도를 살펴볼 때 학생의 개별적 학교운영 참여권의 현황에 대한 검토도 함께 진행해 본다면 유의미할 것이다.

또한, 학생의 학교운영 참여 보장을 위한 기본적 전제는 학생의 알권리(학교 내 정보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권 등)와 표현의 자유가 온전히 보장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현황에 대해서도 간단히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학생참여권의 방법과 내용>

참여 방법		참여(보장) 내용과 정도
학생참여권 보장의 전제 요건	알권리 보장	- 학생 개인의 정보에 대한 접근권 - 학교 교육 내용과 과정 등에 대한 알권리 - 학교 예산 등 경영에 대한 알권리
	표현의 자유 보장	- 학교 홈페이지 의견 게시의 제한 여부 - 학교 내 자유로운 의사표현 방법과 절차 존재 및 제한 여부
학생 개인의 참여	수동적 참여	- 학교 설문에 응답하는 방식
	능동적 참여	- 학교 홈페이지 게시판, 개인적 유인물 배포나 게시 등을 통한 적극적 의견제출 - 개별적 학교장 면담 등
학생 자치기구 중심의 참여권	수동적 참여	- 학교장의 요청에 의한 의견제출
	능동적 참여	- 정기적 학생자치기구 개최 및 의사결정 - 학생 언론기구의 편집과 보도
	참여의 방식	- 학생자치기구의 심의 의결 - 언론기구의 보도 - 학교장 면담을 통한 의사 반영 - 운영위원회 등 참여를 통한 의사 반영 - 기타 방식에 의한 의사반영

다. 학생참여 방법 및 유형별 현황 분석

1) 학생참여권 보장의 전제 요건 현황

가) 학생의 알 권리 보장

관련 사례	- K고등학교 A학생은 학교의 교칙개정 절차 진행 과정 중에 여러 문제가 있다며, 학교에 최초 교칙 개정발의안의 작성내용과 학생의견 수렴 절차에 관련된 정보 등을 학교 측에 공개할 것을 요청함 - 그러나 학교 측은 교칙개정에 있어 학생회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면서 진행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없었다고 주장하면서 A학생의 정보공개 요청을 거부함 - 이에 A학생은 학생인권옹호관에게 학교가 전체 학생에게 교칙 개정 절차를 공지하거나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학생회에 대해서만 의견을 수렴한 것이 타당한 것인지 여부

	와 학교 측이 학생에게 교칙 개정 관련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것이 정당한지를 문의함
판단 및 조치	- 학생인권옹호관은 학교가 학교운영에 대한 학생 개인자격의 의견보다 학생회라는 자치기구의 심의/의결로써 제출된 의견에 비중을 더 크게 두는 것은 가능하다고 볼 것이나, 그렇다고 학생 개인 자격의 의견을 아예 배제하거나 무시하는 것은 타당할 수 없음을 설명하고, - 학교 측에 교칙개정안에 대한 학생 의견수렴을 위해서는 교칙개정안을 전체 학생들이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공지할 것과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권고하고, 학생회 외에도 학생 개인의 의견도 수렴하여 토론하고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권고함

학교운영에 대한 학생의 개별적 참여이든 학생자치기구를 통한 참여이든 학생은 학교가 가지고 있는 학생 및 그 보호자에 관한 개별적 정보는 물론 학생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학교 현황과 운영에 관한 정보에 대한 접근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규범적으로 보면 「개인정보보호법」상 공공기관인 학교는 당연히 정보주체에게 필요한 정보접근권을 인정하고 있음은 물론이며, 교육기본법(제26조)와 초중등교육법 등 교육관련 법령에서도 학생과 그 보호자에게 관련 정보에 대한 접근권을 보장하고 있고, 학교는 정보주체가 공개를 요청하는 개인정보에 대해 열람 등의 방식으로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학교는 아래에 예시되고 있는 바와 같이 교육과정 및 내용은 물론 학교규칙과 예산, 교직원 현황 등을 포함한 학교 경영의 전체적 현황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상세한 자료를 공개하고 있는 상황이다.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되는 학교운영 영역>

<학교 홈페이지에 공지된 학교예산 현황>

201*학년도 세출결산서

(단위 : 원)

사업			예산액	예산현액	결산액	산출기초		
정책	단위	세부						
1.인적자원 운용			96,000,000	96,554,160	96,139,160			
	1.교직원 복지 및 역량강		49,080,000	49,634,160	49,541,840			
		1.교직원연수	4,340,000	4,340,000	4,248,240			
						1.교직원연수	=	2,940,240
						1.업무추진비	=	2,940,240

다만, 이렇게 공개되어 있는 정보는 학생들 입장에서 쉽게 이해하거나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학교 운영에 참여하기 위한 기본적 자료로 사용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 이는 대부분의 자료들이 학교 입장에서 작성된 것이지 학생들의 눈높이에서 작성된 것이 아니기 때문일 것이다.

그리고 현재의 학교 문화를 본다면 학생 스스로가 이미 공개되어 있는 정보를 토대로 학교운영에 대한 정보와 자신의 정보에 대해 학교 내 절차에 따라 추가적으로 공개를 요청하면서 참여하거나 직접 자기정보를 관리한다는 것은 매우 드문 사례일 것이다.

더 나아가 학교에서 학생 개인이 학교 운영에 관한 정보를 학교 측에 제공할 것을 요청하고, 그 정보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풀어 줄 것을 요구한다면 이에 대해 긍정적으로 응해 줄 학교가 얼마만큼 존재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나) 학생의 표현의 자유 보장

관련 사례	- Y고등학교 학생회장 B는 인근의 다른 학교와 달리 자신의 학교만이 7시 30분 등교를 강제하고 있어,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등교시간 조정을 학교장에게 요구하였으나, 학교장은 이를 거부함 - 학생회장 B는 다시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등교시간 조정을 요청하는 의견서를 작성하고 다음날 아침 등교시간에 학생들에게 이를 배포함 - 이에 Y고교 학교장은 “학교장의 허가 없이 유인물을 배포한 경우 징계한다”라는 교칙을 들어 학생회장 B 등을 징계함
판단 및 조치	- 국가인권위원회는 허가받지 않은 유인물을 교내에 배포하였다는 이유로 진술서를 요구하고 선도절차를 진행한 행위는 헌법 제21조 표현의 자유 침해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학교장에게 학생 징계를 취소하도록 권고한 사례(2008. 2. 28. 결정)

학생을 포함하는 교육공동체 구성원이 학교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학교민주주의의 가장 중요한 요소이고, 이러한 학교민주주의의 전제는 학생들은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에 대해 자유롭게 의사를 표현할 권리를 당연히 보장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 학교의 경우 그동안 학생이 학교운영에 자신의 자유로운 의사를 표현하는 것에 대해 여러 제한을 두거나 아예 금지하는 경우가 많았기에, 유엔아동권리위원회 뿐만 아니라 유엔인권이사회에서 마저도 학교 내 아동의 표현의 자유가 온전히 보장될 수 있는 조치를 법률과 교칙에 명시하라고 우리나라 정부에 수차례 권고하였던 바다.[41][42]

41) 아동권리위원회 한국정부의 2차 보고서에 대한 논평 및 견해(CRC/C/15/Add.197)
36. 위원회는 학생회에 대한 엄격한 행정적 통제와 초·중등학교에서 교외정치활동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학교 교칙으로 인해 학생의 표현과 결사의 자유가 제한되고 있음에 우려한다.
37. 협약 12-17조의 견지에서, 위원회는 의사결정과정과 학교 내외에서의 정치활동에서의 아동의 능동적인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법률, 교육부가 만든 지침 및 학교교칙을 개정하고 모든 아동이 결사와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충분히 향유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을 권고한다.

42) 유엔 인권이사회 제출된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를 위한 대한민국 2012년 인권상황보고서」 중 ‘학생들의 집회·결사와 표현의 자유 보장 관련’ 부분
“학생들의 표현과 집회의 자유를 명확하게 규정한 법은 없지만 이를 제한하는 법도 없다. 다수의 지방교육청에서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했으며, 해당 조례들은 모두 학생들의 표현의 자유 보장을 규정하고 있다. 어떤 조례는 집회의 자유도 보장하고 있다”

<어느 학교 교칙 중 학생의 표현의 자유 제한 내용>

9조 (집단 행위)	1	불법 집회, 불량 써클에 참석하거나 가입한 학생					
	2	학교장의 허가 없이 대외 행사나 집회 등에 참여하거나 출연 또는 참가하여 학교 명예를 훼손한 학생					
	3	학생을 선동하여 질서를 문란하게 한 학생					

하지만 여전히 학교에서 학생들이 학교운영에 대해 자유로운 의사를 표현할 수 있도록 교칙 등에 의사표현의 방법과 절차를 마련한 경우는 쉽게 찾아 볼 수 없다.

즉, 학생들이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학교 운영에 의견을 제시할 수는 있으나, 자신의 의견을 작성하려면 신상정보(학년반 또는 학번 등)의 입력을 전제하는 경우가 있어 사실상 실명 강요에 따른 부담으로 의견을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또한, 학교 신문이나 교지 등에 학생의 의견을 실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하나, 이러한 매체는 학교 주관의 홍보용 매체이지 학생들의 독립적 편집권이나 발언권이 보장되는 경우는 매우 드문 상황이다.

2012년 경기도학생인권실태조사 -(사)인권정책연구소

<학교 교지, 인터넷홈페이지 등 학생 표현의 자유 보장 관련 학생설문 결과>

학교급별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초등학교	40.98	28.45	26.40	2.40	1.77
중학교	18.20	28.16	45.27	5.17	3.19
일반고 고교	14.40	28.74	46.36	7.08	3.42
특성화 고교	13.49	25.59	49.01	7.69	4.22
계	21.77	27.73	41.76	5.59	3.15

교지 등 학생 언론 활동과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등에서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지에 대해 학생들은 49.5%가 긍정적인 인식을 보이고 있다. 이는 과거와 달리 학교가 학생 언론활동과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에 있어 학생들의 표현의 자유 보장을 확대해 가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으나, 여전히 학교 내 학생의 표현의 자유 보장에 많은 제약과 한계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오히려 '학교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유인물의 게시' 또는 '학교장의 허가 없이 교내에서 집회나 시위를 행위', '학교 밖 집회에 참여하는 행위' 등이 무조건 징계 사유에 포함되어 있어 학생의 표현의 자유를 정당한 이유 없이 침해하는 경우가 다수라고 볼 수 있다.

2) 학생의 개별적 학교운영 참여권 현황

관련 사례	- OO지역의 고등학교 2학년 학생입니다. 학교에서 방과 후 활동이라든지 운동장 개선 사업 등 학생에게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결정을 내리면서도 정작 학생의 의견을 묻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학생도 학교의 운영에 참여할 방법은 없나요?
판단 및 조치	- 학생은 학교의 중심이며, 교육영역이든 행정영역이든 학교 내 대부분의 사업은 궁극적으로 학생을 위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교육기본법」은 학생을 학교의 일 주체로서 인정하고, 우리 학생들을 민주시민으로 성장시키는 교육을 표방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엔아동권리협약」에서도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결정을 하는 경우 반드시 아동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범을 토대로 인권조례 제19조는 학생의 학교운영 참여권을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 하지만 정작 학교 현장에서는 학교운영에 있어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가 부족한 것이 사실인바, 학교는 학생에게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결정을 할 때 반드시 학생의 의견을 구하는 절차를 제도적·정책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 즉,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상시적으로 학생 관련 정책에 대해 의견 수렴을 진행하고, 학생대표와 학교 관리자 간의 정기적 면담 실시하며, 학생 대표가 학교운영위원회 참여하여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 등의 조치를 통해 학생이 학교 구성원으로서 주인정신과 애교심을 갖도록 유도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일상적으로 학교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학생들이 민주주의를 몸소 학습하고 실천할 수는 기회를 제공해야 할 것입니다. (2013년 경기도학생인권상담사례)

학교는 학생들의 자발적 참여부족이나 의사결정의 신속성 확보 등을 이유로 학교운영에 관한 학생 의견수렴 방안으로 가정통신문이나 일괄적 설문의 방법을 주로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학생들은 학교 운영에 대해 수동적 입장에서 의견을 제시하는 수준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나마 이마저도 학교에서 이미 예정하고 있는 몇 가지 방안에 대한 선택을 일방적으로 요구 당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학생 개인의 의견이 존중되었다고 보기는 매우 어려울 것이다.

그리고 학생들은 이러한 수동적 의견제출 방식을 넘어서서 학교 홈페이지, 학교 건의함, 학교 신문 등을 통해 보다 적극적으로 개인적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나,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사실상 이러한 의견제출 방식은 활성화되지 않고 있다.[43]

더 나아가 일부 학생들이 의견을 모아 보다 적극적으로 학교 측에 의견을 개진하거나 학교의 결정에 반대의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앞서 학생의 표현의 자유 보장에 관한 사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 학교의 문화는 이러한 학생들의 적극적 의사표현은 교칙에 의해 아예 금지되거나 불명확한 징계 조항에 의해 처벌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43) 학생들이 학생자치기구가 아닌 개별적 의견개진 수단으로 '학교 건의함', '학교신문', '학교홈페이지' 등의 활용도가 낮은 편으로 나타난. 즉, 학생자치기구를 이용하는 경우는 3.0(5점 척도 조사)점이었으나, 개별적 의견개진은 2.75점으로 낮게 조사되었다. - '경기도 학생자치실태 및 활성화 방안 연구'(2015, 경기도교육연구원) 87-88면

- 학생의 표현의 자유 등 관련 사례

1) 역사 교과서의 국정화 정책에 대해 학생들이 학교 밖에서 서명운동을 벌이는 것을 하교 교사가 제한할 수 있는지의 여부(경기도교육청 2015년 인권상담 사례)

2) 역사 교과서 채택 과정에서 학생들의 의견수렴 절차가 없었고, 학교장이 일방적으로 결정하였다는 의견을 게시하자 이를 즉시 철거해 버린 사례(경기도교육청 2015년 인권상담 사례)

3) 학생의 학교운영 참여의 대표적 의제 내용과 현황

교육기본법은 학생을 교육당사자로 명시하고, 학교 운영에 있어 다른 교육당사자와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틀을 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상 초중등교육법의 내용을 보면, 학생의 학교운영 참여는 교직원이나 보호자, 지역주민 등에 비해 제한되거나 무시되어 있는 상황이다. 즉, 초중등교육법상 학생들은 학교운영위원회 등 학교 내 의사결정기구의 구성원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아예 없으며, 단지 학교 운영 전반이 아닌 학생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아주 협소한 영역에 대해서만 의견개진권을 갖고 있을 뿐이다. 그리고 이러한 의견개진권도 학교별로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조[44]에 따라 사실상 형식적 설문의 형태로 진행되는 수준으로 보장되는 경우가 많다.

2015년 경기도학생인권실태조사- (사)인권정책연구소

2-10) 학교는 현장학습, 운동회 등 학생행사에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하나요?

		평점	2014	매우 그렇다	그런 편이다	그렇지 않은편이다	전혀 그렇지않다
전체학생 계		62.0	60.5	23.8%	48.6%	17.0%	10.5%
초등학교	초등 계	65.9	66.5	30.1%	45.8%	15.4%	8.7%
중학교	중등 계	59.9	58.1	19.8%	51.0%	18.2%	11.0%
일반고	일반고 계	55.7	51.1	14.3%	52.3%	19.5%	14.0%
특목고	특목고 계	68.0	56.3	28.8%	52.4%	12.5%	6.4%
특성화고	특성화고 계	57.3	53.7	19.7%	46.9%	18.8%	14.6%

전반적인 개선이 되고 있으며, 특히 특목고가 크게 개선되었다. 주요 행사에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있는가는 앞의 설문과 더불어 학교 내에서 학생들이 얼마만큼 한 주체로서 인정받고 있는지와 관련한 것으로, 사회에 진출하게 될 고등학생들에 있어서 더욱 중요한 경험임에도 상대적으로 더 낮은 평점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제기된다. 우리 교육법이 민주적 시민의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학교 민주주의에 대한 경험과 훈련이 부족하다. 사회 전체적으로 학생 개개인의 경쟁력에만 관심이 집중되어 함께 이 사회를 이끌어 가는데 필수적인 민주시민역량의 중요성을 공감하고 있지 못한 원인도 크다고 판단된다.

44) 초중등교육법 제9조(학교규칙의 기재사항 등)

7. 학생 포상, 징계, 징계 외의 지도방법, 두발·복장 등 용모, 교육목적상 필요한 소지품 검사,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의 사용 및 학교 내 교육·연구활동 보호와 질서 유지에 관한 사항 등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
8. 학생자치활동의 조직 및 운영
9. 학칙개정절차

④ 학교의 장은 제1항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학칙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학생, 학부모, 교원의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015년 경기도학생인권실태조사 - (사)인권정책연구소

2-9) 학교 규칙이나 규정 등을 만들거나 고칠 때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하나요?

		평점	매우 그렇다	그런 편이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전혀 그렇지 않다
전체학생 계		63.9	25.9%	48.8%	16.0%	9.3%
초등학교	초등 계	72.5	37.9%	46.9%	9.6%	5.6%
	사립	65.6	30.8%	45.9%	12.2%	11.1%
	국공립	72.9	38.3%	47.0%	9.4%	5.2%
중학교	중등 계	59.1	17.9%	52.2%	19.0%	10.9%
고등학교	고등 계	51.4	10.5%	48.2%	25.8%	15.4%
일반고	일반고 계	50.7	9.8%	48.2%	26.2%	15.8%
특목고	특목고 계	54.7	13.7%	49.5%	23.6%	13.1%
	사립	50.9	11.3%	46.3%	26.0%	16.4%
	국공립	59.7	16.9%	53.7%	20.6%	8.8%
특성화고	특성화고 계	53.5	13.2%	48.2%	24.4%	14.2%

전반적으로 2014년에 비해 조금 개선된 것으로 나타나며, 2014년 가장 낮은 점수를 보인 특성화고의 경우, 100환산 평점이 5포인트 상승하여 많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립의 경우, 상당 부분 학생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

학교의 규칙이나 규정은 학생 본인들이 해당 규정의 대상이 된다는 점에서 당사자인 학생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번 집단면접조사에서 확인되듯이 학생들의 의견 반영 및 학교 규칙 제정의 참여가 규칙 준수 및 교사와 학생간의 갈등 해소 등에 크게 효과적임을 보았는데, 이런 점에서 이 설문의 수치가 보여주는 의미가 크다. 이는 민주시민교육과 관련하여도 가지는 의미가 상당할 것이다.

이러한 한계 내에서 그나마 학생들이 학교운영 중 어떠한 문제에 대해 어느 정도의 참여를 하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면 다음과 같다.[45)]

<학교운영에서 학생참여 정도(학생 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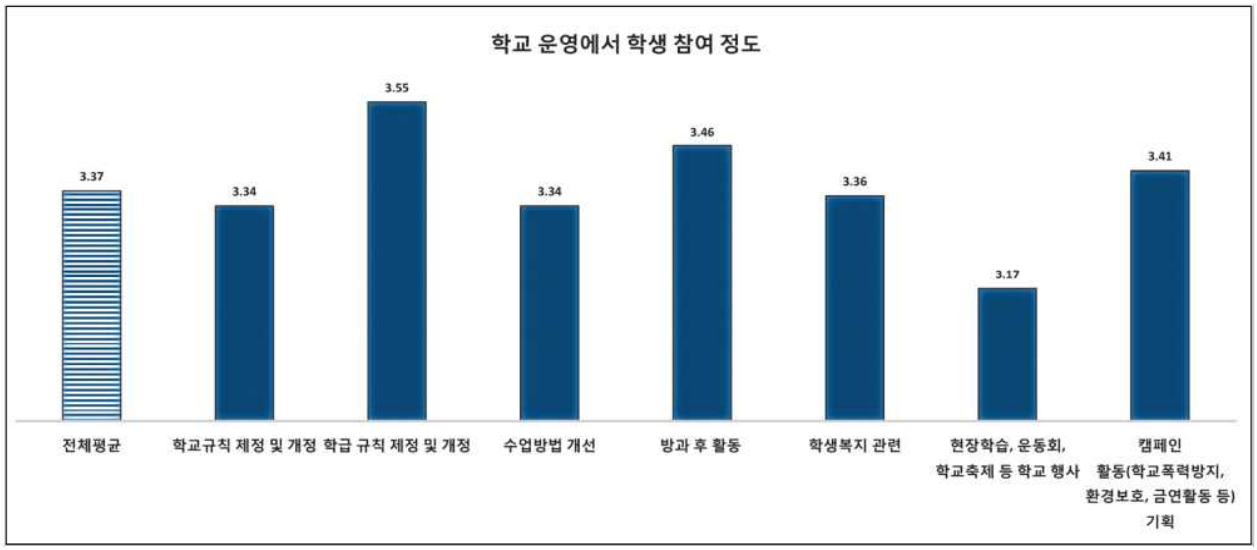

<학교급별 학교운영에서 학생참여 정도(학생 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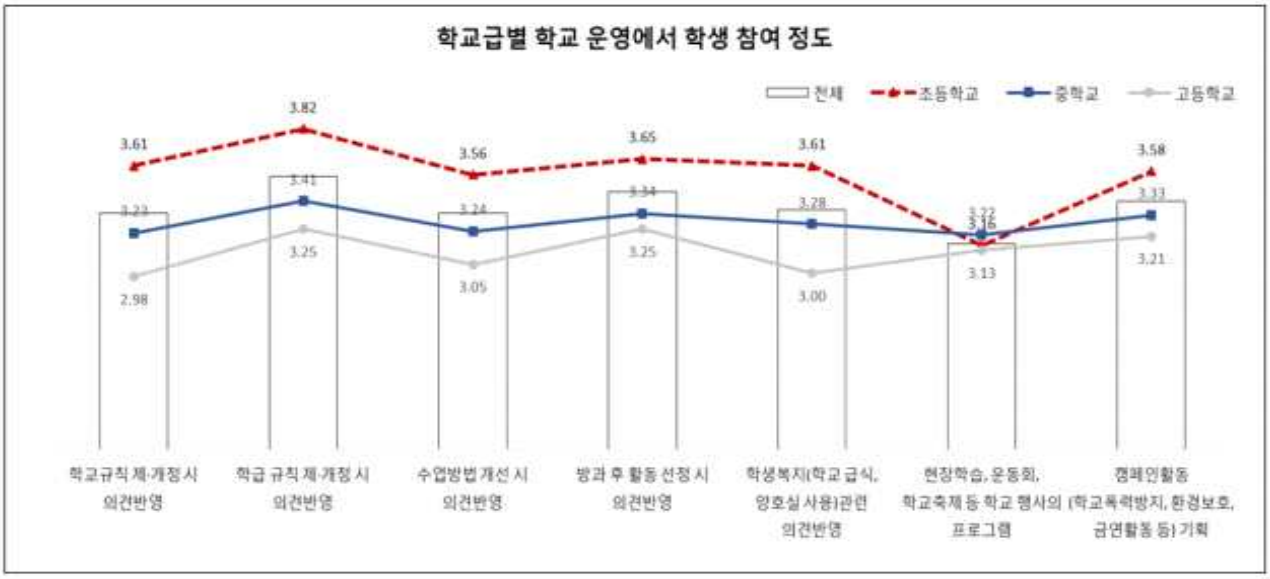

4) 학생자치기구의 참여와 활동현황

가) 학생자치활동의 의미

학생자치활동은 학생들이 학급회의나 전체 학생자치회, 학생동아리 등의 학생자치기구를 통해 학교 내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대한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활동을 말한다. 이는 교육기본법이 교육의 이념으로 선언하고 있는 학생의 '자주적 생활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하기 위한 기본적 학생교육의 틀'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실제 학교 현장에서의 학생은 미성숙한 존재임이 강조되면서 단지 미래세대의 주인공으로 치부(?)되고 현재의 시민성은 무시되면서, 교육기본법 등이 보호하고 교육하고자 하는 자율적 자치능력을 연습받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민주시민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는 것이므로, 학생들이 자치와 참여를 통해 학교라는 교육공동체의 주체이자 시민으로써 성장해 가는 기회를 제공하여야 함은 마땅한 것이다.

45) 학교규칙 제개정, 학급규칙 제개정, 수업방법 개선, 방과후활동 선정, 학생복지, 학교행사, 학교캠페인의 7가지 영역으로 나누어 학생들의 학교운영 참여 정도를 파악하고자 했다. 각 영역별로 학생참여 정도를 학생들에게 5점 척도로 조사하였다. 조사결과 학교운영에 대한 학생들의 참여정도는 평균 3.37점으로 나타나, 학생들의 학교운영 참여가 보통 수준이었다. - '경기도 학생자치실태 및 활성화 방안 연구'(2015, 경기도교육연구원) 91-92면

나) 학생자치활동 기구 유형

<학생자치기구의 종류와 역할 예시>[46]

종류	역할
학생총회	• 재학 중인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학생총회의 의장은 학생자치회장이 맡으며, 정·부 회장 선거와 기타 학생 활동에 관한 중대한 사항을 토의·의결
학생자치회 운영위원회	• 학생총회의 선거에 의해 선출된 회장과 부회장, 각 부 부장으로 구성되고 학생자치회 운영, 대의원회에서 위임된 사항과 심의·의결한 사항 추진, 학생자치활동 예산안 편성·집행 등의 업무를 수행
학생대의원회	• 대의원회는 학생자치회 운영위원회 임원, 학급의 대표 등으로 구성되고 학생자치회장이 의장직을 수행 • 학생총회 소집, 학생자치회 운영 계획, 학생자치활동 예산운영(안), 대의원 및 학급자치회에서 건의한 사항, 운영위원회에서 부의(附議)한 안건과 학생생활인권규정 제·개정을 위한 학생들의 의견을 심의하고 의결
학급자치회	• 각 학급의 모든 재학생으로 구성되고 학생자치활동과 관련되는 사항, 건의사항, 기타 학급의 특색 사안 등을 협의·의결
학생 자문위원회	• 학생자치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학교 교원으로 구성하고 학생들이 자치활동에 대한 자문이나 조언을 요청하는 경우에 이에 대한 전문적인 정보를 제공

우리는 '학생자치기구'하면 보통의 경우, 학생회장을 중심으로 한 학생회를 떠올리게 된다. 그러나 초중등교육법상 학생자치기구의 구성이나 내용은 학교 교칙에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학교는 학생의 다양한 자치활동을 보장하고, 시민교육의 심화를 위해 여러 학생회 이외에도 여러 자치기구를 두어 학생의 자치활동을 촉진하고 육성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다) 학생자치기구의 영역별 활동 현황

(1) 학급회의 개최 현황

관련 사례	- D중학교 2학년 어느 반의 담임교사는 학생들이 예정된 학급회의를 열려고 하자, "다음 주가 중간고사이니 이번엔 학급회의를 열지 않겠다'고 하며 학급회의를 열지 못하도록 한 사례
판단 및 조치	- 학생인권옹호관은 학급회의는 학교 내 학생자치의 근간이므로, 특별한 사유가 없는 이상 교칙이나 학급회칙에 따라 예정된 시기에 개최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시험기간임을 이유로 담임교사가 학생들의 의견수렴도 없이 일방적으로 학급회의를 개최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학생인권조례 제17조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학생의 자치활동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하고, 향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을 권고함(2013년 학생인권상담 사례)

46) 경기도교육청 학생자치활동운영 사례집(2014)〉

학급별 학생회의, 즉 학급회의는 학교 내 학생의 자치활동의 근간이자, 학생의 의견수렴의 기반이 되는 요소이다. 그러므로 학급회의에 관한 사항은 학교 교칙에 일반적 내용(구성과 소집, 회의개최 시기, 의사반영 방법 등)을 정하고, 다시 구체적인 이행사항은 학급 규칙에 명시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학급회의는 학생들의 자발적 자치기구임에도 불구하고, 그 운영이나 의사결정의 이행 등이 담임교사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상급학교로 갈수록 강해지는 경향을 보이기도 한다.

2015년 경기도학생인권실태조사 - (사)인권정책연구소

2-12) 학급회의 또는 학생회의가 정기적으로 열리나요?

		평점	매우 그렇다	그런 편이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전혀 그렇지 않다
전체학생 계		69.2	30.8%	50.7%	13.3%	5.2%
초등학교	초등 계	76.5	43.9%	44.6%	8.1%	3.4%
	사립	70.1	34.0%	48.2%	11.6%	6.2%
	국공립	76.9	44.5%	44.4%	7.9%	3.2%
중학교	중등 계	63.0	20.0%	55.6%	17.5%	6.9%
고등학교	고등 계	61.7	17.3%	57.1%	18.7%	6.9%
일반고	일반고 계	60.8	15.6%	57.9%	19.5%	7.0%
특목고	특목고 계	68.4	29.7%	50.5%	14.7%	5.1%
	사립	69.8	31.6%	51.4%	11.3%	5.6%
	국공립	66.5	27.2%	49.3%	19.1%	4.4%
특성화고	특성화고 계	64.3	22.2%	54.8%	16.2%	6.8%
	사립	66.8	26.8%	52.6%	14.6%	6.1%
	국공립	62.5	19.0%	56.3%	17.3%	7.3%

학생회의가 대부분 정기적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나타나며, 중고등학교에서는 좀 낮게 나타나고 있다. 입시부담을 느끼는 중학교부터 학교와 교사가 교과 수업 외 활동을 최소화하려는 경향을 보이는 것과 관련되어 있다고 본다.

<학급회의 개최 횟수>[47]

		하지 않음	몇 달에 한 번	한 달에 1회	한 달에 2회	한 달에 3회	한 달에 4회 이상
전체		15.0	29.0	33.4	13.5	5.0	4.2
학교급	초등학교	7.8	22.3	40.6	18.6	5.6	5.0
	중학교	20.4	32.9	31.2	8.7	2.9	3.8
	고등학교	21.6	36.2	23.4	9.7	5.9	3.1
학교유형	일반학교	15.4	29.4	34.4	13.1	4.6	3.3
	혁신학교	12.6	26.5	27.4	16.3	7.4	9.8

47) '경기도 학생자치실태 및 활성화 방안 연구'(2015, 경기도교육연구원) 100면

(2) 학생대표 전체회의(대의원대회) 개최 현황

관련 사례	- L고등학교에서는 학생회가 주관하는 전체대의원대회의 의사결정 과정과 그 결과가 공지되지 않아서, 학생회 임원 외에 학생들은 무슨 내용의 안건이 논의되고 결정되었는지에 대해 알지 못하고 는 경우가 있다는 학생의 상담 사례
판단 및 조치	- 학생인권옹호관은 학생 대표 회의(대의원대회)의 내용은 회의에 참가하는 학생들 외의 학생 전체에게 사전에 공지되고, 그 결과도 공지되어야 함을 학교 측에 설명하고, 향후 학생대표회의가 보다 민주적 절차에 따라 진행될 수 있도록 학교교칙을 개선하고, 학생대표들을 교육할 것을 권고함

학교 내 학생민주주의 실현 구조는 학생들이 학급별 회의를 통해 자신들의 의견을 표명하고, 다시 이러한 의견은 전체 학생대표회의에 제출되어 논의되고 반영되는 구조를 가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간혹 학생대표회의는 학생 전체가 알 수 있도록 회의 안건을 공지하거나 의견을 수렴한 후에 진행하기보다는 일부 학급 대표들의 폐쇄적 구조 아래 논의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더 나아가 이러한 논의마저 정기적으로 열리지 않거나 그 회의의 간격이 너무 멀어 사실상 형식적 기구화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학생 대표 전체 회의 개최 횟수 및 활성화 정도>[48)]

		하지 않음	몇 달에 한 번	한 달에 1회	한 달에 2회	한 달에 3회	한 달에 4회 이상
전체		3.9	16.0	48.5	26.2	1.5	3.9
학교급	초등학교	8.2	7.1	36.7	42.9	1.0	4.1
	중학교	0.0	9.3	74.1	11.1	0.0	5.6
	고등학교	0.0	38.9	44.4	11.1	3.7	1.9
학교 유형	일반학교	4.6	15.5	48.3	25.9	1.7	4.0
	혁신학교	0.0	18.8	50.0	28.1	0.0	3.1

<대의원회 활성화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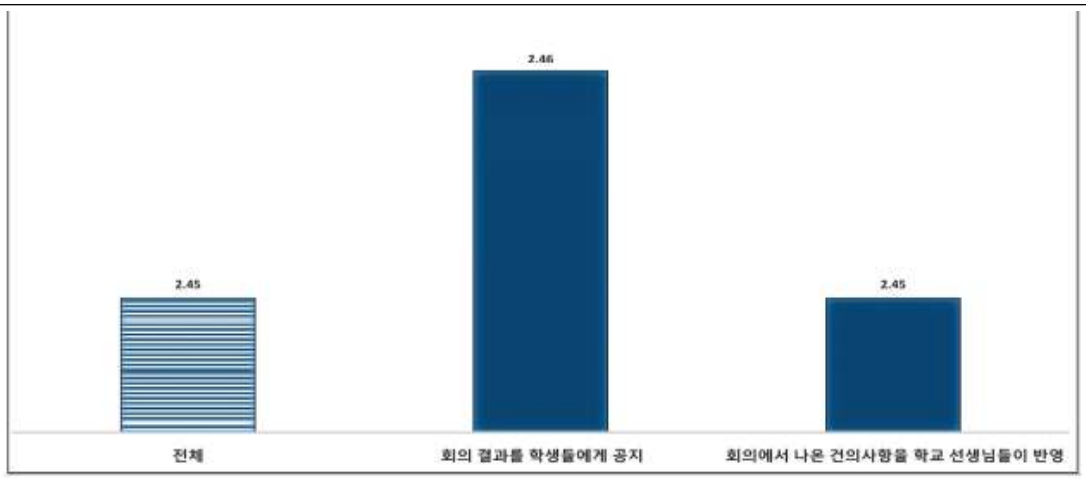

대의원회 활성화 정도를 살펴보기 위해, 대의원회의 회의결과는 임원이 아닌 학생들도 알 수 있는지, 회의에서 나온 건의사항을 학교 선생님들이 반영하는지에 대해 학생들에게 설문하였다. 전체 평

균은 2.45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대의원화 활동은 다소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각 문항별로도 '회의결과를 학생들에게 공지한다는 문항은 2.46점, 회의에서 나온 건의사항을 학교 선생님들이 반영한다는 문항평균은 2.45점으로 모두 낮은 편이다.

(3) 학생자치회의 운영과 학교 운영 참여 현황

학생자치기구 중 학생을 대표하는 공식적 기구는 보통 학생들의 직접선거를 통해 선출된 '학생자치회장(또는 학생회장)' 중심의 '학생자치회(또는 학생회)'가 된다.

이러한 학생회는 학교에서 학생들의 복리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문제뿐만 아니라 교과과정 운영 등 학교 운영 전반에 걸쳐 자신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에 대해 학생을 대표해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학교 측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학교 운영에 참여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학생회라고 할지라도 다른 학교 교육의 당사자와 달리 학교운영에의 참여는 제한적이라고 할 수 있다. 즉, 학교운영에 있어 학교 내 가장 중심에 있는 '학교운영위원회'에 학생은 물론 학생대표들도 의결권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애초에 보장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58조(국공립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 ②국·공립학교에 두는 운영위원회 위원의 구성비율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범위내에서 위원회규정으로 정한다.
1. 학부모위원(당해 학교의 학부모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 100분의 40 내지 100분의 50
2. 교원위원(당해 학교의 교원을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 100분의 30 내지 100분의 40
3. 지역위원(당해 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을 생활근거지로 하는 자로서 예산·회계·감사·법률 등에 관한 전문가 또는 교육행정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당해 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을 사업활동의 근거지로 하는 사업자, 당해 학교를 졸업한 자 기타 학교운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 100분의 10 내지 100분의 30

이러한 학교운영위원회 구성은 학생들은 미성숙한 존재이므로, 성인의 의사능력을 중심으로 학교를 운영하여야 한다는 성인들의 가치가 우선되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초중등교육법의 상위법이라고 볼 수 있는 교육기본법이 학생을 명확히 교육당사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학교 운영에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하도록 요구하고 있다는 측면을 고려한다면 향후 학생들도 그 연령과 성숙도에 비례하여 정당하게 자신의 의견을 학교운영에 반영할 수 있는 수단과 장치를 보장받아야 마땅할 것이다.

이러한 입법적 견지를 토대로 볼 때, 비록 현재 학생들이 학교운영위원회에 의결권을 가지고 참여할 방법은 없다고 하여도 학생인권조례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학생들이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반드시 학교 교칙에 명시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48) '경기도 학생자치실태 및 활성화 방안 연구'(2015, 경기도교육연구원) 108면

<학생의 학교운영위원회 참석 현황>[49]

		전반적인 학교운영 관련 참석 건의 및 발언	학생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만 참석 건의 및 발언	참관만 가능	참석 할 수 없음
전체		16.9	26.6	11.1	45.4
학교급	초등학교	16.5	26.2	11.7	45.6
	중학교	15.4	40.4	9.6	34.6
	고등학교	19.2	13.5	11.5	55.8
학교 유형	일반학교	18.3	23.4	12.0	46.3
	혁신학교	9.4	43.8	6.3	40.6

또한, 학생대표들이 정기적으로 학교장을 면담하고 학교 운영에 대해 학생들의 의견을 표명할 있도록 보장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아래 조사 결과에서 볼 수 있듯이 여전히 이러한 학생대표의 학교장 면담권이 학교 교칙에 명시되는 경우는 많지 않으며, 실제 학생들이 학교장을 면담하는 제도적 장치도 그리 활발하게 작동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이다.

<학생의 학교장 정기 면담 현황>[50]

		하지 않음	몇 달에 한 번	한 달에 1회	한 달에 2회	한 달에 3회 이상
전체		6.1	51.2	33.3	8.0	1.4
학교급	초등학교	5.6	45.8	33.6	12.1	2.8
	중학교	7.7	50.0	40.4	1.9	0.0
	고등학교	5.6	63.0	25.9	5.6	0.0
학교 유형	일반학교	6.1	50.6	33.9	8.9	0.6
	혁신학교	6.1	54.5	30.3	3.0	6.1
설립 유형	공립	6.8	47.9	35.9	7.8	1.6
	사립	0.0	81.0	9.5	9.5	0.0

(4) 학생자치기구의 예산 집행 현황

관련 사례	- D고등학교 학생회장입니다. 학생회가 학생회 활동을 위해 예산이 필요하여 담당 선생님께 예산 배정을 요청하였으나, 이미 물품구입(물티슈 등 청소용품)에 배정된 예산을 다 사용하여 학생회가 요청한 예산을 지급할 수 없다고 합니다. - 학생회를 위한 예산인데, 학생대표인 학생회장도 모르게 집행될 수 있나요? 게다가 학생회 활동과 직접 상관없는 청소용품 구입에 학생회 활동 예산을 거의 사용한 것인 타

49) '경기도 학생자치실태 및 활성화 방안 연구'(2015, 경기도교육연구원) 116면
50) '경기도 학생자치실태 및 활성화 방안 연구'(2015, 경기도교육연구원) 117면
다만, 상기 운영위 참석율과 학교장 면담율에 대한 조사는 학생대표가 아닌 교사들의 답변이라는 점에서 실제 참여율 보다 높게 조사될 우려도 있어 보인다.

	당한가요?
판단 및 조치	- 학생인권옹호관은 학생회 활동을 보장하고 지원하기 위해 초중등교육법은 학교발전기금의 일부를 학생자치기구 활동에 배정/사용하도록 하고 있음을 설명하고, 사례와 같은 예산집행은 어떠한 경우에도 허용될 수 없음을 설명함 *※ 당해 사안은 내담 학생이 학교명을 밝히기 꺼려하여 상담종결 조치한 사례임*

사례의 설명과 같이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64조 제2항 제4호는 학교발전기금의 일부를 반드시 학생복지와 학생자치활동을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경기도교육청의 경우 학교 당 100만원을 학생회 등의 지원을 위해 사용하도록 특별 예산을 학교에 교부하고 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많은 학교의 경우, 학교발전기금은 학생회 활동 지원이 아닌 학생복지 일반에 사용하는 형태로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64조 규정을 이행하고 있으며, 도교육청의 학생회 지원 특별예산도 학생회가 중심이 되어 자율적으로 사용하거나 집행하지 못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학생자치회의 학교 예산 사용>[51]

		사용하지 않음	50만원 미만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100만원 이상 ~150만원 미만	15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200만원 이상
전체		2.8	13.7	32.5	25.9	11.8	13.2
학교급	초등학교	4.7	17.9	43.4	22.6	6.6	4.7
	중학교	1.9	13.5	23.1	34.6	11.5	15.4
	고등학교	.0	5.6	20.4	24.1	22.2	27.8
학교 유형	일반학교	2.8	14.9	30.4	27.6	12.2	12.2
	혁신학교	3.2	6.5	45.2	16.1	9.7	19.4
설립 유형	공립	3.1	15.2	34.6	25.1	11.5	10.5
	사립	0.0	0.0	14.3	33.3	14.3	38.1

단위학교의 학생자치활동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학생자치회에 예산운영에 대한 자율권을 부여함으로써, 교육의 주체로서 학교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학생자치회의 예산편성권과 집행권이 학생에게 부여되었는지를 조사하였다.

학생자치회 예산편성권에 대해 조사한 결과, 70.9%가 편성권이 없다고 응답하였다. 예산편성권은 학교급에 따라 차이가 있었는데, 초등학교의 77.4%, 중학교의 73.6%, 고등학교의 55.6%사 편성권이 없다고 응답하였다. 학교유형의 경우 일반학교의 73.5%, 혁신학교의 56.3%가 편성권한을 부여하고 있지 않았다. 설립유형에 따라서는 공립학교의 73.4%가 예산편성권을 학생자치회에 부여하지 않은 것과 대조적으로 사립학교는 47.6%가 예산 편성 권한을 부여하지 않았다.

51) '경기도 학생자치실태 및 활성화 방안 연구'(2015, 경기도교육연구원) 126면

(5) 학생자치기구의 회의실 확보 현황

학생회 등 학생자치기구의 구성과 소집, 운영 등 활동에서 자율과 독립이 보장되기 위해서는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예산의 편성과 사용에 학생들의 직접적 권한이 보장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또한 이러한 재정적 보장 외에도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것이 학생회 활동의 독립공간을 보장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즉, 학생회의 물적 독립은 활동 내용의 독립을 전제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학교 현황을 보면, 아직도 많은 경우에 학생들의 독립적 자치 공간이 확보되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다.

<학생자치회의 독립공간 보장 현황>[52]

		학생자치실을 보유하고 있지 않음	타 목적실과 겸용으로 사용	독립된 전용공간	
				학생자치활동에 필요한 시설과 자료구비 미비	학생자치활동에 필요한 시설과 자료가 잘 구비됨
전체		18.9	37.7	17.0	26.4
학교급	초등학교	22.6	49.1	11.3	17.0
	중학교	19.2	26.9	28.8	25.0
	고등학교	11.1	25.9	16.7	46.3
학교유형	일반학교	17.9	40.2	16.8	25.1
	혁신학교	24.2	24.2	18.2	33.3
설립유형	공립	18.8	39.8	17.3	24.1
	사립	19.0	19.0	14.3	47.6

라. 학교 내 학생참여 보장 한계 이유에 대한 검토와 개선 방안

1) 학생참여 보장의 한계 원인과 문제점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아직 우리 교육당국과 학교는 교육기본법의 취지와 달리 학생들을 학교 교육당사자로 적극적으로 인정하는데 인색한 것으로 보인다. 즉, 학생이 아직은 미성숙한 존재라는 인식에 기반하여 학생의 학교 운영 참여권을 온전히 인정하기 보다는 성인 중심의 의사결정 과정 중에 보조적으로 확인해야 할 의견수렴 정도로 인식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되는 상황이다.

물론, 우리 학생들의 학교 운영에 대한 적극적 참여 의사가 부족한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학생들의 민주적 학교 운영에 대한 참여 부족은 초중고 교육을 떠나 대학 교육에서의 참여와 자치의 부재로까지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는 그 원인을 되짚어 보면, 학교 운영에 학생들의 참여와 자치를 소극적으로 인정해 온 우리 학교 문화에서 비롯된 것이기에, 다시 한 번 학생들에게 학교 운영의 기본적 사항부터 함께 고민할 기회를 제공하는 민주교육 시스템을 교육당국과 학교는 마련해야 할 것이다.

52) '경기도 학생자치실태 및 활성화 방안 연구'(2015, 경기도교육연구원) 127면

<학생자치의 비활성화 요인>[5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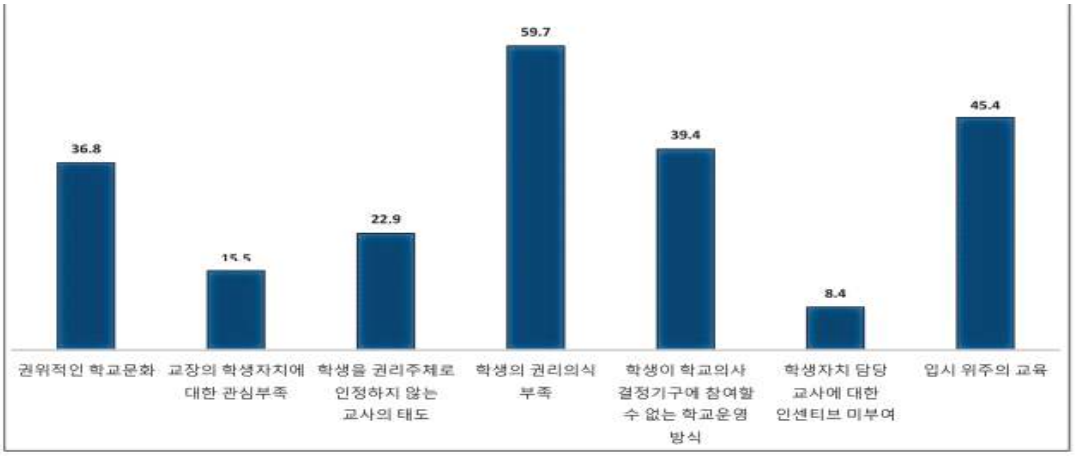

위 표는 학생자치가 활성화되지 못하는 경우, 그 이유는 무엇인지 교사들에게 조사한 것이다. 설문 결과 교사들의 59.7%는 학생의 권리의식 부족을 들었고, 입시위주의 교육이 문제라고 한 응답도 45.4%로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학생이 학교의사 결정기구에 참여할 수 없는 학교운영 방식(39.4%), 권위적인 학교문화(36.8%)에 대한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2) 학생자치 활성화를 위한 학생들의 의견[54]

학생자치회가 활성화되기 위하여 제도적으로 어떤 지원이 필요한지 학생들의 인식을 조사한 결과는, 학생자치회에 대한 충분한 예산배정이 평균 3.70점으로 가장 높았다. 그 다음으로 학생대표의 학교운영위원회 참석(3.62점), 학생자치실 마련과 정기적인 학급자치회의 확보(3.55점)의 순으로 나타났다. 학생들이 학생자치 담당교사를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 것은 3.40점으로 가장 낮았다. 학생들은 충분한 예산배정으로 학생자치활동에 자율성이 보장되기를 원하며, 나아가 자신들의 권리를 옹호할 수 있도록 학교의 중요한 정책결정 과정에 참여하기를 요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학생자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지원(학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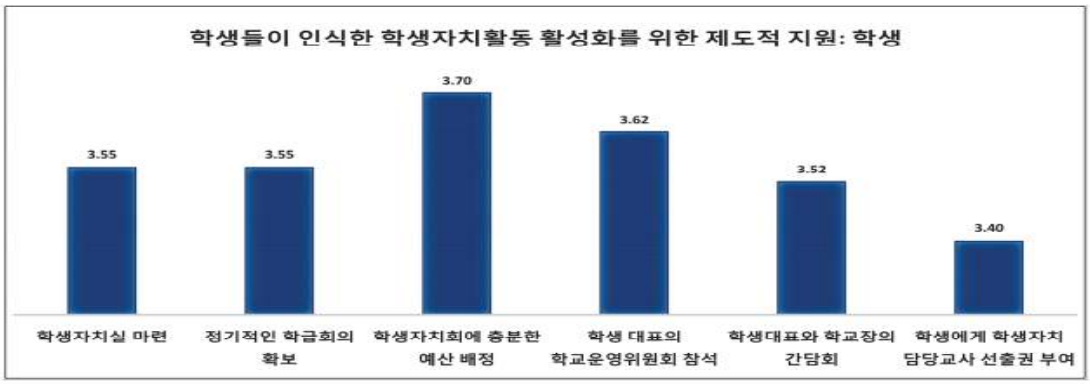

53) '경기도 학생자치실태 및 활성화 방안 연구'(2015, 경기도교육연구원) 149면
54) '경기도 학생자치실태 및 활성화 방안 연구'(2015, 경기도교육연구원) 150면

3) 학생자치 활성화를 위한 교사들의 의견[55]

	학생자치의 중요성에 대한 관리자 및 교사 연수 실시	학생자치회 운영을 위한 예산 지원 확대	학교 간 학생자치회 임원 네트워크 구축	교육과정 시수축소를 통한 학생자치 활동 시간 보장	학생자치 활동 교육과정 필수 시간으로 지정	학생자치 활동의 활성화 여부 학교평가 반영	학생자치 활동 내용에 대한 학점 부여	학생에게 학생자치 담당 교사 선출권 부여	사례수
전체	34.5	50.4	28.7	53.1	33.4	9.9	9.1	4.5	7,225

2. 학교 징계절차와 학생의 참여권

가. 학교 내 학생징계 절차

현재 학생에 대한 학교의 징계는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일반적 학생징계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별한 학생징계 절차가 있다.

즉, 초중등교육법은 학생의 교칙 위반행위 중 교육목적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학교장이 그 해당 학생을 징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학생의 교칙 위반 행위 중 '학교폭력'에 해당하는 행위는 학교폭력예방법이 정하는 특별한 절차에 따라 일명 '가해학생'을 징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56]

관련 법령	관련 조항
초중등 교육법	**제18조(학생의 징계)** ② 학교의 장은 학생을 징계하려면 **그 학생이나 보호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18조의4(학생의 인권보장)** 학교의 설립자·경영자와 학교의 장은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① 법 제18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징계를 할 수 있다.

55) '경기도 학생자치실태 및 활성화 방안 연구'(2015, 경기도교육연구원) 157면

56) 학교폭력예방법은 2004년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 학교폭력이 발생한 경우,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징계절차로도 가해학생을 징계할 수 있으나, 이러한 절차는 가해학생 징계에 중심을 둔 절차이므로 피해학생을 보호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피해학생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가해학생 역시 단순히 징계하기 보다는 교육적으로 교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학교폭력의 경우는 초중등교육법에 앞서 학교폭력예방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처리하고 있다. - 발제자의 주

	1. 학교내의 봉사 / 2. 사회봉사 / 3. 특별교육이수 4.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 5. 퇴학처분 ②학교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인격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그 사유의 경중에 따라 징계의 종류를 단계별로 적용하여 학생에게 개전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보호자와 학생의 지도에 관하여 상담을 할 수 있다.
학교폭력 예방법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① 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병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자치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치를 요청하기 전에 **가해학생 및 보호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	**제25조(징계 등 절차에서의 권리)** ① 학생의 징계는 징계사유에 대한 사전 통지, 공정한 심의기구의 구성, 소명의 기회 보장, 대리인 선임권 보장, 재심요청권의 보장 등 적법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나. 학생 징계절차에서의 학생 참여권

1) 학생징계위원회의 구성과 학생 참여권

학교 내 학생징계는 경기도교육청의 경우 학교 내 '학생선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매년 작성되는 '학생생활인권기본계획'을 통해 권고하고 있다.

그러나 학생선도위원회의 구성 과정과 구성에서는 학생들은 전혀 참여할 방법은 없다. 즉, 학생선도위원회는 학교감이 위원장이 되며, 교사, 보호자, 지역주민 등이 선도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을 뿐 학생은 선도위원으로 참여할 방법이 애초에 배제되어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학생들이 학생선도위원회에 배제되어 있는 것은 학생들의 미성숙을 이유로 한 부분도 있지만, 학생 상호간에 교칙 위반 사실이 공개되고 심의된다는 것의 부당할 수 있다는 점이 고려된 것이라고 할 것이다.

하지만, 학생들이 직접 학생징계 절차에 참여하여 심의와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이 문제라면 징계절차 사전에 학생들의 징계에 대한 적정성이나 징계 내용의 적정성을 간접적으로 확인하는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 타당할 수 있을 것이다.

2) 학생징계절차 개시 이전의 학생 참여권

학교는 학생들의 징계 절차는 최후적 교육방법으로 사용하기 위해, 징계 이전의 훈육이나 지도 방법을 교칙에 마련하기도 한다.

즉, 학생자치법정이나 학생 성찰교실 등의 제도를 통해 학생들이 학교공동체의 질서에 부합하는 행동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함은 물론 학생들 스스로가 이러한 공동체 질서 유지를 위한 상호간의 토론과 벌칙 부과 등을 논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도 한다.

3) 학생징계절차 개시 이후의 학생 참여권

징계절차가 개시된 경우에는 이제 징계 대상 학생이나 일부 직접 관련 학생을 제외하고는 '선도위원회'의 절차 진행에 참여할 수 없다.

즉, 징계 대상 학생은 교칙 위반 행위에 대한 조사결과와 기타 향후 행동 개선 등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보장받게 되고, 이 과정에 일부 참고인 학생들은 관련 진술을 선도위원회로부터 요청 받게 되는 경우에 참여하여 진술할 있는 정도이다.

관련 사례	- Y고등학교 1학년 학생의 보호자입니다. 오늘 우리 아이 담임선생님이 전화를 주셨는데, 앞뒤 설명없이 "내일 오후에 선도위원회가 열리니, 하실 말씀이 있으면 참석하세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전화를 받고 놀라고 당황스러워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자세히 여쭙지도 못하고 전화를 끊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잠시 후 생각해 보니 학교가 왜 이리 급하게 선도위원회를 개최하려 하는지, 우리 아이가 어떤 문제로 선도위원회에 회부되는지도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경황없는 상황에서 저는 내일 선도위원회에서 어떻게 의견을 진술해야 하나요? 혹시 이렇게 급하게 개최하는 선도위원회는 문제가 없는 건가요?
판단 및 조치	- 선도대상 학생과 보호자의 방어권이나 항변권을 충분히 보장하여야 합니다. - 「초중등교육법」 제18조 제2항은 "학교의 장은 학생을 징계하려면 그 학생이나 보호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에서 말하는 '적정한 절차의 이행'이란, 단순히 '통지가 있었는가'와 '의견진술 기회가 제공되었는가'로 판단되는 것이 아닙니다. - 통지는 충분한 시간을 두고 사전에 이루어졌는지, 어떠한 사유로 선도위원회에 회부하였는지를 알려 의견진술시 충분한 방어권과 항변권을 보장하였는지 등이 적정한 절차 이행이 있었는지를 판단하는 주된 사항이 될 것입니다. 이에 따라 인권조례 제25조는 "학생의 징계는 징계사유에 대한 사전통지, 공정한 심의기구의 구성, 소명의 기회보장, 대리인 선임권 보장, 재심요청권의 보장 등 적법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 사안의 경우 학교가 형식적으로는 담임교사를 통해 보호자에게 선도위원회의 개최와 의견진술권에 관하여 사전 통지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보호자가 방어권이나 항변권을 행사하기에는 충분한 절차 이행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이에 따라 학생인권옹호관은 선도위원회 개최에 대한 사전통지 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판단하여, 해당 학교장에게 긴급한 사유가 없다면 학생과 보호자의 방어권이나 항변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적정한 서면통지 후로 선도위원회 개최를 연기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그러나 제시된 사례의 경우에서 알 수 있듯이 각급 학교의 선도위원회는 학생들에게 징계의 원인이 된 내용과 항변의 방법 등 징계 절차 진행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해주지 않아, 학생의 자기방어권을 침해하는 경우가 있다.

4) 학생징계절차에서의 학생 참여권의 실질적 보장 방안

가) 학생대표의 학생징계절차 참여권 보장 방안

징계절차는 징계 대상 학생의 입장에서 중요한 프라이버시의 문제이므로, 대상자가 아닌 자를 함부로 참여케 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 하지만, 징계 대상 학생의 신분을 밝히지 않고, 관련 교칙 위반 행위에 대한 처리 문제를 학생들에게 사전에 의견을 구하는 절차를 도입하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할 것이다.

나) 징계 대상 학생의 실질적 방어권 보장 방안

많은 경우, 징계위원회의 강압적 분위기에 따라 징계 대상 학생들은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충분한 자기 방어와 향후 행동 개선에 대한 의견표명을 적절히 표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징계대상 학생들의 자기방어권 보장과 행동 개선 의견 표명 보장을 위해 학생 보호자 또는 학생이 원하는 신뢰관계인(학생이 지명한 다른 학생, 교사, 기타 인사 등)이 동석하게 하는 방안을 도입하는 것을 검토해 볼 만할 것이다.

<참고 : 경기도교육청의 각 학교별 학생선도위원회 운영지침>

■ 학생선도위원회 운영

*** 학생선도위원회 운영 지침 ***

이 지침은「초·중등교육법」제18조 및「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9조 및 제31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학생의 선도 사항을 공정하게 처리함으로써 학생이 올바른 행동과 바람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가) 관련근거

- 「초·중등교육법」제8조(학교규칙) 및 제18조(학생의 징계)
- 「초·중등교육법시행령」제9조(학교규칙의 기재사항 등) 및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제25조(징계 등 절차에서의 권리)

나) 기본방침

- 학생의 징계는 징계사유에 대한 사전통지, 소명의 기회 보장, 대리인 선임권 보장, 재심요청권의 보장 등 적법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도록 한다.
- 학생 선도 및 징계 관리의 객관성·공정성·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학교별로 학생선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 학교는 징계와 그 전후의 절차에서 징계대상 학생의 회복과 복귀를 목표로 하여야 하며, 그것을 위하여 지역사회, 보호자 등과 협력하여야 한다.
- 학생선도위원회 심의 과정 및 의결 후 그 내용에 대한 공지로 인하여 인권이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한다.
- 학생선도위원회 운영 및 회의에 필요한 보조부는 각 학교의 실정에 맞게 작성·활용하되,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 관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 이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학교별로 학생선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결정한다.
- 선도는 규정에 대한 정확한 이해 및 위반 사항에 대한 확인을 한 후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31조 제1항」에 의거[학교 내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이수, 출석정지(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 퇴학처분(고등학교만 해당)]하여 결정하고, 선도 사항은 학교장의 결재를 받는다.
- 동일 사안에 대한 선도 처분 시 무조건적인 상위단계 조치보다는 같은 단계 내에서의 가중 처벌을 고려한다.

  【예시 : 흡연 1차 적발(교내봉사 2시간), 흡연 2차 적발(교내봉사 3시간), 흡연 3차 적발(사회봉사 10시간), 흡연 4차 적발(사회봉사 20시간)】

다) 선도관리

◆ 학생선도위원회 규정

- 「초·중등교육법」(법률 제11147호, 2012.1.17), 「초·중등교육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4377호, 2013.2.15), 「경기도학생인권조례」(경기도조례 제4085호, 2010.10.5)와 본 지침에 따라 학교별 세부적인 「학생선도위원회규정」을 제정·활용한다.
- 학교 학생선도관리는 학교별 학생선도위원회규정에 따라야 한다.

◆ 학생선도위원회 구성·운영

- 구성
  - 학교단위 학생선도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과 필요한 수의 위원을 둔다.
  - 위원장은 교감, 부위원장은 학생생활지도를 담당하는 부장이 되고, 위원의 수는 학교 규모에 따라 5인 이상 10인 이하로 정하며, 교직원 중에서 교무분장 업무를 고려하여 학교장이 임명한다.
  -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학생선도처분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학교장은 필요한 경우 약간 명의 지역사회 인사 및 생활지도 관련 각계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다.
- 임무
  - 위원장은 학생선도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 유고 시 위원장의 업무를 대행한다.
  - 위원은 당해 학교의 학생선도 관련 업무에 대하여 심의한다.
- 기능
  - 학생선도에 관한 자료의 조사 분석 및 연구
  - 학생선도에 관한 기본 계획 수립을 위한 자문
  - 학생선도위원회 소위원회 운영에 관한 지도·조언
  - 기타 학생 선도에 관한 사항
- 운영
  - 학생선도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위원회는 심의 전에 반드시 학생 및 학부모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 학교 학생선도위원회에서 협의된 내용은 반드시 학생선도위원회 회의록에 기록하여 보관하고, 협의·결정된 사항은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 시행한다.
- 학생선도위원회 운영 시 유의할 점
  - 선도 사안이 발생하여 학생선도위원회를 개최하게 되면 보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
  - 학생을 징계하려면 그 학생이나 보호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치도록 한다.
  - 학생선도위원회 결과를 학생 및 보호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지도 내용을 안내한다.
  - 선도위원회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학교에 이의신청할 수 있음을 안내하여 학생 및 보호자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한다.

- 퇴학처분의 징계를 결정할 경우, 그 이전에 학생에게 소명의 기회를 주도록 노력하고 장기 위탁기관 안내 및 알선 등 학생의 학업을 중단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한다.

라) 학교단위 선도 절차

단계	내 용
사안 발생 (학교생활인권규정 위반 행위)	• 현장 인지 교사가 1차 관찰, 간단한 조사(문답) 등으로 확인하고 학교규칙 위반의 경중을 판단 • 가벼울 경우 현장 훈계·지도 또는 담임교사에게 인계 • 중대할 경우 담당교사에게 인계
관찰 면담 (위반 경중 판단)	• 담당 교사가 학교규칙 위반 학생에 대하여 정식으로 관찰하고 면담하여 징계나 훈계 여부에 대해 1차 판단 • 학생선도위원회 회부 여부에 대한 판단 시 교육적·인권적 측면 고려 - 사안의 경중을 고려하여 처리 - 각각의 사안에 대하여 공정하게 처리
조사 (중대 학교규칙 위반 사안)	• 중대 사안으로 판단될 경우 담당부서에서 정식으로 학생을 조사 • 사안에 대해 학생 자기변론서와 교사 문답서를 받아 검토 • 선도 사안에 관한 조사 과정에서의 유의 사항 - 학생에게 권리 고지 ·조사되는 사안이 학생선도위원회의 선도 및 징계 사안이 될 수 있음을 알려야 함 ·사안이 학생선도위원회 심의 대상이 될 경우라고 판단될 경우 보호자에게 알려야 함 - 강압 및 거짓 회유에 의한 조사 금지 - 인권 침해의 가능성이 있는 밀폐된 공간에서 조사하지 않아야 함 - 조사 과정에서 다른 학생들에게 고의적으로 이를 알려 해당 학생이 문제 학생으로 낙인찍히지 않도록 해야 함 - 조사 과정에서 가능한 한 2인 이상의 교사 참여 - 한 사안에 여러 학생이 관계되어 있을 경우 사안의 조작 예방을 위해 각기 다른 장소에서 동시에 조사할 것을 권장함 • 자기변론서 작성 시 인권 침해 유의 사항 - 자기변론서는 순전히 자발적 의사에 따라 작성되어야 함. 즉, 교사 혹은 타인의 강요에 의해 자기변론서가 작성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자기변론서 작성 시 반드시 자필을 요구할 필요가 없으며, 타인을 통한 대필 혹은 컴퓨터 등을 통한 작성도 가능하며, 이 경우에는 작성자의 서명이 있어야 함
1차 심의 판단 (학생선도위원회 회부 여부)	• 학생 조사 결과를 토대로 위반 행위의 경위·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학생선도위원회 회부 여부를 판단하고 결정
학생선도위원회 회부 (선도 의결 요구)	• 담당 교사는 학생선도위원회 위원장에게 학생선도위원회 소집에 관한 사항 보고 • 학생 사안에 대한 내용 일체를 서면으로 제출(개요, 비행 경위, 위반 정도, 위반 조항, 기타 학생 관련 참고 사항, 문답서 및 자기변론서 등) • 학생선도위원회 회부 시 유의 사항 : 학생선도위원회 처리 과정에 대한 사전 고지 의무 - 학생 및 보호자에게 학생선도위원회에서 사안에 대한 처리 과정, 진술을 할 권리, 질병·사고 등으로 참석이 어려운 경우 대리인을 선임하여 진술할 권리가 있음을 고지하여야 함 - 선도 의결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학생 및 보호자는 이의 제기를 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함 - 보호자가 타당한 사유로 참석할 수 없을 경우,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음을 고지 - 보호자가 타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감수하여야함을 고지

단계	내 용
학생선도위원회 소집	• 학교장이 학생선도위원회 소집 일시 및 장소 결정 후 소집 • 가급적 학생 및 보호자가 모두 참석할 수 있도록 시간과 장소를 정함
학생선도위원회 개최・진행	• 담당 교사의 사안 설명, 위원 질의・응답 • 담임・기타 참고 교사의 의견 청취, 위원 질의・응답 • 학생・보호자(법정 대리인 선임 가능) 의견 진술, 위원 질의・응답 • 참고 교사, 학생, 보호자 퇴장 • 사안 설명 및 의견 진술을 토대로 선도 여부, 양정 심의 의결(출석 위원 과반수 찬성) 및 학생 지도 방법 결정 • 학생 선도 의결 과정에서의 유의 사항 : 인권 친화적, 교육적 접근 - 징계 양정에 있어서 공정성을 확보하도록 하여야 함 - 학생 선도에 대한 의결이 징벌적 차원이 아니라 학생의 행위와 의식을 올바른 방향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대안적, 교육적 차원에서 고려되어야 함 - 학생 선도를 위한 지도 방법에서 학생의 학습권, 양심의 자유 등이 침해될 수 있는 지도 방법이 의결되어있어서는 안 됨 • 학생 선도 처리 시 유의 사항 : 학생 선도 처리 결과의 공지 금지 - 심의 내용이 제3자에게 공개될 경우 해당 학생의 명예권이 침해당할 수 있음 - 학생선도위원회의 위원은 학생선도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 과정에서 알게 된 사안 중 특히 학생의 인권에 관련된 사안에 대해 비밀을 지켜야 함
학교장 결재	• 학교장이 학생선도위원회 심의 결과 결재
학생 및 보호자 통보	• 선도 의결 결과를 학생 및 보호자에게 서면으로 통보(선도 기간에 학생이 하여야 할 일, 지도 내용, 학생 및 보호자 유의 사항, 보호자 협조 사항 등)

선도 대상 학생		학생선도위원회 개최		선도 사항 집행		추수 지도
○ 문제점 조사 ○ 학생 자기변론서 ○ 담임교사 의견서 및 증거자료 확보	→	○ 징계 수위 결정 ○ 학생 및 보호자 통지 ○ 보호자 변론기회 부여 (자기변론서 확보) ○ 선도 협의록 작성	→	○ 결정사항 학생 및 보호자 통보 ○ 가정과 연계지도 및 유관 기관 협조	→	○ 집중 관리 지도 및 지속적인 상담 활동

마) 학교단위 이의제기 절차

단계	내용
이의제기	• 선도 의결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학생 및 보호자는 이의제기를 할 수 있음 • 이때 학교는 이의 신청서를 제출토록 서식을 제공하고 이의 신청서에 사유 등을 분명히 기재하도록 함
재심의 여부 심의	• 소위원회에서 재심의 여부를 검토・심의
재심의 결정	• 재심의 여부에 대한 검토 결과에 대해 학교장 결재로 심의를 결정
재심의	• 재심의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어 결정되면 학생선도위원회에서 재심의 • 학생선도위원회 재심의 관련 유의 사항 - 학생선도위원회에 재심의 청구가 있을 경우 학생과 보호자 입장을 최대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함 - 학생선도위원회의 재심의 결과가 원 처분보다 불리한 방향으로 가중 처벌되는 결과로 내려질 수 없음 - 재심의 한 결과가 퇴학 처분(고등학생의 경우)인 경우, 학교는 학생 및 보호자에게 경기도교

	육청 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 청구를 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함
학교장 결재	• 재심의 결과에 대하여 학교장 결재 → 통보 → 선도 시행

◎ 학교단위 이의제기 시 유의할 점

- 징계 대상자 지도 과정, 징계 절차 등의 적법성 검토
- 학생 또는 보호자의 의견진술 기회 부여 및 인격 존중
- 법령 및 사유의 경중에 따라 징계를 단계별로 적용하여 개전의 기회 부여
- 징계학생 선도를 위한 학교의 교육적 지원 및 조치

바) 도교육청 재심 청구 및 재심 절차

단계	내용
재심 청구	• 학교장의 징계 처분 중 퇴학(학폭 전학 조치 포함) 조치에 이의가 있는 경우 • 퇴학 조치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퇴학 조치가 있음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둘 중 먼저 도래한 기한까지 청구 마감) • 학생 또는 보호자가 서면으로 경기도교육청에 징계 재심을 청구할 수 있음 • 서면으로(①청구인의 이름, 주소 및 연락처 ②피청구인 ③퇴학 조치가 있음을 안날 ④청구 취지 및 이유 기재) 징계조정위원회에 제출
재심	• 징계조정위원회는 청구인 및 피청구인 또는 관련 교원에게 심사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함 • 해당 학교는 3일 이내에 관련 증빙 자료 사본을 즉시 제출해야 함 • 징계조정위원회에서 심사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출을 요구할 경우 청구인과 피청구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제출하여야 함 • 징계조정위원회에서 출석을 요구한 경우 청구인과 피청구인은 출석, 진술해야 함. (단, 청구인은 합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서면 진술 가능) • 위원은 퇴학 조치된 학생 또는 그 보호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해당 퇴학 조치에 관여한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건에서 제외됨 • 청구인은 위원이 불공정한 결정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하고 기피를 신청할 수 있으며, 기피 신청이 있는 때에는 징계조정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
재심 결정 → 청구인 및 피청구인에게 송부 → 시행	

사) 행정심판

단계	내용
행정 심판 (징계 재심에 대한 불복)	• 징계조정위원회의 심사 결정에 이의가 있는 청구인은 그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행정 심판을 제기할 수 있음

※ 학생선도위원회 관련 서식

- 학생 자기변론서, 목격자 확인서, 사실 확인서(교사용), 학생 사안 조사 보고서, 학생 선도위원회 회의록, 학생 선도 대장, 조치 결과 통보서, 이의 신청서, 재심 청구서, 징계(퇴학) 심사 자료 등
- 위의 서식은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 - 과별누리집 - 학교인권지원과 - 과자료실 - 82번에 탑재

Ⅵ 제5차 아동권리포럼

제5차 아동권리포럼
2016. 10. 11. 13:00-15:00 페럼타워 세미나실 R2

보건복지부위탁 2016년도 아동인권증진사업
제5차 아동권리포럼

2016. 10.

Ⅰ 제5차 아동권리포럼 개요

□ 제5차 포럼 개요

- 일시: 2016년 10월 11일 화요일 13:00 - 15:00 (2시간)
- 장소: 페럼타워 2층 세미나실 R2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5길 19)
- 주제: 의료절차에서의 아동 참여와 의견청취권

□ 내 용

① 전문가 발제

[발제1] 의료절차에서 아동의 의견표명/청취권
(곽영호 교수, 서울대병원)

[발제2] 의료절차에서의 아동참여와 의견청취권
(김현수 교수, 명지병원)

② 자문위원 질의응답을 통한 토의

- 발제자 발표를 통한 실태 및 논의의 필요성 인식
- 의료절차에서의 아동참여와 의견청취권을 법·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도입방법 및 방향성 모색

③ 제6차 포럼 세부내용 논의

- 발제자 섭외 및 포럼 진행 방법
- 주제: 아동학대사건 처리절차에서의 아동참여와 의견진술권 보장

II-1	의료절차에서 아동의 의견표명/청취권

곽 영 호 (서울대학병원 교수)

의료 절차에서 아동의 의견 표명/청취권

국제아동인권센터 아동권리포럼(5차) 발제
2016년 10월 11일
서울대병원 응급의학과 곽영호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 Article 12
  - 1. States Parties shall assure to the child who is capable of forming his or her own views the right to express those views freely in all matters affecting the child, the views of the child being given due weight in accordance with age and maturity of the child.
  - 2. For this purpose, the child shall in particular be provided the opportunity to be heard in any judicial and administrative proceedings affecting the child, either directly, or through a representative or an appropriate body, in a manner consistent with the procedural rules of national law.

아동의 의견 표명 & 청취권

- 의의
  - 아동의 의사를 존중하고 배려
  - 아동의 권리를 구체화/실현하기 위한 핵심
  - CRC 제3조 제1항
    -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실현시키는 중요한 수단
- 협약 당사자인 우리나라에서도
  - 적극적인 의지와 대응이 필요

박주영. 가족법 연구 23권 2호 2009

말씀드릴 내용

- 우리나라 법률에서는?
- 일반적인 의료 절차에서는?
- 응급상황에서는?
- 임상 실험에서는?

1. 우리나라 법률에서는

- 의견청취권과 관련 있는 규정
  - 가사소송규칙 제100조
    - 제99조 제1항(친권자의 지정과 변경에서 부모 중 일방이 제기한 경우)에 규정한 청구가 있는 경우에, 자(子)가 **13세 이상**인 때에는, 가정법원은 심판에 앞서 그 **자(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다만, 자(子)의 의견을 들을 수 없거나 자(子)의 의견을 듣는 것이 오히려 자(子)의 복지를 해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8.12.4, 2013.6.5; 시행일 2013.7.1]

2. 일반적인 의료 절차에서는?

- (특히 치료 과정에서) 기본은 informed consent
  - '충분한 설명에 의한 동의'
    - assent(승낙): 인지의 의미
    - consent(동의): 허용의 의미가 포함
- '동의'가 의미하는 것
  - 환자의 자율성(autonomy): 자유로운 결정권 보호
  - 인간존중: 원하지 않는 처치를 거절할 권리 보호

동의 과정에서 중요한 3가지 요소

- (충분하고 숨김 없는) 의료인의 설명
  - **소아에게** 어디까지 설명할 것인가?
- 환자의 결정 능력
  - **소아가** best interest에 맞게 결정할 능력이 있는가?
- 결정을 위한 자유의사
  - **소아에게** 강요나 위압, 조작이 없는 상태인가?

소아의 특수성

- 우리나라 민법에 의하면
  - 미성년자는 독자적으로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없음
  - 원칙적으로 법정대리인의 동의/허락을 얻어야
    - 부모(친권자)나 친척 또는 후견인
- 법률 행위를 할 수 있는 법적인 권리는 없으나
  - 자율성/의사결정능력이 **다양한 정도**로 발달되어 있음
    - (벌어지는) 일의 결과가 본인에게 미칠 영향을 판단 가능
  - 자신의 최선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을 수도

아이들의 연령/성숙도를 고려

- 신생아 혹은 영유아
  - 소통 자체가 어려운 경우
- 학동전기의 소아
  - 소통은 가능하나 결정 능력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
- 학령기 소아(초등학생)
  - 소통 가능, 자기결정 능력도 발전 중
- 청소년(중학생 이상)
  - 성인 수준에 도달한 아이들이 있음

원칙적으로는

- 의료 행위에 앞서 소아에게 제공할 정보
  -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방법 사용
  - 꼭 알아야 하는/알고 싶어하는 내용 포함
  - 설명은 반드시 필요
- 자기 결정권이 없는 소아라도
  - 이에 대한 assent를 구하는 것이 바람직
- 원만한 결정을 위해서는
  - 가족, 소아와 모두 충분한 시간의 토론/협의가 필요

부모와 아이의 의견이 다르다면?

- 고려해야 할 사항
  - 소아의 자기결정 능력
    - 몇 살이 되면 아이의 자기결정 능력을 인정해야 할까?
      - 19세?, 15세?, 13세?, 11세?
  - 결정의 중대성: 결정이 환자의 생명을 위협할 정도인가?
    - 중대한 결과 초래하지 않음: 환자의 최선의 이익에 따라
  - 중대한 결과를 초래한다면?????
    - 여호와의 증인, 부모가 수혈 반대, 아이가 원하면?
- 협의/전원/전문가와 상의/법률적 자문……

3. 응급상황에서는?

- informed consent 조차 간략/생략되기 쉬움
  - 환자의 최선의 이익을 위한 의사의 양심적인 판단
  - 보호자가 없는 상황에서도 생명을 구하는 처치 가능
    - 의사 2인의 동의로 응급처치 가능
- 현실적으로는
  - 일반적인 응급 상황: informed consent 시간 있음
  - True emergency?: 구두 동의도 어렵다
    - 소아 환자에 대한 고려: 가족 참여에 대한 배려 정도

4. 임상 연구에서는?

- 사회적 약자는 임상 실험 대상에서 일반적으로 제외
  - 피고용인, 학생, 장애인 등……
  - 아이들은?
- 임상 연구의 도덕성 유지: 기관별 IRB(윤리위원회)
  - IRB를 통과하지 않으면 연구 진행이 불가능함
  - 소아의 의견 청취권이 부분적으로 지켜짐
    - 연구 참여의 consent는 부모/보호자가 하지만
    - 연령/성숙도에 맞는 설명/승낙서 제출 필요

서울대병원 IRB 규정

●만 7세 미만

대리인의 동의와 함께, 승낙 면제 또는 구두 승낙 (연구에 따라)

→ 승낙 면제: 별도의 문서 제출 필요 없음.

→ 구두 승낙: 아동 이해 가능하게 구성한 연구 설명문 제출

●만 7세 이상 ~ 12세 미만(초등학생)

대리인의 동의와 함께, 소아 연구대상자의 서면 승낙(assent)

→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글/그림으로 작성된 승낙서 제출

●만 12세 이상 ~ 19세 미만(중학생 이상)

대리인의 동의와 함께 소아 연구대상자의 서면 동의

대상자 본인과 대리인(연구대상자와의 관계 명시)이 각각 서명

7세 이상 12세 미만 승낙서 예시

1. 이 연구는 왜 하나요? 임상연구의 목적 간단히 기술

2. 내가 꼭 참여해야 하나요?

전국에서 *****을 가진 **명의 어린이가 이 연구에 참여할 것입니다.

연구원 선생님은 여러분이 그 어린이들 중 하나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여 참여하고 싶은 지를 묻는 것입니다.

원하지 않으면 참여하지 않아도 되며, 참여하지 않아도 여러분에게 해가 되는 일은 없습니다.

참여했더라도 중간에 마음이 바뀌었다면 언제든지 하고 싶지 않다고 해도 됩니다.

3. 내가 연구에 참여한다면 어떠한 일을 하나요?

어린이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간단히 기술. 연구에 참여하면, 연구원 선생님이 여러분에게 ********을 할 것입니다.

4. 이 연구 때문에 불편하거나 힘들 수도 있나요?

이 연구에 참여하면 ***이 피곤하거나 힘들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5. 이 연구가 저에게 어떠한 도움이 되나요?

이 연구는 여러분에게 ******** 도움을 줄 수도 있으며, 직접적인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 연구가 나중에 여러분과 같은 어린이들에게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6. 궁금한 것이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연구에 대해 궁금한 것이 있거나 읽고 나서 이해가 안 가는 것은

무엇이든 연구원 선생님이나 부모님이나 보호자에게 설명을 해 달라고 하십시오.

아동참여와 의견청취권 보장을 위해

- 사회적 비용의 문제
  - 인력, 시간, 장비(문서/프로토콜)
    - 보험으로 reimbursement 되지 않을 것
- 효용성의 문제
  - 환자의 최선의 이익과 부합할까?
    - 더 나은 결과(생존/완치/호전)을 보장하는지?
- 법률적 문제
  - 민법/가족법과 상충되지 않는지?
  - 아이의 의사를 따를 때 면책이 될까?

Ⅱ-2

의료절차에서의 아동참여와 의견청취권

김 현 수 (명지병원)

의료절차에서의 아동참여와 의견청취권

김 현 수

임상에서 만나는 사례들

부적절한 치료거부 사례
부적절한 과잉치료 사례

부적절한 치료거부 사례

- 반복적 자살시도 청소년의 입원이나 집중적인 치료를 거부하는 경우
- 적절한 약물치료가 필요한데 약물치료를 거부하는 경우
- 종교적이거나 부모의 신념으로 인해 치료자체를 거부하는 경우
- 치료가 필요한 아이인데, 부모의 방임으로 인해 데리고 오지 않는 경우
- 치료비용으로 인해 치료를 거부하는 경우
- 부모 자신이 장애가 있거나 질병이 있는 상태에서 질병의 의미를 잘 이해하지 못하여 치료를 거부하는 경우

부적절한 과잉치료 사례

- 환아의 호소와 무관히 환아의 질병을 호소하며 치료를 주장하는 사례 (Munchausen by Proxy)
- 법적인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아이에게 질병이 있음을 호소하는 사례 (자녀를 통한 이차 이득추구)
- 부모의 방임으로 인해 병원입원이나 치료가 지나치게 연장될 때 (부모의 일정이나 시간, 양육의 부담으로 인해 아이의 입원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정서-행동적 문제 그리고 질병의 특성

- 생명의 긴급성 (응급성)이 없음으로 인해 치료의 방기가 더 자주 발생한다
- 비의학적 신념에 의한 부모와 주변의 판단이 신체질환보다 더 작용한다
- 부모 자신이 가해자일 경우 (아동학대, 성추행 혹은 성폭력)가 많아 치료가 거부된다
- 정상과 비정상의 경계가 모호하고, Event-Related Effect의 경계가 불분명하다 (학대로 그런 것인지, 원래 있던 증상인지)

아동참여와 의견청취

아동

- 아동에 대한 치료는 거의 부모에 의해 결정된다
- 아동 본인의 치료에 대한 요구는 드물다
- 아동의 치료에 대한 거부는 흔하다
- 강제적인 아동에 대한 치료는 상대적으로 드물다

청소년

- 청소년들의 치료에 대한 요구는 가혹 있다 그러나 부모가 반대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 청소들의 치료에 거부는 흔하다
- 청소년들의 의지에 반하는 부모의 치료적 요구는 흔하다
- 청소년들의 정신과 입원 절차는 2/3는 강제적이다

부적절한 과잉 혹은 치료거부 사례의 부모에 대한 평가

- 아동학대의 경우, 양육에 부적합한 부모인가를 평가하는 절차가 아주 어렵고, 시간이 걸린다.
- 양육에 부적합한 부모라고 하는 의견을 내기가 어렵고, 아동보호전문기관의 도움을 받기란 생각보다 쉽지 않다
- 부모 평가를 신청하거나 제안할 수 있는 '친권' 소실이나 박탈제도가 지금보다 더 용이해야 한다

동의절차를 진행하는 교육

- 기본적으로 아동에 의한 동의보다 부모의 동의를 앞세우는 문화가 지배적이고, 아동의 동의는 참조될 수는 있지만 활용되지는 않는다
- 특히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대한 이해는 상당히 대립적이고 갈등요소가 많다. 청소년의 문제행동은 질병과 규범, 문화의 경계를 정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
- 청소년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구하지만, 부모에 의한 권리가 행사되는 경우가 더 많다.
- 즉 아동, 청소년에 대한 설명, 동의 여부보다 부모의 권한이 더 강력히 작용하는 것이 현실

최근의 현실

- 친권을 행사해야하는데, 친권자가 없는 경우도 많다
- 친권자가 학대자가 되었을 때, 치료를 지속하기 어려운 조건들이 많다.
- 친권자가 부적합했을 때 이를 대리해줄 다른 확대가족이 나타나지 않아 치료의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울 때가 많다
- 친권자가 강제적으로 입원을 원할 때 입원을 거부하기도 쉽지 않다

서비스의 사각지대 혹은 이전투구

- 친권에 대한 박탈이나 소실 혹은 부모의 구속 등으로 아이에게 서비스가 전달될 경우, System of care가 구현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 후견인 선정에 따른 위탁가정에 기반하여 아이에게 전달되어야 할 서비스가 조정이 잘 되어야하는데, 서비스가 분절될 때가 많고 아이가 여러 번의 조사나 지원절차를 받아야하는 경우가 많다
- 이런 상황이다보니 부적합한 양육자라도 책임을 부모에게 넘기는 경우가 많다
- 그런 점에서 외국의 사례와 비교될 수 없는 서비스가 많다

친권의 남용 혹은 방임과 아동의 최선 이익 (The Best Interest of the Child)

- parens patriae 원칙이 없는 우리 나라에서는 가정의 권한이 사회의 권한보다 압도적으로 강하다
- 부모의 친권 남용 : 부모의 권한이 강해서, 적절한 치료를 부모가 거부하면 접근하기가 쉽지 않다. 특히 생명을 좌지우지하지 않는 질환에서는 더욱 그렇다.
- 아동의 최선의 이익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어렵다.
-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할 때, 치료가 중단되는 경우가 많다. 한시적 지원으로 인해, 서비스의 최종적 결과를 알 수가 없다

부모의 치료거부에 대한 입법 필요성에 대한 연구 (2012, 윤진수, 서울대, 현소혜 서강대)

- 첫째, 부모의 치료거부로 말미암아 자녀의 생명 또는 신체에 해악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국가가 개입할 필요가 있다.
- 둘째, 국가의 개입은 필요최소한의 한도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구체적인 사안에서 필요한 때마다 가정법원이 부모의 의료행위 동의에 갈음하는 허가 심판을 내리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 셋째, 가정법원의 부모의 의료행위 동의에 갈음하는 허가 심판만으로는 자녀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유효적절한 보호책이 되지 못할 경우 가정법원은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여 친권의 행사를 일부 제한 또는 일시정지하고, 이 때에는 친권의 행사를 대행하는 특별대리인 또는 후견인을 선임하여야한다.
- 넷째, 아동복지법에 아동복지전담기관의 장, 아동복지시설의 장 및 학교장과 의료인이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검사에게 법원에 동의를 갈음하는 허가 또는 친권 제한의 선고를 청구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 다섯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부모가 자녀에 대한 치료의 동의를 거부하더라도 급박한 경우에는 의료인이 동의 없이도 치료를 할 수 있게 하는규정을 두는 것이다.

부록 노르웨이 「환자권리법(Patients' Rights Act)」

노르웨이는 각 개별법 특성에 맞추어 '아동의 참여권'과 '아동 최상의 이익 원칙'을 반영한 특성을 찾아볼 수 있는데, 의료절차 역시 예외는 아니다. 모든 국민이 환자로서의 권리를 보장받으며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음을 명시하는 노르웨이 「환자권리법(Patients' Rights Act)」은 각 환자의 생명과 인간 존엄성에 대한 존중, 환자와 의료서비스 제공자 간의 신뢰성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데, 특히 아동의 발달적 특성에 따른 구체적인 연령(12세/16세/18세)을 제시하여 보다 실효적으로 아동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기여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노르웨이 「환자권리법」과 관련하여 2015보건복지부연구용역 유엔아동권리협약을 위한 법적 제도화 방안 연구(보건복지부·국제아동인권센터, 2016)[57]에서 발췌한 내용을 제시한다.

〈표 19〉 노르웨이 「환자권리법(Patients' Rights Act)」의 구성과 주요 내용

구성	주요 내용
제1장 일반 조항	제1-1조. 법의 목적 제1-2조. 법의 적용 대상과 범위 (Scope of the Act) 제1-3조. 정의
제2장 건강검진과 의료시설 이동(변경)에 관한 권리	제2-1조. 필수적인 건강관리에 관한 권리 제2-2조. 검진에 관한 권리 제2-3조. 재검진에 관한 권리 제2-4조. 병원을 선택할 권리 제2-5조. 의료서비스에 있어 개별 계획에 관한 권리 제2-6조. 이동에 관한 권리 제2-7조. 행정법의 적용
제3장 참여와 정보에 관한 권리	제3-1조. 참여에 관한 환자의 권리 제3-2조. 정보에 관한 환자의 권리 제3-3조. 환자의 최근친에게의 정보 제공 제3-4조. 미성년 환자에 관한 정보 제공 제3-5조. 제공되는 정보의 양식 제3-6조. 정보보호에 관한 권리
제4장 아동의 의무	제4-1조. 동의서 작성에 관한 일반 규정 제4-2조. 동의서 양식에 관한 규정

57) 보건복지부, 국제아동인권센터 (2016). 2015 보건복지부연구용역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을 위한 법적 제도화 방안 연구, pp55-pp62.

	제4-3조. 동의서 작성 가능 대상에 관한 규정 제4-4조. 16세 미만 아동의 동의서 작성에 관한 규정 제4-5조. 동의서 작성에 어려움이 16-18세 청소년의 동의서 작성에 관한 규정 제4-6조. 동의서 작성에 어려움이 있는 성인의 동의서 작성에 관한 규정 제4-7조. 법적 무능력 환자(patients who have been declared legally incapacitated) 제4-8조. 동의서 작성에 어려움이 있음과 동시에 최근친이 없는 환자 제4-9조. 특수한 상황에서 건강관리를 거부할 수 있는 환자의 권리
제5장 의료기록에 접근할 권리	제5-1조. 의료기록에 접근할 권리 제5-2조. 의료기록의 정정과 삭제(Correction and erasure of medical records) 제5-3조. 의료기록 교환 및 대여
제6장 아동에 관한 특별한 권리	제6-1조. 건강관리에 관한 아동의 권리 제6조 2항. 의료기관에서 머무는 동안 부모와 함께 할 권리 제6조 3항. 의료기관에서 머무는 동안 아동의 활동성에 관한 권리 제6조 4항. 의료기관에서 머무는 동안 교육 받을 권리
제7장 불편사항	제7-1조. 권리의 충실한 이행에 관한 요청 제7-2조. 불편사항 제7-3조. 불편사항 작성 양식과 내용 제7-4조. 의무 위반 평가에 관한 요청 제7-5조. 불편 및 요청사항에 대한 응답의 기한 제한 제7-6조. 행정법의 적용
제8장 환자 옴부즈맨	제8-1조. 목적 제8-2조. 옴부즈맨 체계의 기능과 책임 제8-3조. 환자 옴부즈맨 이용에 관한 권리 제8-4조. 요청에 대한 결정사항 제8-5조. 환자 옴부즈맨의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제8-6조. 건강 서비스 시설에 대한 환자 옴부즈맨의 접근권 제8-7조. 환자 옴부즈맨의 책무성 제8-8조. 규제사항
제9장 법의 시행 및 기타 관계 법령의 개정	제9-1조. 시행일 제9-2조. 기타 관례 법령의 개정

국내에는 현재 환자의 권리만을 보장하는 개별법은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므로 법안 간의 직접적인 비교·대조는 어렵다. 하지만 의료 영역에 있어서의 아동 권리는 아직 큰 관심을 기울이지 못하는 취약한 영역이라는 점을 고려하였을 때, 환자권리법에서의 아동 권리 보장을 위한 장치들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노르웨이 환자권리법의 시사점을 정리·제시하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환자 권리 보장에 있어 비차별의 원칙을 매우 세심하게 고려하여 기술하고 있다. 아동을 포함하여 특수성을 가진 대상들이 그들이 가진 특수성으로 인해 환자로서의 권리를 충분히 보장받지 못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가능한 모든 환자들이 차별받지 않고 그들의 권리를 충분히 보장받을 수 있도록 환자 권리를 서술하고 있다. 예를 들면, 정보 제공 양식에 관한 규정을 담고 있는 제3조 제5항에서, "환자에게 제공되는 정보는 정보를 제공받는 개인의 연령, 성숙도, 경험, 문화 및 언어적 배경을 충분히 고려하여 그에 맞추어 제공되어야 한다. 의료인(health personnel)은 환자가 제공받은 정보의 내용과 정보의 중요성을 이해하였는지 가능한 보장해야 한다." 라고 규정함으로써 아동은 물론 다른 특수성을 가진 대상의 권리 또한 모두 포괄하고 있다. 더불어 18세 미만의 모든 아동 환자에 관한 충실한 책임 이행 사항을 부모 또는 부모로서 책임이 있는 성인에게 반드시 정보로 제공하게 함으로서 18세 미만 아동에 관한 의료 보장 및 보호를 강조하고 있다.

둘째, 의료영역에서의 아동 참여권 실현을 위한 노력들을 곳곳에서 살펴볼 수가 있다. 예를 들면, 의료 서비스에 관한 동의에 있어 16세를 기준으로 하여 행위능력을 부여함으로써 아동 당사자가 자신의 의사에 따라 자신과 관련된 의료 서비스에 관해 직접 동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12세 이상의 아동에게는 의견을 표명할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의료 영역에서의 아동 참여권 실현을 법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12세를 연령 기준으로 제시 한 것이 아동 참여권 실현에서의 제약을 가하는 요소일 수 있으나 의료 영역에서의 아동 참여권을 간과하지 않고 규정하고 있다는 것 자체는 긍정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아동 의견 청취에 있어 아동의 연령이 증가하고 성숙해 감에 따라 아동 의견의 중요성 또한 증가한다는 부분은 발달하고 있는 아동의 특성을 고려한 법적 장치라고도 해석할 수 있다(〈표 20〉의 제4조 3항~5항 참조).

셋째, 발달적 특수성에 관한 특별한 고려를 필요로 하는 아동 환자의 권리에 관하여 〈제6장.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의 권리〉에서 자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제6장.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의 권리〉에서는 아동을 존엄한 생명으로 여기고 마땅히 건강관리를 받아야 하는 대상이자 권리 주체자임을 기술하고 있다. 또한 의료 시설 내에서 아동이 머물게 될 경우 제약받을 수 있는 부모와 함께 할 권리, 활동하고 발달을 위한 자극을 제공받을 권리, 연령에 따른 적합한 교육을 받을 권리를 명시하여 법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이는 보호자와 함께 하는 것이 인간의 그 어느 발달 시기보다 중요하게 여겨지는 아동기에 대한 이해와 활동하고 탐구하고 학습하며 발달하는 아동의 발달적 특성을 법안에 반영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표 20〉 참조).

의료 영역에서의 아동 권리는 아동의 기본적인 생명권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으며 협약 6조에서 제시하는 생명, 생존 및 발달의 권리와도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아동과 관련된 사안 전반에서의 아동 참여권 실현과도 이어져 있다. 그러나 국내 의료 관련 법안들 중에서 아동 혹은

아동 환자를 위한 특별한 보호를 기술하는 조항은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가장 이상적인 안은 노르웨이와 같이 환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보편적인 법안을 마련하고 그 안에서 아동 대상성을 규정하여 특별 보호 항목을 포함시키는 것이 될 수 있다. 이것이 어렵다면 현존하는 의료 관련 개별법 내에서 아동 생명 존중과 아동 환자의 권리 및 보호와 관련된 사항을 반영할 수 있다. 그리고 그 내용에 있어 아동발달에 대한 이해와 의료 정보 제공 및 보호, 아동 참여권 존중의 주요 사항들을 담을 수 있다.

〈표 20〉 노르웨이 「환자권리법(Patients' Rights Act)」 중 아동 관련 내용

한글 번역	원 문
제3조 3항. 환자의 최근친에게의 정보 제공 • 환자가 16세 이상이고, 신체장애, 기타 정신적 장애, 지적 장애, 노인성 치매 등의 이유로 인하여 자신의 안위에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결정을 내리는 것에 명백한 어려움이 있을 경우, 환자와 환자의 최근친 모두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	Section 3-3. Information to the patient's next of kin • If the patient is over 16 years of age and obviously incapable of safeguarding his or her own interests due to a physical or mental disorder, senile dementia or mental retardation, both the patient and his or her next of kin are entitled to information pursuant to the provisions of section 3-2.
• 청소년은 의료기관 내에 머무는 동안 교육법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 내에서 교육받을 권리가 있다.	• Young people are entitled to tuition while staying in a health institution to the extent that this is in accordance with the Education Act.
• 취학 전 아동은 의료기관 내에 머무는 동안 교육법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 내에서 특별한 교육적 지원을 받을 권리가 있다.	• Pre-school children are entitled to special educational assistance while staying in a health institution to the extent that this is in accordance with the Education Act. Amended by the Act of 21 December 2000 No. 127 (in force from 1 January 2001 pursuant to the Decree of 21 December 2000 No. 1359).
제3조 4항. 미성년자 환자에 관한 정보 제공 • 환자가 16세 미만일 경우, 환자와 환자의 부모 또는 부모로서 책임이 있는 성인 모두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 • 12~16세의 환자일 경우, 환자가 자신의 의료적 정보를 부모 또는 부모로서 책임이 있는 성인이 전달받는 것을 원하지 않을 경우, 환자의 의사를 존중하여 보호자에게 환자와 관련된 의료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	Section 3-4. Information when the patient is a minor • If the patient is under 16 years of age, both the patient and his or her parents or other persons with parental responsibility shall be informed. • If the patient is between 12 and 16 years of age, information shall not be given to his or her parents or other persons with parental responsibility when the patient, for reasons that should be respected, does not wish them to receive such information.

• 그러나 18세 미만인 환자의 모든 부모 또는 부모로서 책임이 있는 성인에게 부모로서의 책임을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는 정보가 제공 되어야 한다. • 아동복지법 제4조8항 또는 제4조12항에 근거하여 16세 미만의 아동이 아동복지서비스를 받을 때 그에 상응하여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사항을 적용한다.	• However, information that is necessary to fulfil parental responsibility shall be given to parents or other persons with parental responsibility when the patient is under 18 years of age. • If the child welfare service has taken a child under 16 years of age into care pursuant to section 4-8 or 4-12 of the Child Welfare Act, the first, second and third paragraphs shall apply correspondingly to the child welfare service.
제3조 5항. 제공되는 정보의 양식 • 환자에게 제공되는 정보는 정보를 제공받는 개인의 연령, 성숙도, 경험, 문화 및 언어적 배경을 충분히 고려하여 그에 맞추어 제공되어야 한다. • 의료인(health personnel)은 환자가 제공받은 정보의 내용과 정보의 중요성을 이해하였는지 가능한 한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	Section 3-5. The form of information • Information shall be adapted to the qualifications of the individual recipient, such as age, maturity, experience and cultural and linguistic background. The information shall be provided in a considerate manner. • As far as possible, health personnel shall ensure that the patient has understood the contents and significance of the information. An entry concerning the information that has been provided shall be made in the patient's medical records.
제4조 3항. 의료적 서비스에 관한 동의가 가능한 대상에 관한 규정 • 다음의 대상은 의료 서비스 동의에 관한 권리가 있다. ① 법률상 성인이고 행위능력 있는 사람은 특별규정이 그들의 의사능력을 제한하지 않는 이상 ② 16세 이상인 미성년자는 특별규정이나 의료행위의 성격상 그들의 의사능력을 제한하지 않는 이상 • 신체장애, 기타 정신적 장애, 지적 장애, 노인성 치매 등의 이유로 인하여 동의서의 내용을 이해하는데 명백한 어려움이 있을 경우, 전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동의에 관한 권리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	Section 4-3. Who has competence to give consent The following persons have the right to consent to health care: a) persons of full legal age and legal capacity, unless special provisions dictate otherwise, and b) minors over 16 years of age, unless special provisions or the nature of the measure dictate otherwise. • Competence to give consent may cease to apply wholly or partly if the patient, on account of a physical or mental disorder, senile dementia or mental retardation, is clearly incapable of understanding what the consent entails.

• 제4조 3항 ②의 사항에 있어 환자의 동의 능력은 의료서비스 제공자가 결정한다. 의료인(health personnel)은 환자의 연령, 정신적 수준, 성숙도, 경험에 기반하여 환자 본인이 자신의 건강과 관련된 사안에 대하여 동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 The health care provider shall decide whether the patient lacks competence to give consent pursuant to the second paragraph. Based on the patient's age, mental state, maturity and experience, health personnel shall do their best to enable the patient himself or herself to consent to health care, cf. section 3-5.
• 동의 능력에 관한 결정에 있어 결정에 대한 이유는 진술 혹은 서면으로 제출되어야 하며, 가능하다면 즉각적으로 환자와 환자의 최근친에게 알려져야 한다. 만약 환자가 최근친이 없을 경우, 제4조8항에 제시되어 있는 의료인(health personnel)에게 통보되어야 한다.	• A decision concerning lack of competence to give consent shall state the reasons for the decision and shall be given in writing, and if possible shall immediately be present to the patient and his or her next of kin. If the patient has no next of kin, the decision shall be present to health personnel as stated in section 4-8.

Ⅶ 제6차 아동권리포럼

제6차 아동권리포럼
2016. 12. 07. 10:00-12:30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

보건복지부위탁 2016년도 아동인권증진사업
제6차 아동권리포럼

2016. 12.

I 제6차 아동권리포럼 개요

□ 제6차 포럼 개요

- 일시: 2016년 12월 7일 수요일 10:00 - 12:30 (2시간30분)
-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211호)
- 주제: 다학제적 접근을 통한 아동보호체계에서의 아동의견청취권

□ 내 용

- 주제발표

- 발제자의 경험적 사례를 기반으로 하는 아동보호체계에서의 아동의견청취의 필요성

[발제] Listening to Children from LONGSCAN

(Dr. Desmond Runyan, Executive Director, The Kempe Center)

- 국내전문가 의견청취

- 아동보호체계와 연계되는 국내 각 분야의 실태 확인 및 현실적으로 협력 가능한 방안에 대한 의견 제시

[발제1] LONGSCAN과 아동의견청취에 대한 의견

(곽영호 교수, 서울대병원)

[발제2] 위기아동 보호와 학교의 역할에 대한 의견

(김민태 학생인권옹호관, 경기도교육청)

[발제3] 아동보호재판에서의 아동의견청취 현황

(권양희 부장판사, 서울가정법원)

[발제4] 아동보호체계와 아동의견청취

(이준석 사무관, 보건복지부)

II -1

Listening to Children from LONGSCAN:
- What 12-year olds tell us about their maltreatment experience?

Desmond Runyan (Executive Director, The Kempe Center)

Overview of LONGSCAN

- LONGitudinal Studies of Child Abuse & Neglect
- 5 distinct studies
  - East
  - South
  - Midwest
  - Northwest
  - Southwest
- UNC Coordinating Center
- Common measures, coding, training, data entry

The Samples: A Continuum of Risk

- *East*: 282 "at risk" children from inner city pediatric clinics (e.g., Possible FTT, Drug Exposed)
- *South*: 243 children from "at risk" study– 1/3 reported
- *Midwest*: 245 children, 2/3 maltreated, 1/3 from same neighborhoods
- *Northwest*: 254 children with CPS reports (moderate risk) before 4 years of age
- *Southwest*: 330 children in foster care prior to age 4
- Total N=1354

Measurement

- Guided by Social-Developmental-Ecological Theory *(NRC, 1993; Bronfrenbrenner, 1989; Hawkins & Catalano, 1996)*
- Domains Assessed
  - Child/Youth: Characteristics, Functioning
  - Caregiver: Characteristic, Functioning
  - Family Microsystem: Home environment, Functioning
  - Macrosystem: Neighborhood, School, Support

Context & Assessments

Measurement: Methods

- Multiple Sources & Methods for Assessing Domains (Child, Caregiver, Family, Community)
  - Reports/Ratings/Questionnaires
    - Child/Youth
    - Caregiver
    - Teacher
  - Performance
    - Child/Youth
  - Situational tests/samples
  - Official Records (CPS)
- Presentation of Measures
  - Interview & A-CASI

LONGSCAN Looks at Maltreatment

- Expand Definitions & Methods
- Look at Maltreatment
  - Physical & Sexual Abuse, Neglect, Emotional, Witnessed Violence (home and community)
  - Beyond Occur: Yes/No
  - Multidimensional (focus on degree or extent)
  - Beyond CPS Report
    - Youth (Age 12) Self-Report

Moving Beyond CPS Report

- The Child/Youth perspective—what they tell us about:
  - Physical Abuse
  - Sexual Abuse
  - Neglect
  - Psychological Maltreatment
  - Violence Exposure (Community and Home)

Indicators of Physical Abuse

- CPS Reports (Allegations & Substantiations)
- LONGSCAN developed Youth-Report
  - Presented A-CASI
  - 18 screener items: "Has an adult caretaker ever…
    - Hit you with something really dangerous (e.g., bat or shovel)?"
    - Kicked or punched, bitten, tried to choke, drown or smother you?"
  - Endorsements followed with before/after started elementary school, last year, # times, who did it

Physical Abuse Indicators: Agreement for "At Risk" Cohorts

	CPS NO	CPS Yes
Self No	238 (68%)	38 (11%)
Self Yes	57 (16%)	17 (5%)

- 350 Youth eastern and southern samples
- 15 self-report items
- 21% self-report abuse/16% had official CPS allegation
- Agreement (74%)
  - If CPS report, Youth reports (20/58=35%)
  - If Youth reports, CPS report (20/74=27%)

Physical Abuse Indicators: Agreement for Foster Care Cohort

	CPS NO	CPS Yes
Self No	81 (36%)	81 (36%)
Self Yes	22 (10%)	40 (18%)

- 224 Youth from SW site
- 28% self-reported "Ever"/54% CPS report birth through Age 12
- Agreement=54%
  - If CPS report, Youth reports (40/121=33%)
  - If Youth reports, CPS report (40/62=65%)

What 12-year olds tell us about their maltreatment experiences: Sexual Abuse

Assessment of Sexual Abuse

- LONGSCAN developed
  - Child/Youth Report (Age 12)
  - Presented A-CASI
  - 11 screener items
    - Has anyone ever touched your private parts or bottom in some way?
    - Has anyone ever gotten you to touch their private parts or bottom in some way?
  - Endorsements followed with before/after started elementary school, last year, # times, who did it

Types of Sexual Abuse Child/Youth Report (Age 12) screener items

- Non-Contact Sex Assault/Abuse
- Fondling Sex Assault/Abuse
- Oral Genital Sex Assault/Abuse
- Penetration Sex Assault/Abuse

Sexual Abuse Indicators: Agreement for "At Risk" Cohort

	CPS NO	CPS Yes
Self No	299 (86%)	19 (6%)
Self Yes	27 (8%)	3 (1%)

- 348 Youth from EA and SO Sites (2 missing)
- 11 self-report items
- 9% self-report
  6% CPS Allegation
- Agreement (87%)
  - If CPS report, Youth reports (3/22 = 14%)
  - If Youth reports, CPS report (3/30 = 10%)

Sexual Abuse Indicators: Agreement for "CPS" Cohort

	CPS NO	CPS Yes
Self No	119 (68%)	40 (23%)
Self Yes	8 (5%)	8 (5%)

- 175 Youth from NW Site
- 11 self-report items
- 9% self-report
  27% CPS Allegation
- Agreement (73%)
  - If CPS report, Youth reports (8/48 =17%)
  - If Youth reports, CPS report (8/16 = 50%)

Sexual Abuse Indicators: Summary

	"At Risk"	"CPS"
Self-Report	9%	9%
CPS Report	6%	27%
Agreement All	87%	73%
Self given *CPS*	14%	17%
CPS given *Self*	10%	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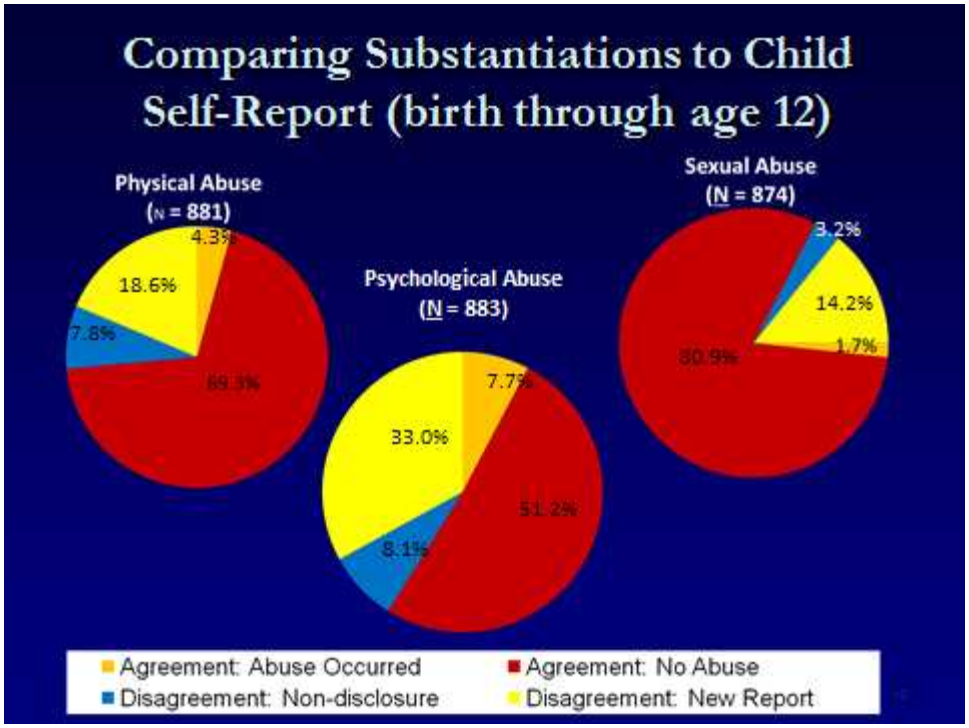

Maltreatment Indicators: Relationship to Outcomes

- The adolescent self-report measure of sexual abuse has a stronger association with trauma symptoms (TSC-C) and youth-reported behavior/emotional problems (YSR) than do CPS measures of sexual abuse (accepted reports or findings of "substantiated").
- Adolescent self-report of sexual abuse, however, is not associated with the parental measure of child functioning (CBCL).

Maltreatment Indicators: Relationship to Outcomes

- In contrast to negative results with other types of maltreatment, CPS accepted reports of sexual abuse is independently associated with youth functioning (but only for the parental measure of child functioning, the CBCL).
- CPS findings of sexual abuse is associated with youth trauma symptoms and parent-reported youth problems of behavior and emotion (also in contrast to negative results for other types of maltreatment).

Maltreatment Indicators: Relationship to Outcomes

- Regarding particular trauma symptoms, there are significant associations between CPS findings of sexual abuse and post-traumatic stress and anger.
- Adolescent self-report of sexual abuse is 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all of the specific trauma symptoms measured, as well as with the composite scores of the TSC-C and YSR.

Discussion

- If youth are not asked we miss 19% of children having been physically abused
- If youth are not asked we would miss 14% who were sexually abused.
- If youth are not asked we would miss the 33% of children who were psychologically abused
- Studies of outcomes of abuse and neglect require including the voice of the child.

II-2	아동학대와 방임 종단연구 내 아동의 응답: - 12세 아동이 보고한 학대경험을 중심으로

Desmond Runyan (Executive Director, The Kempe Cent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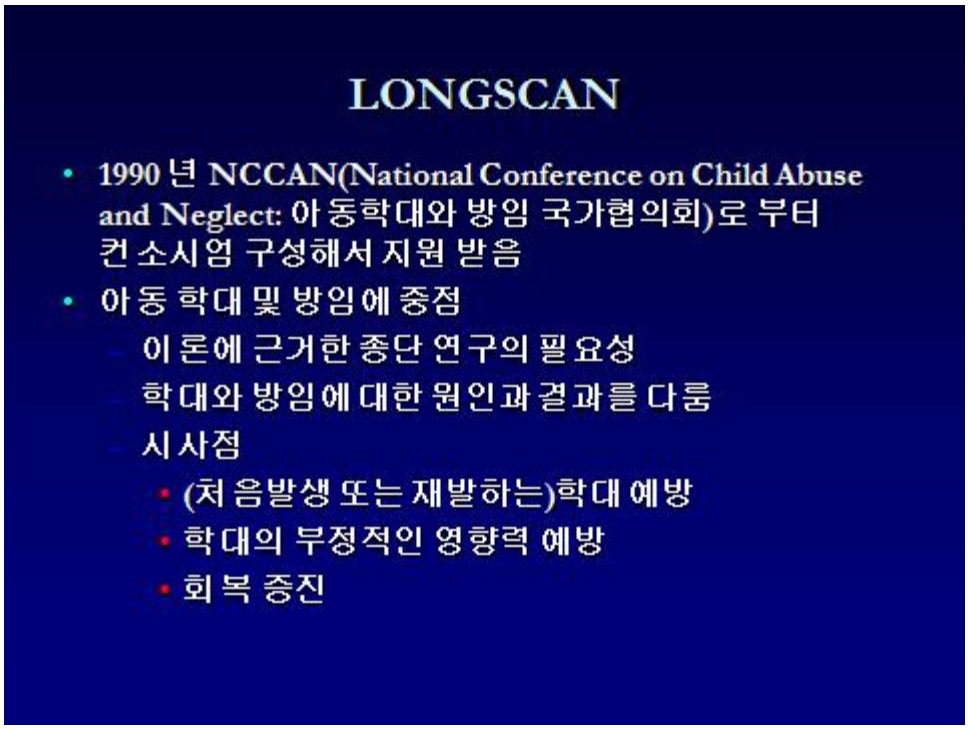

LONGSCAN 개요

- LONGitudinal Studies of Child Abuse & Neglect (아동학대 및 방임에 대한 종단 연구)
- 5개 별개의 연구
  - 동부
  - 서부
  - 중서부
  - 북서부
  - 남서부
- North Carolina대학교에 조정(coordinating)센터를 둠
- 조사에 사용하는 도구, 코딩(자료입력방법), (조사원 등)훈련, 데이터 입력을 동일하게 함

연구대상: 위험군

- *동부*: 도심지역의 소아과병원 내 282명의 "위기" 아동 대상(예: FTT 성장장애failure to thrive와 마약에 노출가능성)
- 남부: 위험군 아동 243명 대상–1/3만 응답수집됨
- *중서부*: 아동 245명 중 2/3은 학대 받은 아동, 1/3은 근처지역거주
- *서북부*: 4세 이전 학대 당한 경험 (중등도 위험)이 있는 254명의 아동 대상

  * CPS Child Protection Service
- *서남부*: 4세 이전에 위탁가정에 맡겨진 330명의 아동 대상
- 전체 총 1354명의 아동

측정도구

- 사회-발달-생태학적 이론을 지침으로 함 *(NRC, 1993; Bronfrenbrenner, 1989; Hawkins & Catalano, 1996)*
- 평가 영역
  - 아동/청소년: 특성, 기능
  - 양육자: 특성, 기능
  - 가족 (미시체계): 가정 환경과 기능
  - 거시체계: 이웃, 학교, 지원

상황과 평가

측정도구: 방법

- 영역별(아동, 양육자, 가족, 지역 사회) 측정을 위해 다양한 정보원 및 방법 활용
  - 보고서/평가/설문지
    - 아동/청소년
    - 양육자
    - 선생님
  - 수행능력
    - 아동/청소년
  - 상황 테스트/샘플
  - 공적 기록 (CPS 아동보호서비스) 활용
- 측정도구 제시
  - 인터뷰 및 A-CASI (Computer assisted self-interview)

LONGSCAN 자료를 사용하여 학대 바라보기

- 정의 및 측정방법의 확장
- 학대
  - 신체적 & 성적 학대, 방임, 정서 및 (가정 및 지역사회 내) 폭력을 목격한 경험
    - 발생 이상(네/아니오)의 정보
    - (범위와 정도에 초점을 맞춘) 다차원적 측정
    - CPS 보고서를 넘어서
      - 12세 청소년의 자기보고

CPS 보고서를 넘어서

- 아동/청소년 관점 – 그들이 우리에게 말하는 내용:
  - 신체적 학대
  - 성적 학대
  - 방임
  - 심리적 학대
  - 폭력에 대한 노출 (지역사회 및 가정)

신체적 학대의 지표

- CPS 보고서 (혐의 및 입증)
- LONGSCAN은 청소년 보고를 개발
  - 컴퓨터로 보조한 자기보고형식으로 제시
  - 18개 항목: "양육자가 …
    - 위험한 물건으로 때린 적이 있나요 (예: 야구방망이 또는 삽)?"
    - 발로 차거나 주먹으로 때리거나 목을 조르거나 물에 빠트리거나 질식시키려고 한 적이 있나요?"
  - 피해경험을 응답하면, 초등학교 전/후인지, 작년이었는지, 빈도, 가해자 등에 대한 추가 질문

신체적 학대 지표: 위험집단과 일치

	CPS 아니오	CPS 예
자가 아니오	238 (68%)	38 (11%)
자가 네	57 (16%)	17 (5%)

- 동부와 남부의 청소년 350명
- 15개의 자기보고 응답 항목
- 자기보고에서 학대에 표기한 21%/그 중 16%는 CPS에서 혐의 있었음
- 74%의 일치율
  - CPS 응답 기준, 자기보고 응답은 (20/58=35%)
  - 자기보고 기준, CPS 응답은 (20/74=27%)

신체적 학대 지표: 위탁가정 집단에 대한 일치

	CPS 아니오	CPS 네
자가 아니오	81 (36%)	81 (36%)
자가 네	22 (10%)	40 (18%)

- 남서부 지역청소년 224명
- 자기보고 시 28%가 학대를 경험한 적 있다고 표기 /출생부터 12세까지 CPS보고 기준 54%
- 54%의 일치율
  - CPS응답기준, 자기보고응답은 (40/121=33%)
  - 자기보고 기준, CPS 응답은 (40/62=65%)

LONGSCAN

Consortium for Longitudinal Studies of Child Abuse and Neglect

LONGSCAN 내 12세 아동이 보고한 성적 학대경험

성적 학대의 평가

- LONGSCAN에 서 개발함
  - 아동/청소년 자기보고 (12세)
  - A-CASI 컴퓨터 활용한 자기보고방법 사용
  - 11 개 선별문항
    - 누군가 당신의 성기 또는 엉덩이를 어떤 식으로던지 만진 적이 있나요?
    - 누군가가 자신의 성기 또는 엉덩이를 당신에게 만지도록한 적이 있나요?
  - 피해경험을 응답하면, 초등학교 전/후인지, 작년이었는지, 빈도는 어떠한지, 누가 그랬는지에 대한 추가 질문함

성적 학대의 종류 아동/청소년 응답 (12세) 스크리너 항목

- 비접촉 성적 폭행/학대
- 애무 성적 폭행/학대
- 구강 성기 성적 폭행/학대
- 삽입 성적 폭행/학대

성적 학대 지표: 위험집단에 대한 일치

	CPS 아니오	CPS 네
자가 아니오	299 (86%)	19 (6%)
자가 네	27 (8%)	3 (1%)

- 동/남부 청소년 348명 (2명 결측)
- 11 개의 자기보고 항목
- 9% 자기 보고
  6% CPS를 통해 밝혀짐
- 87%의 일치율
  - CPS 응답기준, 청소년 응답은 (3/22 = 14%)
  - 자기보고 기준, CPS 응답은 (3/30 = 10%)

성적 학대 지표: "CPS" 집단에 대한 일치

	CPS 아니오	CPS 네
자가 아니오	119 (68%)	40 (23%)
자가 네	8 (5%)	8 (5%)

- 서북부 청소년 175명
- 11개 자기보고 응답 항목
- 9% 자기보고
  27% CPS 혐의
- 73%의 일치율
  - CPS 응답 있는 경우, 자기보고응답 (8/48 =17%)
  - 자기보고경우, CPS 응답 (8/16 = 50%)

성적 학대 지표

	위험군	"CPS"
자기보고	9%	9%
CPS 응답	6%	27%
전부 일치	87%	73%
CPS 고려시 자기보고	14%	17%
자기보고 고려시 CPS 응답	10%	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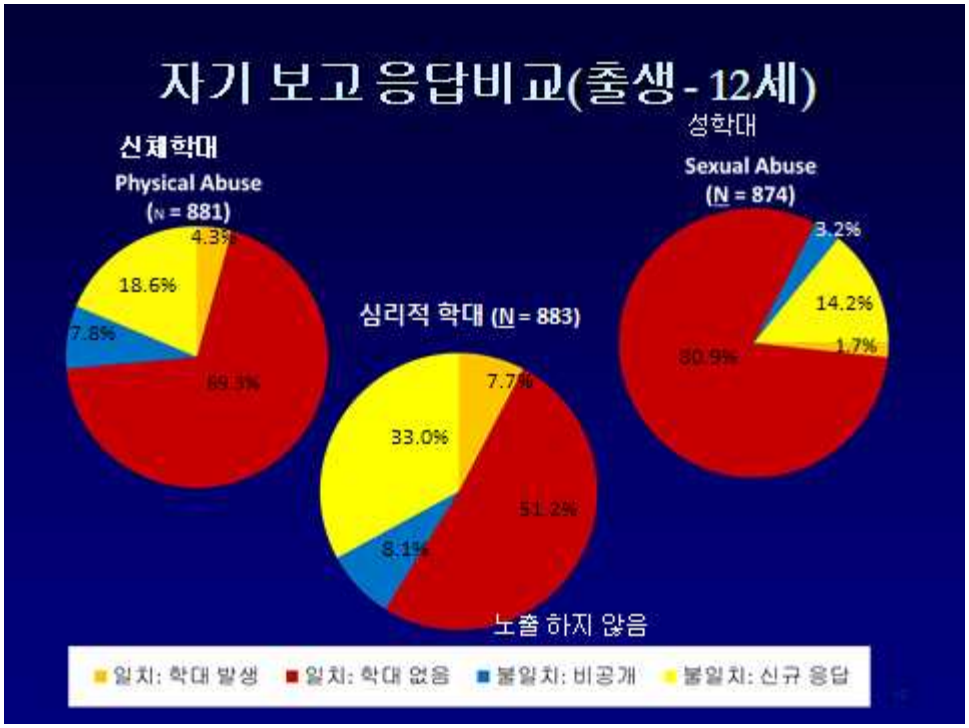

학대 지표: 결과에 대한 관련성

- 청소년을대상으로 자기보고를활용한성학대 측정은 CPS (신고된 사례 또는 입증된 결과) 응답보다 외상 증상 (TSC-C) 및 청소년이 보고한 행동 / 정서적 문제 (YSR)와 더 밀접한관련이 있음
- 그러나 청소년의 성적 학대에 대한 자기보고는 부모가 응답한 청소년의 기능 (CBCL)과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나타남.

*CBCL Child Behavioral CheckList

학대 지표:결과에 대한 관련성

- 다른 유형의 학대에 대한 부정적인 결과와 달리 CPS가 수락한 성적 학대에 대한 보고서는 청소년 기능과 관련이 있었으나, 부모가 응답한 아동 기능 (CBCL)만 그러함
- CPS에서 밝힌 성학대는 청소년 외상 증상 및 부모가 보고한 청소년 행동 및 감정 문제 (다른 유형의 학대에 대한 부정적인 결과와는 대조적으로)와 관련이 있었음

학대 지표: 결과와의 관계

- 특정 외상증상과 관련하여 CPS의 성적 학대와 외상 후 스트레스 및 분노 간에 유의미한 연관성이 있었음
- 청소년들의 성적 학대에 대한 자기 보고는 TSC-C와 YSR의 복합 점수뿐만 아니라 측정된 모든 특정 외상 증상과 유의미한 관련이 있었음

논의

- 청소년에게 직접 물어봄으로써, 신체학대 피해아동의 19%를 파악함
- 청소년에게 직접 물어봄으로써, 성학대 피해아동의 14%를 파악함
- 청소년에게 직접 물어봄으로써, 심리학대 피해아동의 33%를 파악함
- 학대 및 방임 연구 시 정보원으로 아동의 응답이 필요함

Ⅲ-1

"LONGSCAN"과 아동의견청취에 대한 의견

곽 영 호 (서울대병원)

This 'LONGSCAN' study enrolled a total of 1,354 children form the 5 regions of the United States with various inclusion criteria ('a continuum of risk'). The study indicates that 'listening to children' (by interview and A-CASI) is a valuable measure, 1) to find under-reported CAN cases, and 2) to clarify the strong relationship of the adolescents' self-report of sexual abuse with trauma symptoms and behavioral /emotional problems of YSR.

I strongly agree that in-depth interview with 'at risk' children would yield more meaningful results, and we should include the voice of the victims of CAN to improve welfare of the children. To accomplish this goal, however, we have to do somethings in my country. First of all, we need standardized way of selecting 'at risk' children from pediatric population and/or CPS-reported cases. And the interview should be conducted by well-trained (ideally, certified) personnel. Furthermore, the interview method (face to face or computer-assisted self- report) also requires high-level standardization and validation.

To my best knowledge, we have neither validated screener tool to select 'at risk' children nor well-trained (or certified) personnel to conduct interview in Korea. According to national digitalized database of National Child Protection Agency (NCPA) of Korea, only small numbers of the allegedly-abused children are selected to perform IQ test and/or YSR/CBCL by each agent's discretion. To listen to children correctly, we should develop standardized way to select 'at risk' children from pediatric population and even NCPA-reported children. A recent Korean study found substantial rate of CAN experience from the inmates of the Boy Correctional Institution, who can be considered as candidates for this kind of interview.

We also need to develop A-CASI-like protocol to obtain reliable voice of the children. A computer-assisted method of interview is known to be more effective to get private information than face to face interview. Each item of the questionnaire should be carefully developed and evaluated by the multi-disciplinary specialists.

Moreover, we need to back-ups from the law and regulations to justify our effort to have hidden voice of the 'at risk' children. Although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Children (CRC) by UN requires the duty of States Parties to assure the free expression of children's view on any

kind of matter affecting the children, we do not have any regulations for this right of the children in Korea. Especially the age when the child can form his/her formal opinion, we do not have any agreement or regulations. For the first step, the NCPA and specialists might develop the method and regulation to select the 'at risk' children' from reported CAN cases. And as the CRC recommended, the hearing session from 'at risk' children by well-trained and certified personnel should be legislated to guarantee the best interest of the children.

'LONGSCAN' 연구는 미국 5개 지역에서 위험요소의 연속선상 아래 여러 준거기준에 부합하는 아동 총 1,354명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본 연구는 1) 과소-보고된 아동 학대 및 방임(CAN) 사례들을 찾고 2) 청소년의 외상 증상을 동반한 성 학대의 자기보고와 청소년 자기보고(The Youth Self-Report; YSR) 내 행동/정서적 문제 간의 강한 상관을 확인하기 위해 '아동의 의견을 듣는 것(인터뷰와A-CASI 활용)' 이 가치 있는 측정 방법이라고 제시하고 있다.

위험군 아동과의 심층 인터뷰가 보다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는 것에 동의하며 아동복지를 증진하기 위해서는 학대 및 방임 피해아동의 목소리를 포함시켜야 한다. 다만, 한국에서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선행되어야 할 것들이 있다. 우선, 소아과 환자집단 및/ 또는 아동보호서비스(child protective service; CPS)에 보고된 사례에서 '위험군' 아동을 선별하는 방법을 표준화시킬 필요가 있다. 또한 인터뷰는 검증되고 훈련된 인력(이상적으로는 자격증이 있는)에 의해 진행되어야 한다. 더 나아가 대면 인터뷰 혹은 컴퓨터를 활용한 자기보고 면접 방법 또한 높은 수준의 표준화 및 타당도가 필요하다.

현재까지 한국에는 위험군 아동을 선별할 수 있는 적절한 검사 도구가 없으며 인터뷰를 실시할 수 있을 만큼 잘 훈련되고 검증된 인력도 없다. 한국 아동보호전문기관 데이터베이스에 따르면, 기관 재량에 따라 학대로 의심되는 아동의 일부만이 지능검사와 문제행동검사(청소년 자기보고/아동행동 체크리스트)를 실시한다. 아동의 의견을 정확하게 듣기 위해서는 소아과 환자집단 및 아동보호전문기관에 보고된 아동 중 위기 아동을 선별하기 위한 표준화된 방법을 개발해야 한다. 최근 한국의 한 연구는 소년원에 수용 중인 남자 보호소년 중 상당한 비율이 아동학대 및 방임을 경험한 사실을 발견하였는데, 이들은 위기 아동을 선별하기 위한 인터뷰 대상자로 고려될 수 있다.

또한 아동의 목소리를 신뢰할 수 있도록 A-CASI와 같은 프로토콜을 개발해야 한다. 사적인 정보를 얻는 것에는 대면 인터뷰보다 컴퓨터 보조 면접이 보다 효과적이다. 이때 각 설문 문항은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이 신중하게 개발하고 평가해야 한다.

더 나아가, 위험군 아동의 숨겨진 목소리를 듣기 위한 노력을 정당화하는 법과 규정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유엔아동권리협약을 비준한 당사국은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어떠한 종류의 문제에 있어서 아동의 자유로운 표현을 보장할 의무가 있지만, 한국에서는 이러한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어떠한 규정도 존재하지 않는다. 특히, 아동이 정식으로 의견을 표명할 수 있는 연령에 대해서는 어떠한 합의나 규정도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그 첫 번째 단계로서, 아동보호전문기관과 전문가는 보고된 아동 학대 및

방임 사례에서 위험군 아동을 선별하는 방법과 규정을 개발해야 한다. 나아가 유엔아동권리위원회가 권고한 바와 같이, 아동 최상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 잘 훈련되고 검증된 인력이 위기 아동들의 의견을 듣는 과정을 법률로 제정해야 한다.

Ⅲ-2 위기아동 보호와 학교의 역할에 대한 의견

김 민 태 (경기도교육청)

1 최근 주요 아동학대 사건

- 2013년 8월 : 칠곡 계모에 의한 소년 살해 사건 발생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 교사 등 신고의무자 확대
- 2015년 12월 : 친부와 동거녀에 의한 11세 소년 학대 및 교육 방임 사건
  - 장기결석 아동 대상 전수 조사 및 교육기관 내 보호 방안 논의 개시
- 2016년 1월 : 부모에 의한 부천 초등생 살해 사건 발생
  - 학교와 동사무소 등 관련기관 대처 미흡 : 범정부 아동학대 대책추진협의회 설치
- 2016년 3월 : '원영이 사건' 발생
  - 학교가 장기결석 아동 중 학대 의심 사례를 경찰 신고하여 사안 파악

2 위기 아동의 파악

- 교육기관 내 위기 아동의 파악 경로
  - 진로·성적·교우관계·가정환경 등 교육관련 학생 및 보호자 상담 과정 중 인지
  - <u>학기 초 학생정서 행동특성 검사 등 설문*을 통한 확인 및 인지</u>

    ※ 학교보건법, 학교폭력예방법 등을 근거로 학기 초 <u>아동의 심리상황과 생활양태에 대한 설문(학생정서행동 특성검사)을 실시 후 위기군 파악</u> 후 교육적 관리와 지원을 진행하도록 하고 있으나, 일부의 경우 형식적 처리로 종료되는 경우도 발생
  - 외부기관 보호절차 진행 중 간접 인지

    (경찰, 아동보호기관으로부터의 조사 협조요청을 통한 인지나 비공식 통보)
  - 학교 내 선도절차를 통한 인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학생징계위원회 진행 과정 중의 인지)

- 위기아동의 의견 청취 과정의 문제점과 대안 모색

- 적극적 청문 시스템의 불완전성 및 담당자의 전문성의 한계 문제
  (즉각적·실질적인 보호와 지원이 지체되는 경우 발생)
- 위기학생 의심 시 학생 작성의 검사표 중심의 전문상담사 상담 활용 필요

3 아동학대 대응 절차

■ 아동학대 신고의무

<사례 보기>

- L초등학교 3학년 여학생 丙은 등교 중 어느 청소년으로부터 심한 성적 폭언과 일부 신체 폭행을 당했다는 사실을 담임교사에게 알렸으나, 담임교사는 학교 밖 사건이므로 보호자에게 전화로 해당 학생이 현재 안전하다는 사실만 알리고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음
- 이후 丙은 학교 등굣길이 무섭다거나 학교 가기 두렵다는 심리적 고통을 보호자에게 호소하였고, 보호자는 담임교사에 대해 아동학대 신고 미이행에 대한 책임을 지울 것을 교육청에 요구함

- 아동복지법, 아동학대범죄처벌법 등에 따라 사안 인지 시 즉시 신고의무 이행

■ 미취학 및 무단결석 학생 관리 대응 체계 마련
- 미취학(초등), 미입학(중등), 장기결석 아동을 중 아동학대 의심 대상의 신고
- 학교 복귀를 위한 학습결손 보충 및 학교적응 지원
- 교육청(교육지원청) 단위 대책위원회 구성, 운영

■ 아동 상담과 치유를 위한 시스템 운영
- 학교 단위 위클래스, 교육지원청 단위 위센터 운영

4 아동학대 대응의 적절성

■ 아동학대에 대한 교육기관 개입의 한계
- 아동학대는 보호자와 가정환경 문제가 주요 원인*임에도, 교육기관의 대응은 대부분의 아동학대 사고 발생 이후의 신고의무 이행에 중점을 두고 있음

※ 상기 적시된 아동학대 사례의 주요 원인은 보호자의 불안정한 심리 상태(보호자의 게임중독과 양육에 대한 무지와 무책임)와 경제적 취약구조(보호자의 무직상태, 경제적 취약 상태 지속)로 인한 가

정환경 불안에 있었음

- 아동학대에 대한 사전 개입이나 사후 보호 절차 진행에 있어 학교나 교육기관의 권한은 보조적, 협조적 역할에 국한된 상태
- 즉, 교육활동으로서의 상담과 일반적 예방교육의 실시와 별개로 아동학대에 대한 보호절차로서의 상담이나 치유와 관련된 활동에는 **법령상 권한이 없는 상황**
- 신고의무 이행 이외에 적극적 보호조치(가해자의 격리, 보호장소 제공) 불가능

(보호자와의 관계로 인해 수사기관이나 아동보호기관에 적극적 의견제출도 기피)

5 아동보호 절차에서의 아동 의견 청취

■ 교육 상담에서의 아동의견 청취

- 학기 초 설문(학생용/보호자용)을 통한 의견청취

(설문 답변 방식 / 일괄적·형식적 실시로 인한 개별적 의견청취에는 한계)

- 개별상담을 통한 의견청취

(설문지 분석을 통한 위기군 학생에 대한 개별 상담 진행 방식 => 담임교사의 아동상담 전문성의 한계 문제 => 학교(위클래스) 및 교육청(위센터), 지역정신건강센터의 전문 상담 진행)

■ 학생선도 과정에서의 아동의견 청취

- 학교폭력 처리 절차 진행 중 가 · 피해학생에 대한 진술기회 보장 및 상담 진행
- 학생선도(징계) 절차 진행 중 대상 학생의 진술기회 보장 및 상담 진행

(당해 절차는 위기아동의 위기원인과 보호요청 등에 대한 의견청취 절차라기보다는 징계 전 변명의 기회를 제공하는 의견청취 과정)

(위기아동에 대한 보호절차 진행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라도 신고의무 이행 후 적정한 추가 보호조치의 어려움 발생)

<사례 보기>

- F중학교의 학교폭력 전담기구는 2학년 남학생 丁의 학교폭력(갈취와 폭행, 협박) 가해행위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丁으로부터 아버지가 알콜중독으로 인해 자주 폭행과 함께 술심부름을 보내고 있으며, 이러한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다른 학생들에게 갈취를 행하고 있음을 확인
- F 중학교는 학교폭력 사안처리와 별개로 丁이 아동학대 피해를 당하고 있음을 보호기관에 신고함
- 다만, 신고의무 이행 이후 丁에 대한 학교 단위의 보호절차를 진행하지 못함

6 아동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제언

<사례 보기>

- C 초등학교 4학년 여학생 乙은 학기 초 학생정서 행동특성검사를 통해 심리불안이 확인되었고, 그 주요 원인이 가정 내 학대(언어폭력)에 있었음에도, 학교에서 심리불안의 원인을 추가로 규명하는 상담이나 보호조치 등을 진행하지 못하고, 정해진 절차에 따라 보호자에게 결과 통지를 함
- 이후 乙의 보호자는 가정 내 학대를 인정하지 않고 학교를 통한 치유절차 진행을 거부하는 상황 발생

<사례 보기>

- K중학교 1학년 담임교사(여성)는 남학생 甲과 상담 중 이 학생이 아버지에게 자주 폭행과 폭언을 당하여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임을 알고 보호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지역 아동보호기관에 아동학대 사안 신고
- 이후 甲 학생의 보호자는 담임교사에 대해 보복 민원제기, 아동학대 신고, 형사고소 등의 괴롭힘을 지속

■ 학생의 자기 의견제출 보장 체계

- 아동의 직접 신고 시스템 구축(사안 접수 시 경중 판단은 사후절차로 진행하고, 아동의 고지 내용을 '그대로 또는 기준표에 근거해 입력하는 방식'마련)
- 아동의 자기 신고 내용에 대한 우선적 신뢰성 부여(증거능력 인정)

■ 상담자의 역할 강화

- 학교 내 아동상담과 보호를 지원하는 담당자(전문상담자) 필수 배치
- 상담자에 의한 상담 진행 의무화(보호자 상담 + 아동 상담 + 가족 상담)
- 위기군 아동에 대한 상담자의 정기적 상담 실시 의무화(보호자 동의 불요)
- 상담결과에 의한 아동보호기관과의 유기적 역할 분담
  (학교 밖 지원 필요 사항에 대한 즉각적 통보 및 보호조치 관련 협조체계 구축)

■ 아동상담 체계의 일원화·전문화 방안

- 학생 대상 **학교 밖 상담**(지자체-정신보건센터 및 청소년센터 등)과 **학교 안 상담**(교육부-위센터 중심)의 **기능적 통합(또는 조직적 통합)** 검토 필요(아동보호 관련 정보 공유의 한계와 상담자의 전문성 부족 문제 해결 가능)
- 학교 내에서 청문된 아동 의견을 학교 밖 보호절차에서도 이용 가능하도록 개선

■ 아동보호 상담자의 독립성 및 안전 보장 강화

- 학교관리자들이나 담임교사들로부터 상담자의 상담 독립성 보호 필요
  (상담 결과의 비닉성 보호, 아동 상담 과정의 개입 금지 등 보장)
- 학교 내 상담자의 신상과 신체 안전 보호 강화 필요
  (위기아동 보호자들의 협박과 모욕 등으로부터 적극적 보호 필요)

참고 ‘학생정서 행동특성 검사’ 보기

검사대상은 초등학교 1학년~4학년, 중.고등학교 1학년 등을 대상으로 합니다.
온라인검사 외에도 학교에서 서면검사를 실시될 예정입니다.

검사를 통해 학생의 우울증이나 정서적 어려움을 확인하여
상담 등을 통해 치유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예정입니다.
검사 결과는 비밀이 보장되며 기록되지 않습니다. 또한 7월 중순에 일괄 폐기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2016년 학생 정서·행동발달 지원내용>

구 분	담 당	추 진 내 용
학생 정서·행동 특성검사	학 교	* 대상: 초등학교 1·4학년 전체 학부모 * 도구: 아동 정서·행동발달검사지(CPSQ) * 검사결과 분석 후 전문기관 심층평가가 필요한 학생 파악
심층평가	전문기관	* 전문기관(Wee센터, 정신건강증진센터 등) 상담 및 검사
추후관리 (개별상담)	학교 및 가정, 전문기관	* 관심군: 학교 내 지속관리 및 전문기관에 의뢰·치료지원 **(13~14점: 관심군 일반관리, 15점 이상: 관심군 우선 관리)** ※ 정서·행동발달문제와 관련한 개별상담 및 치료 지원

1. 검사 대상 : 1학년, 4학년 학부모님(보호자)

2. 검사 기간 : 4월 12일(화) ~ 4월 19일(화)

3. 검사 방법 : 온라인 검사 (http://mom.eduro.go.kr) 뒷면 참조

※ 가정에서 **온라인 검사 참여가 불가능**한 경우, 아래 신청서의 서면검사 부분에'√표시'하시고 별도의 검사용지에 수기로 검사를 한 후 작성

<Wee센터와 정신건강증진센터>

- Wee센터는 교육부 교육행정기관인 교육지원청에 설치된 공공기관으로 학생들의 정서행동발달 지원을 위한 심층검사 및 상담과 치유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전문기관
- 정신건강증진센터는 보건복지부 지방자치행정기관에 설치된 전문기관으로 학생과 성인 전체에 대한 심층 정신건강지원서비스 제공
- Wee센터와 정신건강증진센터는 모두 학생들의 정서행동발달 지원을 위한 기본적인 상담 및 관련 검사 서비스 무료 제공 ==> 보호자는 선택적으로 두 기관을 찾아 서비스 이용 가능

아동 정서·행동특성검사지(CPSQ)

이 설문은 초등학생 학부모를 대상으로 자녀의 정서, 행동을 알아보는 문항입니다. 지난 한 달 동안 관찰하신 자녀의 행동에 대해 해당란에 v표 해주십시오.

학년, 반, 번호 : / /, 성명 : _성별 : 남 / 여

문 항		전혀 없음 (0)	약간 있음 (1)	상당히 있음 (2)	아주 심함 (3)
1	너무 말랐거나 혹은 너무 뚱뚱하다.				
2	꼼지락거리거나 가만히 앉아있지 못한다.				
3	도벽이 있거나 거짓말을 자주 한다.				
4	우울한 기분으로 생활하는 일이 많다.				
5	정신을 잃고 쓰러진 적이 있다.				
6	성질이 급하고 참을성이 부족하다.				
7	지능이 낮다.				
8	무단결석 혹은 가출을 한 적이 있다.				
9	매사에 의욕이 없어 보인다.				
10	다른 아이들과 주먹질을 하며 싸운다.				
11	술 혹은 담배로 인해 문제를 일으킨 적이 있다.				
12	어른(부모 혹은 교사)에게 반항적이거나 도전적이다.				
13	대소변 가리기에 문제가 있다.				
14	불만이 많고 쉽게 화를 낸다.				
15	양보심이 부족하다.				
16	불안하거나 긴장된 표정을 보인다.				
17	여기저기 자주 아프다(예; 두통, 복통 등).				
18	또래에 비해 읽기, 쓰기, 셈하기를 잘 못한다.				
19	언어발달이 늦어 대화에 지장이 있다.				
20	자신감이 부족하다.				
21	잘 먹지 않는다.				
22	컴퓨터(혹은 인터넷)를 너무 사용하여 생활에 문제가 있다.				
23	집중력이 짧고 주의가 산만하다.				
24	다른 아이들과 잘 어울리지 못한다.				

24	다른 아이들과 잘 어울리지 못한다.				
25	신경이 날카롭고 신경질적이다.				
26	틱(눈 깜박거림, 킁킁 소리내기, 어깨 으쓱거리기 등)이 있다.				
폭력 피해	1. 누군가로부터 신체적 언어적 폭력을 당한 적이 있다.				
	2. 친구들이 괴롭히거나 따돌림을 당한 적이 있다.				
	3. 나를 괴롭히는 친구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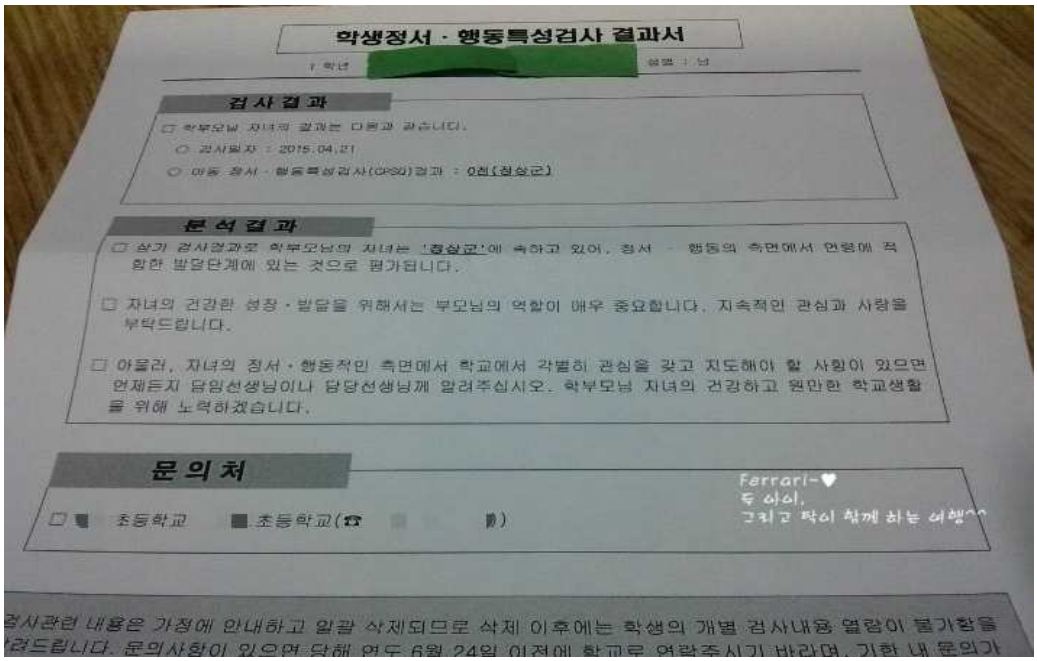

학생정서 · 행동특성검사 결과서

1 학년 [redacted] 성별 : 남

검사결과

☐ 학부모님 자녀의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검사일자 : 2015.04.21

○ 아동 정서 · 행동특성검사(DPSD)결과 : 0점(정상군)

분석결과

☐ 상기 검사결과로 학부모님의 자녀는 '정상군'에 속하고 있어, 정서 · 행동의 측면에서 연령에 적합한 발달단계에 있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 자녀의 건강한 성장 · 발달을 위해서는 부모님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지속적인 관심과 사랑을 부탁드립니다.

☐ 아울러, 자녀의 정서 · 행동적인 측면에서 학교에서 각별히 관심을 갖고 지도해야 할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담임선생님이나 담당선생님께 알려주십시오. 학부모님 자녀의 건강하고 원만한 학교생활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문의처

☐ 초등학교 ■ 초등학교(☎)

Ferrari-♥
두 아이,
그리고 딱이 함께 하는 여행^^

검사관련 내용은 가정에 안내하고 일괄 삭제되므로 삭제 이후에는 학생의 개별 검사내용 열람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문의사항이 있으면 당해 연도 6월 24일 이전에 학교로 연락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 문의가

Ⅲ-3

아동보호재판에서의 아동의견청취 현황

권 양 희 (서울가정법원)

Ⅰ. 절차의 개관

아동보호절차
검 사
공소 제기
임시조치 청구
아동보호 사건송치
형사법원
<형사처벌>
1.아동학대치사
2.아동학대중상해
3.상습아동학대
4.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아동보호 사건송치
가정법원
<조사/심리>
필요시 직권
<임시조치>
1.퇴거 등 격리
2.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3.전기통신 이용 접근금지
4.전금,후견인 권한 행사의 제한.정지
5.상담 및 교육위탁
6.의료기관, 요양시설 위탁
7.응지장,구치소 유치
<보호처분>
1.접근행위 제한
2.전기통신 이용 접근제한
3.전금,후견인 권한 행사의 제한 정지
4.사회봉사,수강명령
5.보호관찰
6.감호위탁
7.치료위탁
8.상담위탁
아동학대범죄발생
신 고
경찰에서의 조사
아동보호전문기관 사법 경찰관
<응급조치>
1. 범죄행위제지
2. 학대행위자 격리
3. 피해아동 보호시설 인도
4. 피해아동 의료기관 인도
임시조치신청
사법경찰관
<긴급임시조치>
1. 퇴거 등 격리
2.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3. 전기통신 이용 접근금지
피해아동보호명령절차
피해아동, 아동보호전문기관장 등
청구
직권
가정법원
<조사/심리>
<임시보호명령>
피해아동보호명령과 동일
<피해아동보호명령>
1.퇴거 등 격리
2.접근행위 제한
3.전기통신 이용 접근제한
4.보호위탁
5.치료위탁
6.가정위탁
7.친권행사 제한.정지
8.후견인 권한 제한.정지
9.의사표시 갈음하는 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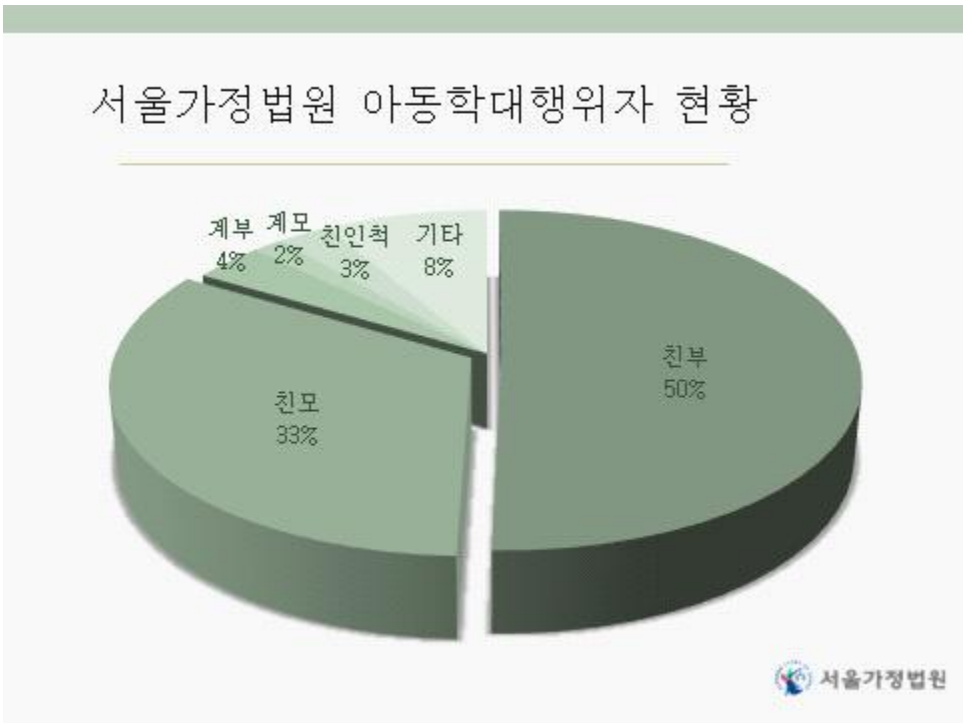
서울가정법원 아동학대행위자 현황
계부 4%
계모 2%
친인척 3%
기타 8%
친부 50%
친모 33%
서울가정법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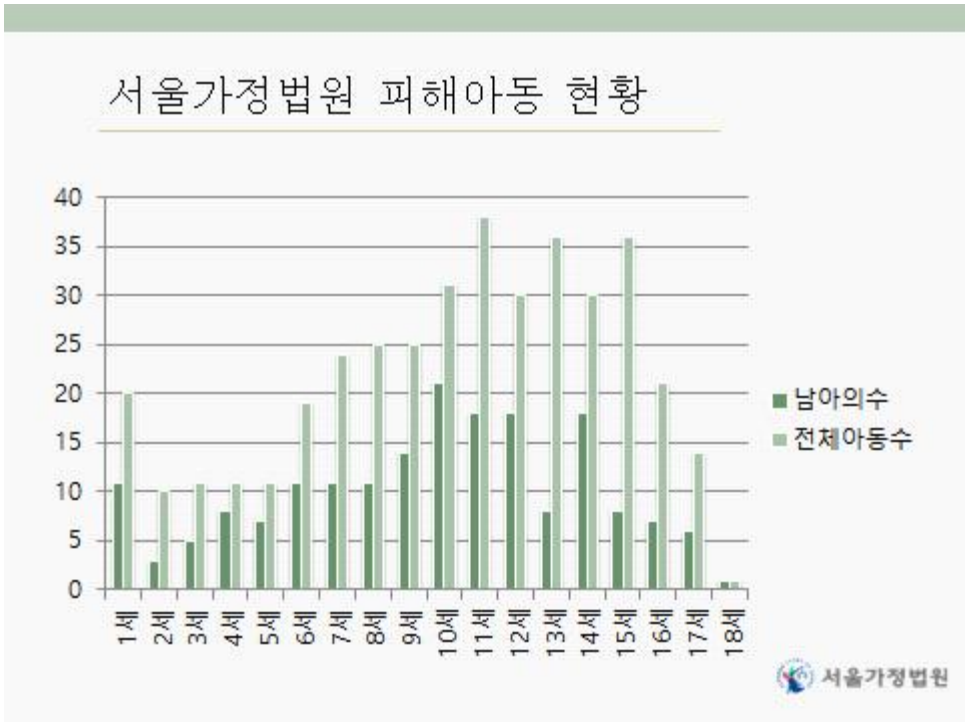
서울가정법원 피해아동 현황
40
35
30
25
20
15
10
5
0
1세
2세
3세
4세
5세
6세
7세
8세
9세
10세
11세
12세
13세
14세
15세
16세
17세
18세
남아의수
전체아동수
서울가정법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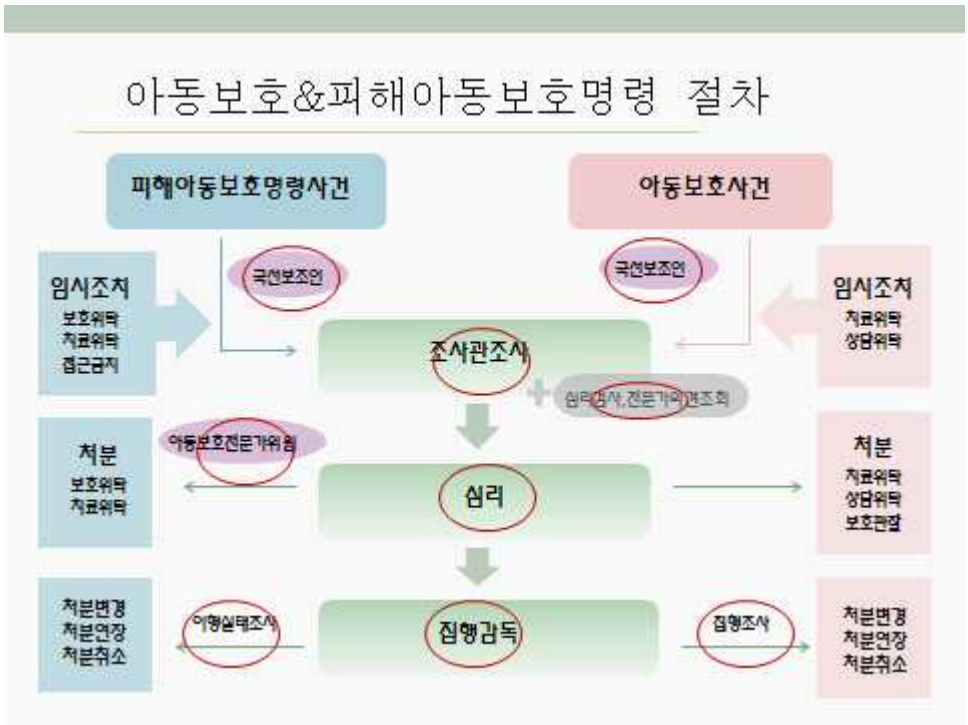
아동보호&피해아동보호명령 절차
피해아동보호명령사건
아동보호사건
임시조치
보호위탁
치료위탁
접근금지
국선보조인
국선보조인
임시조치
치료위탁
상담위탁
조사관조사
처분
보호위탁
치료위탁
아동보호전문가위원
심리
처분
치료위탁
상담위탁
보호관찰
처분변경
처분연장
처분취소
이행실태조사
집행감독
집행조사
처분변경
처분연장
처분취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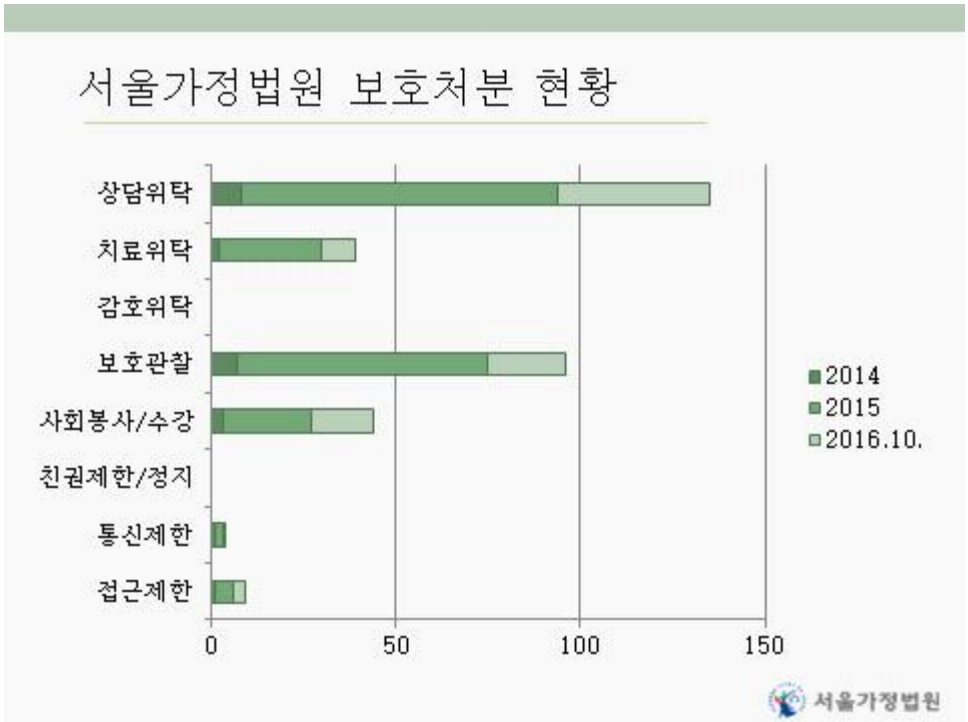
서울가정법원 보호처분 현황
상담위탁
치료위탁
감호위탁
보호관찰
사회봉사/수강
친권제한/정지
통신제한
접근제한
0
50
100
150
2014
2015
2016.10.
서울가정법원

서울가정법원 피해아동보호명령 현황
의사표시갈음결정
후견인권한제한/정지
친권제한/정지
가정위탁
치료위탁
보호위탁
통신제한
접근제한
퇴거등격리
0
20
40
60
80
100
2014
2015
2016. 10.
서울가정법원

Ⅱ. 아동의견청취를 돕는 제도

진술조력인 제도

대상

- 아동학대범죄의 피해자 중 만 13세 미만의 아동

자격

- 정신건강의학, 심리학, 사회복지학, 교육학 등 아동 심리나 의사소통 관련 전문지식이 있거나 관련 분야에서 상당 기간 종사한 사람

절차

-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구두나 서면으로 신청
- 조사 또는 증언 전 피해자와 면담,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피해아동의 심리상태, 의사소통 능력 등에 대하여 전달
- 피해아동이 심리적 안정감을 가지고 진술할 수 있도록 보조

피해아동변호사 제도

피해아동 변호사 선임 특례

- 학대피해아동, 법정대리인은 형사 및 아동보호절차상 입을 수 있는 피해 방어, 법률적 조력 보장을 위하여 변호사 선임 가능
- 검사는 피해아동 변호사가 없는 경우 국선변호사 선정

피해아동 변호사의 권한

- 긴급임시조치 신청, 임시조치 청구 요청 및 의견진술
- 보호처분 취소, 종료 청구, 피해아동보호명령 청구
- 각종 의견진술 권한 – 임시후견인 선임에 관한 의견 제시, 피해아동에 대한 증인신문 및 의견진술 요구시 피해아동을 대리하여 의견을 진술할 권한
- 법원의 허가를 얻어 피해아동보호명령의 보조인이 될 수 있음
- 각종 통지 및 고지 대상

증인지원관 제도

규정

- 법원은 증인으로 법원에 출석하는 피해아동이 재판 전후에 피고인이나 그 가족과 마주치지 아니하도록 하고, 보호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적절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함.
- 증인지원시설을 관리, 운영하고 피해아동의 보호와 지원을 담당

역할

- 재판절차의 안내와 조력
- 증인신문 전후 피해아동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상담
- 증인지원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업무
- 피해아동 측의 요청에 의한 재판장의 명에 따른 재판 진행 사항에 관한 정보제공업무

Ⅲ. 토론 사항

피의자(행위자)의 방어권 보장 vs. 피해아동의 보호

- 객관적 증거 없이 피해아동의 진술에 의존하고 있는 아동학대사건의 경우, 행위자가 학대사실을 부인하며 피해아동의 진술에 대한 반박의 기회를 원하는 경우
- 기억력과 표현력의 문제, 아동진술의 오염가능성

단계별 의견진술기회 보장 vs. 반복 진술에 따른 부담

- 절차 진행에 따른 단계별 의견청취의 필요성
- 피해아동에 대한 의견진술기회 보장
- 반복 진술 부담의 최소화 노력, 전문가에 의한 진술 청취

서울가정법원

감사합니다
서울가정법원 권양희

Ⅲ-4 아동보호절차와 아동의견청취 - 아동학대를 중심으로 -

이 준 석 (보건복지부)

□ 아동 의사표현의 특수성 및 의견청취 지원 필요성

○ (**의사표현의 특수성**) 성인에 비해 아동은 의사표현 능력이 미숙하여 자신의 생각과 의도를 정확히 전달하기 어려움

- 영유아는 언어를 통한 의사전달 자체가 어렵고, 아동의 경우에도 심리상태나 타인의 영향을 크게 받아 의사전달이 왜곡될 가능성

○ (**의견청취 지원 필요성**) 아동의 불완전한 소통능력 및 학대로 인한 불안심리 고려 시, 온전한 아동보호를 위해 의견청취 지원 필요

- 신고·발견, 조사·재판, 보호·지원, 정보공유·연계 과정에서 의견을 왜곡 없이 청취하고 정보를 획득하기 위한 정책·제도가 중요

□ 아동의견 청취 관련 정책 및 제도

① 신고·발견

- (**빅데이터**) 의견청취가 어려운 아동의 경우 위기환경과 관련성이 있는 장기결석, 건강검진 미실시 정보 등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 · 위기아동을 예측 후 필요 시 복지서비스 등 조기지원 및 아동학대 신고·보호 조치하는 시스템 구축 예정
- (**신고의무자**) 학대피해를 스스로 알리기 어려운 아동 특성 고려 시, 교사·의사·사회복지사 등 인지가 용이한 직군에 신고의무 부여
  - · 신고교육 강화 및 의무불이행 시 철저히 과태료 부과 조치
  - · 교내·외 기관에서 다양한 기회를 활용해 학대 조기발견
  - *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으로 신고의무자 직군 확대(입양기관 종사자 등 추가)
- (**아동본인 신고**) 아동이 학대사실을 인식, 스스로 신고조치 하여 자신의 권리를 지킬 수 있도록

아동권리 및 학대예방 교육 강화

* 아동본인에 의한 학대 신고건수: 171('13년) → 628('14년) → 1,500('15년)

② 조사·재판

- **(진술녹화 관련)** 아동보호전문기관 내 진술녹화가 가능한 상담실 설치 및 신뢰관계인으로 상담원 동석하여, 심리안정 및 의사소통 지원

  * 「아동복지법」 상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은 피해아동 상담·조사를 위해 진술녹화가 가능한 상담실을 설치·운영하도록 규정('16.12월 기준 20개소 설치·운영 중)

- **(진술조력인 등)** 아동학대 전담검사, 피해아동변호사, 진술조력인, 증인지원관 등을 도입하여 아동의견 청취 지원

  · 특히, 아동에 대한 이해와 아동학대사건 수사 전문성을 갖춘 학대전담경찰관 제도를 도입하여 보다 세심한 대응 가능

③ 보호·지원

- **(보도 가이드라인)** 아동 동의 없이 사생활 침해하는 선정적 보도로 인한 2차피해 방지를 위해, 아동학대 언론보도 가이드라인 제작·배포

- **(사후관리)** 피해아동 원가정 복귀 후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전화상담·가정방문을 통해 양육환경 점검 및 아동의견 청취

  * 시설퇴소 아동 등의 경우 6개월 내에 공무원이 가정방문 조치

④ 정보공유·연계

- 각 아동보호체계·기관 별 정보의 연계로 아동의견 반영 가능성 제고 및 중복진술로 인한 비효율성 해결 필요

  * (예시) 학대피해아동에 대한 복지서비스 누락·중복 방지 등을 위해 아동학대정보시스템-사회보장정보시스템 간 연계 등

보건복지부위탁 2016년도 아동인권증진사업

아동권리포럼

발 행 일 : 2016년 12월

발 행 처 : 사단법인 국제아동인권센터

연 락 처 : 02-741-3132